

FTA Vol.09
October 2014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FTA Vol.09
October 2014

FTA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FTA Vol.09
October 2014

FTA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Contents

FTA FOCUS

한-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현황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특징 • 기업의 FTA 활용 	

FTA 최근 동향

FTA 최근 동향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주요 이슈 • 우리나라 FTA동향 • 해외 FTA동향 	

FTA ANALYSIS

① FTA 협정분석	
우리나라의 한-ASEAN FTA의 활용 실태와 시사점 기관발급 실적을 중심으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ASEAN FTA 8년 교역현황 • 한-ASEAN FTA의 활용 실태 분석 • ASEAN 주요 국가의 FTA 전후 수출 변동과 기관발급실적 분석 • 한-ASEAN FTA 발효 7년과 시사점 	

② FTA 산업분석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수입동향 분석 커피, 아이스크림, 주류 등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배경 및 목적 • 주요 FTA 상대국별 기호식품 수입비중 변화 	

FTA EXPERTS

① 전문가 기고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 현황과 FTA에서의 중간재 교역 성과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가면서 •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 현황 • 기발효 FTA의 중간재 교역 성과분석 • 마치며 	

FTA EXPERTS

FTA와 품목분류

FTA 활용 성공사례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FTA 100% 활용하기

활용하기 쉬운 FTA PASS

② 전문가 기고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수출입 업체의 대응 전략 112

- 개요
- FTA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자 대응의 문제점
- FTA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자의 대응방안
- 결어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 방안 119

- 개요
- 품목분류 오류발생 현황
- 품목분류 오류발생 원인과 진단
- 결론

2014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150

- FTA 활용지원 분야 _ 중견기업의 롤모델, FTA 정착의 길 제시
- FTA 활용지원 분야 _ 위기의 '섬유' FTA 파고 넘어 세계로 비상(飛上)
-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분야 _ 원산지 검증 뒤엎은 한판 승부

① 취업성공 사례

원산지관리사로 블루오션을 향해하다! 169

② 관련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171

해외임가공 감면대상 제외비용, 물품 취급 수수료 등의 FTA활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72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대비 대한민국의 FTA를 FTA PASS가 지원합니다! 176

- 엑셀자동연계 기능이란?
- 엑셀자동연계 기능을 활용하려면?
- FTA-PASS 활용이 여전히 어렵다면?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실적 181

부 록 202

FTA 국가의 수출입 실적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한-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



김한성 교수
아주대학교



01

진행현황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이후에 EFTA, ASEAN, EU, 미국, 인도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거점국가들과의 FTA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영연방에 속하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가 완료되었다. 호주와의 양자간 FTA는 지난 2014년 4월에 공식적으로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2005년에 개시되어 거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협상이 진행된 한·캐나다 FTA도 2014년 9월에 정식 서명하였다. 또 다른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와의 양자간 협상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양국간 타결 선언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02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특징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세 국가가 모두 영연방이라는 점 외에 경제적·문화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첫 번째 공통점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원거리 교역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수출에서 對호주 수출은 약 9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3위 수출국으로 기록되었고 캐나다와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은 각각 52억 달러와 15억 달러로 교역대상국 순위에서 23위와 44위를 차지하였다. 수출규모면에 있어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對호주 수출은 유사한 원거리 교역국인 멕시코나 브라질 수출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對캐나다, 뉴질랜드 수출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보다도 낮다.

수출규모면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주목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특징이 된다. 2013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1인당 GDP는 6만 7천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며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도 5만 2천 달러와 4만 1천 달러로 각각 14위와 25위에 랭크되었다. 또한 2013년도 우리나라 수출액을 수출상대국 인수로 나눈 국가별 1인당 수입액에서 호주는 1인당 약 405달러의 한국 제품을 수입하였고 뉴질랜드의 1인당 한국 제품 수입액은 약 328달러에 달했다. 1인당 한국 제품 수입액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인 미국의 경우가 약 195달러 정도이고 일본도 약 273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호주와 뉴질랜드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주요 수출국 중, 중개무역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대만을 제외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가장 높은 1인당 한국 제품 수입액을 기록한 국가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이들 영연방 3국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투명한 시장접근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1차산업 혹은 가공 1차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뚜렷하게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모두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인 동시에 개방형 국가로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운용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또한 영어사용권 국가라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 특히 이들 국가에 수출을 시작하려는 신규 중소기업들의 시장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03

기업의
FTA 활용

최근 들어 FTA에 대한 관심을 체결에서 이행으로 특히 기업의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출확대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주요 목적이 된다. 특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출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대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FTA의 중요한 기대효과이다. 2007~13년 기간 국내 중소기업의 우리나라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對칠레 수출은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ASEAN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9.9%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 수출 중소기업 중, 칠레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비중도 2007년에 1.5%에서 2013년에는 2.6%로 증가하였고, ASEAN에 대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같은 기간에 25.6%에서 35.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상대 수입자의 FTA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무관심, 그리고 불투명한 관세행정으로 국내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절차와 경제적 역량을 지닌 선진국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서는 개도국이나 후진국과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한·미 FTA나 한·EU FTA와 같이 거대 교역국과의 FTA는 아니지만 높은 구매력과 1인당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투명한 접근성을 지닌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검증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AFTA를 경험하면서 미국의 원산지검증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캐나다, 개방형 국가이지만 섬유·의류 등 소수 품목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 관심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비준 및 발효에 앞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FTA 최근 동향

01 관세청 주요 이슈



「국제원산지콘퍼런스」 개최

지난 9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FTA! 이제
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FTA is now a must, not a
choice)라는 주제로 '2014 국제원산지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중남미 등 교역상대국과 기획재정부, 국제원산지정보
원, 한국관세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주한 미국·인도
네시아·베트남대사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업계 등 여러 분야의 원산지전문가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특히 코스타리카·니카라과·도미니카공
화국·과테말라 카메룬 관세청장, 브라질 칠레 온두라
스 관세청 차장 등 고위 관세당국 공무원들의 참석이
콘퍼런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4번째인 이번 행사는 ▲FTA활용 극대화방안 ▲호주, 중국과의 FTA 발효대비 대응전략 ▲한국, 미국, EU의 FTA이행경험 공유 등 3개 주제로 이어졌다.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47개국과 9개의 FTA를 발효해 경제영도 세계 3위,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율이 36%에 이른다”며 FTA 강국으로써의 위치를 부각시켰다. 김 청장은 또 “FTA체결국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 까다로운 검증절차로 기업인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과 부담이 느끼고 있다”며, “원산지 규정해석, 집행의 통일, 검증절차 표준화 등 원산지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관세당국간 협력경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 돕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FTA 이행의 중추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8월 22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세관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사회가 후원하는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FTA활용지원분야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분야 ▲일자리 창출분야 ▲통관애로 해소분야 ▲동반성장 분야 등 5대 분야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2편의 사례가 발표됐다.

이날 활용지원분야에서는 FTA 활용을 위해 생산방식을 변경해 특혜대상 신제품을 개발한 대구소재의 섬유기업, FTA원산지관리를 시스템화하고 더 나아가 협력사의 원산지관리까지 지원해 중견기업의 롤모델을 제시한 다이아몬드공구 제조기업 등 사례 5편이 발표되었으며,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분야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물품에 대한 사후 원산지검증을 완벽히 분석하고 준비한 2편의 실제 검증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세관의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FTA 인력과 구인기업 간에 일자리를 연결해 청년실업을 해소한 2편의 사례가 발표됐다.

아울러, 정부의 도움으로 고질적인 해외통관애로를 극복한 2편의 사례와 협력업체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으로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의 특별사례도 소개됐다.

김낙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행사를 통해 FTA 활용 과정 중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FTA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신(新)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전파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와 「원산지검증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10월 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수출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원산지검증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기아자동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참석하여 원산지검증 대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사례와 해외 통관애로사항,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했으며, 특히 캐나다, 호주와의 FTA 협정에서 자동차분야 주요 협상내용을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관세청은 “FTA 교역확대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역시 계속 증가(84건(‘11년) → 222건(‘12년) → 291건(‘13년) → 209건(‘14년 8월))하고 있다”며, “검증결과, 원산지규정 위반비율은 약 8% 수준으로, 국내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은 더욱 철저한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정부와 기업 모두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우리 경제에 신(新)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관세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국내 전체 수출액의 약 13%를 차지하며,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액의 절반이상을 FTA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대표적인 FTA 수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1000cc~1500cc 미만 승용차의 한-미, 한-EU* FTA 특혜세율

년도	한-EU FTA	한-미 FTA	비체결국
2012	5.3%	4%	8%
2013	4%	4%	8%
2014	2.6%	4%	8%
2015	1.3%	4%	8%
2016	0%	0%	8%

* 한-EU는 발효일(2011년 7월 1일)에 따라 매년 7월 기준

「2014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공동개최

관세청은 지난 9월 2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매일경제신문·mbn 등과 '2014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공동 주최하여 고졸 구직자들이 FTA 실무인력

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에 앞장섰다.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채용박람회로 올해로 3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박람회장 내에 ‘자유무역협정 채용관(이하 YES FTA관)’을 별도로 마련해 FTA 전문인력의 역할 및 전망 등을 소개 했는데, 이날 ‘YES FTA관’에는 에이테크솔루션, 세일전자 등 FTA 무역관련 실무인력 채용 의사가 있는 20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해 고졸 구직자 500여명에 대한 채용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취업 대박람회의 고졸 구직자들 중에는 전국 주요세관에서 실시하는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특성화고교생도 120명이 참여하여 기업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낙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고졸구직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갖고 “기업들이 원산지관리사 등 FTA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을 선호해 취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특성화고교생을 FTA 전문인력으로 적극 양성하고 이들과 중소기업과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관세청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사업이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고용을 연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 경남지역 YES FTA 취업박람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10월 2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지방 중소기업의 FTA 인력난을 해소하고 FTA 활용을 증대할 목적으로 부산본부세관이 주관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한국관세사회가 후원하는 「부산 경남 지역 YES FTA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성장기업(주), (주)금양, (주)흥아포밍, 희창물산(주) 등 부산 경남지역 우수기업 3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취업희망자는 구인기업과 사전 매칭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당일 박람회에 참여한 취업 희망자에게는 현장에서 면접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원산지관리사 응시 수험생 편의 대폭 확대

관세청은 지난 8월 시행한 제12회 시험부터 서울·대전·제주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지역에 대한 다수 응시생들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관세청은 시험 응시 장소 확대로 지방 응시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응시 및 합격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해 4월에 치러진 11회 시험까지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사전교육의무제'에 따라 해당 교육 응시자에게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4월 30일자로 이를 폐지, 8월에 시행된 제12회 시험부터는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연간 2,000명(2013 기준)이 넘는 응시생들의 편의증진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자격시험인 제13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11월 15일 시행)은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시험일정과 장소는 국제원산지정보원홈페이지(<http://www.origin.or.kr>)를 참조하면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FTA·원산지 실무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거주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험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23개 표준코드로 마련

관세청은 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적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기준이 없어 FTA 활용을 위한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코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한-미 FTA 등 9개 협정과 관련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하 PSR)수는 약 4만 6000개에 이른다. 그동안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협정별로 다르고 품목별도 다양해 물품 공급업체들이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쓰며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주고받는데 혼란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한-EU협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가 적용되는 제8404호의 보일러기기의 경우 업체별로 PSR표기를 VAR45%, RVC45%, R45%, B45%, MC45% ex-work45% 등으로 달리 나타내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표준코드 'R45'로

통일해 기존의 어려움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표준코드 기재방법

원산지결정기준 의미	기재방법	표준코드
A change to this chapter from any other chapter (HS 2단위 세번 변경)	CC	C2
A change to this 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 (HS 4단위 세번 변경)	CTH	C4
A change to this subheading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from any other heading (HS 6단위 세번 변경)	CTSH	C6
All the materials used are wholly obtained (완전 생산기준)	WOR	W0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XX used are wholly obtained (특정 류의 물품의 완전생산 기준)	WOR of Ch XX	WOEX
The value of all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 works price of the product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VAR(50)	E50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d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세번 변경 없이 역대 부가가치 기준이 (a) 35% under the build up method or, (b) 집적법에 의거 최소 35% 이상이거나 (c) 45% under the build-down method, (d) 공제법에 의거 최소 45% 이상일 것)	RVC(35/45)	R35/R45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d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50% under the net cost method (세번 변경 없이 순원가법에 의거 역대 부가가치 기분이 최소 50% 이상 인 것)	NC(50)	N50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heading XXXX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특정 호에 사용된 모든 물품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VAR(50) of XXXX	E50EX

미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지침 배포

관세청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내놨다.

1.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 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과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사례 1] 소급 발급되는 경우 (적용)



[사례 2] 먼저 발급되는 경우 (적용)



2.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 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계약 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사례 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적용)



[사례 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적용 배제)



3.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에 따라 원산지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하나 예외적으로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지침은 2014년 9월 22일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 발간·배포

관세청은 8월 20일, 수출기업들이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기준 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을 설명한 ‘수출입 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최근 FTA 발효가 확대되어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도 계속 증가하여 수출기업의 검증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나, 정상 검증 준비서류는 원산지 입증 생산서류, 거래서류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수출업체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FTA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 특혜를 배제(추가징수)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체의 FTA 활용애로 해결을 위해 원산지 기준별,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안내 책자에는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기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거나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작성과정에서 산업별 협회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 책자는 전국 약 160개 산업별 협회와 수출기업에 배포되었으며, '관세청 FTA 포털(yesfta.custom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세관의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센터)'에서도 상담 후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YES FTA 센터」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 요청이 많은 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설명회 등을 열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YES FTA 센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주요 세관에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기업별 FTA활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심사, 해외통관애로해소, 원산지 사후검증지원 등 FTA 준비부터 활용, 문제 해결단계까지 집중 지원하고 있다.

02 우리나라 FTA동향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난 10월 16일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행사는 기업의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FTA 활용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경진대회에는 총 109개 기업의 FTA 활용 성공 사례와 9건의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6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기업 15건, 학생 3건)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본선 진출작들에 대한 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기업부문은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관세청

[YES FTA 센터]

• 서울본부세관(02-510-1703)

• 대구본부세관(053-230-5252)

• 부산본부세관(051-620-6881)

• 광주본부세관(062-975-8052)

• 인천본부세관(032-452-3160)

• 평택세관(031-8054-7047)

선정하고, 대학(원)생 부문은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을 각각 선정하여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FTA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사례,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다 FTA를 통해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출에 성공한 사례, CEO의 관심과 전사적인 협업체계 구축, 협력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FTA를 활용하기 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한 사례들, 시장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이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빛을 본 사례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쌀 가공업체의 한-중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아이디어,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한 지방 성형기기 수출 아이디어 등 아직 협상중이거나 발효되지 않는 FTA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가상 사례들과 애완견 인구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 기저귀를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가상 사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 과제인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확대에 성공한 여러 사례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FTA무역종합지원센터도 앞으로 우수 활용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관세포럼, 추계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포럼(회장: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10월 19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우리나라 원산지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4년도 추계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먼저 한남대학교 정재완교수는 ‘자유무역협 (FTA: Free Trade Agreement)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규정시 고려할 관세율에 대한 연구’를, 관세청 백형민 사무관은 ‘원산지제도의 법령체계 등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부산본부세관의 한일권 관세행정관은 ‘공제요소에 대한 관세평가검토’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으며, 마지막으로 관세무역개발원 김영춘 박사는 ‘관세청 고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관세포럼’은 2000년 3월 이래 매분기 세미나를 열어왔으며, 현재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 137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FTA 비즈니스 포럼」,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의 11개 주요 도시에서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중이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FTA 활용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지역 내 수출기업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자유무역협정 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포럼은 지역 경제단체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해 FTA 활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 내 기업과 지자체가 주요 FTA에 대한 의미와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 스스로 FTA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TA 비즈니스 포럼」은 9월 대전에서 시작되었으며, 11월 경기도 수원시를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이 종료된다.



NEWSis, 광주·전남 FTA 비즈니스포럼

11월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인천(11.04, 화) : 인천상의
- 제주(11.07, 금) : 제주상의
- 충북·세종(11.11, 화) : 충북대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 경기(11.13, 목) :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문의

무역협회, 한-캐나다 FTA 활용 캐나다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5일, FTA로 접근성이 높아진 캐나다 시장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캐나다 FTA 활용 캐나다 대형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한-캐나다 FTA, 캐나다 소매시장에 주목하라’ 보고서는 연간 약 514조원 규모의 캐나다 소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의 특징과 소비자 선호도, 영어 외 공식언어인 불어권의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시아계 이민자 인구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 소매시장 진출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라벨링시 영어 및 불어 병기 의무 규정 등 캐나다 시장의 고유 특징 이해 ▲토론토·밴쿠버 중심으로 아시아계 인구에 대한 공략과 한류 활용 ▲밴쿠버·에드몬튼·토론토·캘거리·오타와·몬트리올 등 6대 대도시 우선 진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 관련제품 공략 ▲인증·안전규정·포장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꼽았다. 캐나다는 다른 선진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이민자 유입으로 G8 국가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고, 소매판매도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자동차,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화장품 및 향수 등의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쇼퍼스 드럭 마트의 유통전문가인 제시카 김은 “캐나다는 대형 유통망 위주로 시장이 구성돼 있으며, 이런 시장 특성을 고려한 진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 시장을 미국과 동일하게 인식하는데, 캐나다 시장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FTA발효 이전에 캐나다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캐나다 FTA 체결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된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정 비준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5년 협상 개시 이후 9년만이다.

한-캐나다 FTA협상 단계에서 민감품목인 자동차와 농축산물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사한 쟁점으로 정체 상태에 있던 호주와의 FTA가 타결되면서 한-캐나다 FTA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FTA 양허대상 제외

정부는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WTO 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또한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의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다.

관세율 등은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하며, 국제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관세화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FTA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 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의 관세율로 수입허용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유통 금지를 추진중이며,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조를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보다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양허 대상 제외란?

관세양허란, “관세를 낮추겠다”는 약속

FTA협정마다 관세양허의 수준은 다르며, 동일 FTA 내에서도 품목별 양허 수준과 양허 유형도 다르다. FTA양허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즉시 철폐 품목, 시행 후 3년 이내 철폐하는 조기철폐품목, 시행 후 10년 내 또는 10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는 중·장기 철폐품목으로 구분되며, 농림축산물 중 일부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는 9월 16일, 4월에 정식 서명된 한-호주 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호주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주측은 지난 5월 한-호주 FTA의 의회 심의를 개시하여 9월~10월 중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로 30일 후부터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한편,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호주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 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통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3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자동차·일반기계 산업의 경우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15년 평균 1.5조원) 등으로 연평균 2.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를 기대하였고,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의 쇠고기·보리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연평균 약 1,102억원(총 농업 생산의 0.22%)의 국내생산 감소를 예측했다. 수산업의 경우 소금·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연평균 약 0.45억원 생산 감소)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한-호주 FTA뿐 아니라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한-캐나다 FTA('14. 3월 타결)까지 종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 대해 총 2.1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FTA 제5차 협상 베이징서 개최

지난 9월 1일부터 5일간 한-중-일 FTA 제5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와 함께 경쟁, 지식재산권, SPS(위생/검역), TBT(기술장벽),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등 18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한·중·일 FTA가 동북아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 하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각국의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 및 경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협상 가속도를 높이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로 GDP 총량이 약 15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 GDP 총량의 20%, 동북아 GDP의 90%로 EU를 초월하는 수준이다.

2013년 3월, 제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 후 이번 5차 협상까지, 3국은 상품무역 감세 모델리티, 서비스 무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협상 중이며, 제6차 협상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9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개최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9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이 계획보다 하루 연장된 지난 17일 완료되었다. 양측은 상품,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각 분과별 협상을 통해 잔여 쟁점을 해소하고, 특히 지난 제8차 공식협상(8월, 서울)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상품 분야에서 양국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협의 등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상품, 원산지, 협력 등에서 남은 대다수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4위 교역파트너로, 수출 44위, 수입 41위국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교역품목은 휘발유, 승용차, 경우, 건설중장비 및 합성수지 등이며, 뉴질랜드는 우리의 휘발유·경유 제품 대부분에 대해 이미 무관세(0%)를 적용중이다.

한-베트남, 연내 FTA 체결 의지 밝혀

지난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응웬 푸 쩡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한-베트남 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밝혔다.

쩡 서기장은 베트남내 권력 서열 1위로, 지난해 9월 박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이은 답방으로써 박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방한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베트남 FTA 협상의 연내타결 추진, 베트남 내 각종 대형 에너지 인프라사업 참여, 한국계 은행의 베트남 진출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등 경험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체결'을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교섭대표간 제7차 한-베트남 FTA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협력 등 각분야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기준 우리의 제9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대상국(아세안 국가 중 2위 교역국, 최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의 FTA 체결은 기존 한-ASEAN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협상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두나라의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국 FTA 제13차 협상 개최

한-중 FTA 제13차 협상이 2014. 9. 22(월)~9. 26(금)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며,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였으나, 아직 양측 입장차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하였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를 전체 22개 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SPS(위생·검역)', '최종 규정' 장이 문안 합의되어, 기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되었으며,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하였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對중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3 해외 FTA동향

인도, ASEAN과 서비스부문 FTA승인

인도는 지난 9월 8일 ASEAN 9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서비스 전문직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투자부문 FTA협정에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총 10개국 중 필리핀만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인데, 필리핀 역시 내부 승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본 협정은 서비스 부문의 전문 인력과 해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추진되었으며, 조항의 투명성, 국별 규제, 협정 승인,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개도국 참여 확대, 서비스분야 합동 위원회, 이행평가, 분쟁해결, 제3국에 대한 FTA혜택 제한 등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와 ASEAN 간 상품분야에 대한 FTA는 이미 지난 2009년 체결된 바 있으나, 아세안 지역 내 관세가 기본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혜택은 미미한 편이었다.

이번 협정의 승인에 따라 역내 18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시장 규모와 서비스 부문과 연계된 4000개 이상의 제품계열에 대해 효력이 미칠 전망이다.

2013년 기준 인도 ASEAN간 무역규모는 800억 달러 수준이며, 인도 언론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2015년까지 ASEAN 국가와의 무역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 승인

유럽의회는 지난 9월 16일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을 승인하고, 같은 날 우크라이나 의회도 동일 협력협정 비준을 승인했다.

협정은 올해 11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보복조치에 따라 EU,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협상을 통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류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국내 반대세력과 러시아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EU와 FTA 협상을 체결했으며,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조지아, 몰도바 3개국에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친유럽노선으로 기움에 따라 경제보복을 공언해 왔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7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정육제품 및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하여 위생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조치한 바 있다.

멕시코, FTA 미체결국산 신발 수입관세 인상

멕시코는 덤핑제품으로부터 자국의 신발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FTA 미체결국산 신발에 대해 25~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신발제품이 수입 가능한 세관을 9개로 별도 지정함에 따라 해당 세관 외 다른 세관으로부터는 신발제품을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멕시코는 주변국과 FTA를 확장하면서 제조업 강자로 부상할 기회를 개척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과 FTA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2012년에는 콜롬비아, 페루 및 칠레와 태평양동맹을 체결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더 키웠다.

■ 멕시코 국가별 FTA체결 현황

협정명	대상국가
NAFTA	미국, 캐나다
G3	콜롬비아(베네수엘라, '06.11 탈퇴)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멕시코-칠레 FTA	칠레
멕시코-EU FTA	EU 28개국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TN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AELC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멕시코-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멕시코-일본 FTA	일본
멕시코-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멕시코-페루 FTA	페루
멕시코-중미 5개국 FTA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파나마 FTA	파나마

ASEAN-EU FTA 가능성 제기

지난 7월 23일 브뤼셀에서 ASEAN과 EU 38개국 외교 부장관들은 각국들과의 FTA가 원활히 진행중임을 발표하고 EU와 ASEAN 전체의 FTA가 준비되었다며, FTA 체결 가능성을 밝혔다.

EU 통상위원은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은 타결하였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이런 각국들과의 FTA는 동남아시아 전체와의 FTA를 위한 준비라고 발표했다.

또한 EU는 앞으로 아세안국가의 국제범죄, 마약, 테러 등 범죄 근절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보탬 수 있음을 밝혔다.

EU집행위, 2017년까지 유럽인증수출자 확인시스템 구축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수출업체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gistered Exporter's System)인 '렉스(REX)'를 구축해 2017년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EU와 거래하는 국내 수입업체는 상대 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 할 수 없어 FTA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사후 추징 대상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 '렉스(REX)'가 개통되면 앞으로 유럽에서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상대 업체가 FTA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본-몽골 FTA 타결

지난 7월 22일 일본과 몽골간의 FTA가 타결됐다. 지난 10년 동안의 일본 수출품 96%와 모든 몽골 수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현재 일본과 몽골간의 무역은 소규모이지만 앞으로 몽골의 광물 등 자원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무역 의존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이다. 양국간 수출 규모는 2013년 기준, 일본의 대몽골 수출은 2,88억 달러, 몽골의 대일본 수출은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외교부는 현재 몽골이 북한과 외교적 교류를 지속하는 몇 개 되지 않는 국가임을 고려해, 이번 FTA로 북한의 일본 포로들에 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콩-칠레 FTA 발효

지난 10월 9일, 홍콩과 칠레간의 FTA가 발효됐다. 이번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측의 투자자와 거래자는 각각의 시장에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칠레는 홍콩산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 88%를 즉시 철폐하고 추가 10%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홍콩과 칠레 간의 투자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측은 협정의 발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별도의 포괄적인 계약을 협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ASEAN FTA 추진 현황

홍콩은 올해 발효된 홍콩과 칠레간의 FTA에 앞서 2003년 중국, 2010년에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2011년 6월에는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012년에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무역·서비스산업·투자의 활발한 교류를 꾸준히 도모해왔다.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ASEAN과의 FTA 협의에 동의했다. 홍콩-ASEAN FTA는 홍콩과 아세안 간 더욱 긴밀한 경제 융합은 물론 상호 보완성 및 협동효과를 가져다 주어 아세안과 홍콩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호주 FTA 동향

올해 11월 브리즈번에서 개최 예정인 G20 회의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중국-호주 간 FTA가 체결될 전망이다.

호주가 최근 한국, 일본과의 FTA를 연이어 체결함에 따라 중국은 호주와의 조속한 FTA 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베트남과 FTA 촉진

EU 공동외교 안보정책 상급대표는 지난 8월 12일 베트남과 연내 FTA 서명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EU는 베트남 최대의 수출국으로 2012년 기준 약 28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바 있다. EU-베트남 FTA는 그동안 베트남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던 FTA이기도 하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FTA 체결 노력

스리랑카 산업통상부 장관은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와의 FTA체결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산업통상부 장관 “두 국가간의 무역거래는 최근 67%까지 증가했으며, 양국이 서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가까워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이스라엘 FTA 체결

지난 10월 6일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와 이스라엘간의 FTA가 체결되었다.

이번 FTA로 인해 이스라엘의 對미얀마 투자촉진, 양국간 교역확대 및 미얀마 산업부문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의 기FTA 체결국으로는 호주-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중국, EU, 일본, 러시아, 미국, 파키스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ASEAN FTA의 활용 실태와 시사점

기관발급 실적을 중심으로

송경은 선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01 한-ASEAN FTA 8년 교역현황

對ASEAN 교역 현황

ASEAN¹⁾은 2014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2%, 수입의 10.2%를 점유하는 주요 교역대상 국가 군이다. 교역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역의 12.8%를 차지하여, 중국(20.8%)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이는 서구의 선진경제권인 미국(10.3%), EU(10.7%)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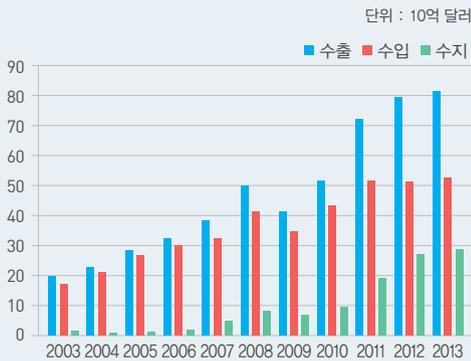
[그림 2]에서 확인되듯이 ASEAN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에 있는 교역국으로, 무역의 흑자 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은 2014년 8월말 기준 5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수입은 3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다.

그림 1 우리나라의 교역국 비중(2014. 8)



1)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다.

그림 2 對ASEAN 수출입 현황(2003~2013)



2013년 품목군별 수출입 비중 변화



수출

전자전기제품(28.4%), 광산물(21.6%), 기계류(17.5%)

2013년 對ASEAN 수출 구조를 MTI 1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자전기제품, 광산물, 기계류 등에 집중된 구조가 확인된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자전기제품은 38.4%에서 28.4%로 FTA 이전에 비해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고, 광산물과 기계류는 각각 13.2%에서 21.6%, 14.4%에서 17.5%로 그 비중이 확대 추세에 있다.

철강금속제품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등의 수출규모는 FTA 발효 이후 전체 수출액과 비례하여 확대되어 비중은 FTA 전후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 섬유류, 생활용품 등은 수출의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FTA 이전보다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3년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은 FTA 발효 전 3년에 비해 약 2.8배 이상 확대되었다. 동기간 우리나라 對세계 수출액이 1.9배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ASEAN으로의 수출은 FTA 이후보다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1 FTA 발효 전후 對EFTA 수출 증감률(MTI 1단위)

단위 : 백만 달러, %

MTI 1단위	발효전 3년 평균 (2004~2006)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자전기제품	11,181	38.6	23,280	28.4
광산물	3,837	13.2	17,688	21.6
기계류	4,163	14.4	14,362	17.5
철강금속제품	3,288	11.3	9,482	11.6
화학공업제품	3,109	10.7	8,684	10.6
섬유류	2,183	7.5	4,959	6.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629	2.2	1,546	1.9
농림수산물	237	0.8	1,206	1.5
생활용품	288	1.0	519	0.6
잡제품	62	0.2	269	0.3
합계	28,977	100.0	81,997	100.0



수입

광산물(38.1%), 전자전기제품(25.1%), 농림수산물(9.9%) 등

2013년 對ASEAN 수입구조는 광산물, 농림수산물 등 원재료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산물은 2013년 對ASEAN 수입의 38.1%를 유지하며 FTA 이전과 마찬가지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군이다. 전자전기제품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FTA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FTA 발효 전 3년 평균 35.7%에서 2013년 25.1%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對ASEAN 수입 품목군 가운데 그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나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섬유류와

철강금속제품이다. 석유류는 FTA 발효 전 3년 평균 611백만 달러에서 2013년 3,990백만 달러로 약 6.5배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2013년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입은 FTA 발효 전 3년 평균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되었다.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對ASEAN 수입은 평균적인 수준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

■ 표2 FTA 발효 전후 對EFTA 수입 증감률(MTI 1단위)

단위 : 백만 달러, %

MTI 1단위	발효전 3년 평균 (2004~2006)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광산물	10,309	37.8	20,329	38.1
전자전기제품	9,745	35.7	13,415	25.1
농림수산물	2,455	9.0	5,279	9.9
화학공업제품	2,160	7.9	4,120	7.7
석유류	611	2.2	3,990	7.5
철강금속제품	847	3.1	2,786	5.2
기계류	601	2.2	1,632	3.1
생활용품	301	1.1	1,079	2.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14	0.8	598	1.1
잡제품	48	0.2	110	0.2
합계	27,290	100.0	53,339	100.0



무역수지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철강공업제품 무역수지 흑자 확대

對ASEAN 무역수지는 FTA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2013년 약 17배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주요 품목군은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등이다. 특히 전자전기제품은 약 6.9배, 기계류는 3.6배 확대되었다. 이외 광산물,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등 일부 품목군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FTA 발효 전후 對ASEAN 무역수지 (MTI 1단위)



2013년 우리나라가 교역한 對ASEAN 회원국별 무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수출의 경우 싱가포르 27.2%, 베트남 25.7%, 인도네시아 14.1%, 필리핀 10.7%, 말레이시아 10.5%, 태국 9.8% 순으로 상위 6개국 이 98.0%를 점유하고 있다.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이다. 對베트남 수출은 FTA 발효 직전 3년 평균(2004~2006) 수출액이 3,538백만 달러 였으나 2013년 21,088백만 달러로 약 6배가량 증가 하였으며, ASEAN 내 수출 비중도 12.7%에서 25.7%로 증가하였다.

그림 4 對ASEAN 회원국 FTA 전후 수출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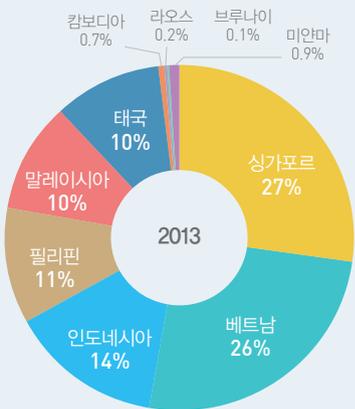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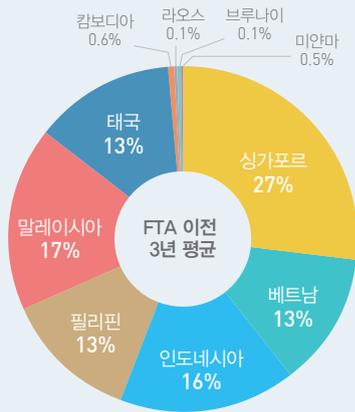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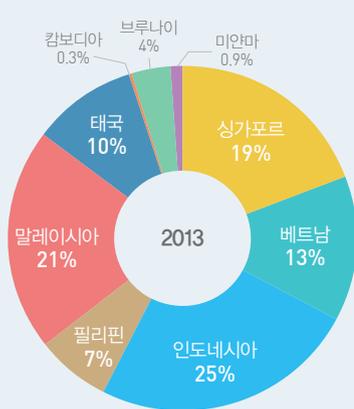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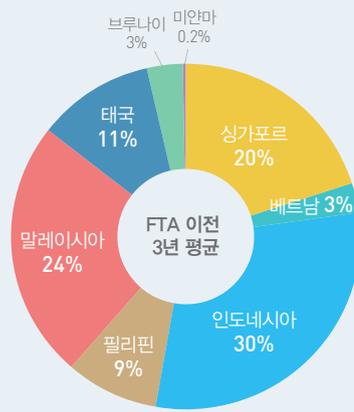


그림 5 對ASEAN 회원국 FTA 전후 수입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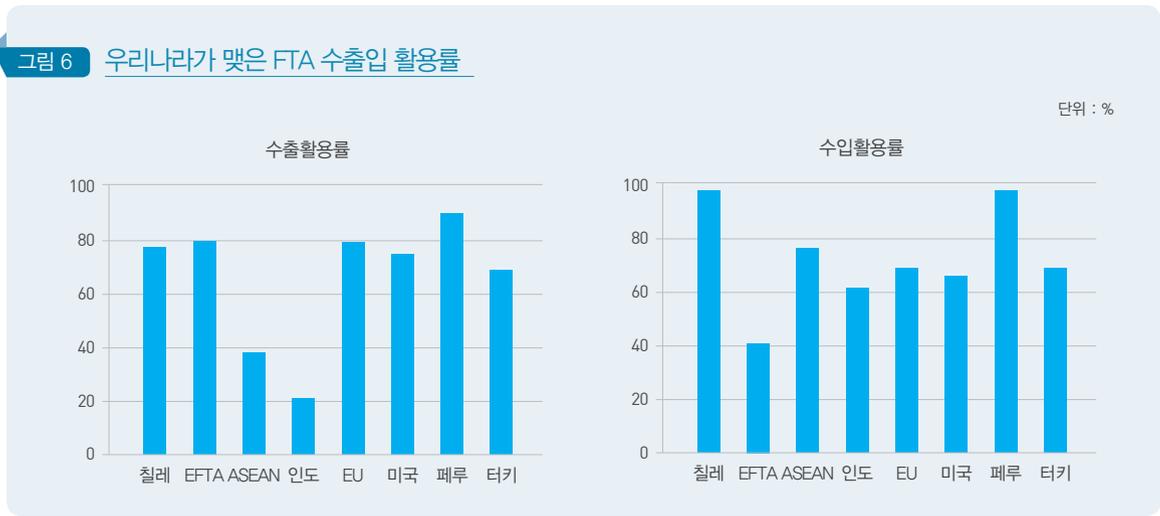
2013년 對ASEAN 회원국별 수입비중은 인도네시아 24.7%, 말레이시아 20.8%, 싱가포르 19.4%, 베트남 13.5%, 태국 9.8%, 필리핀 6.9% 순으로 상위 6개국이 95.2%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FTA 이전 3년 평균 대비 가장 비중이 많이 증가한 국가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이다. 對베트남 수입은 FTA 발효 직전 3년 평균(2004~2006) 수출액이 764백만 달러였으나 2013년 7,175백만 달러로 약 9.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ASEAN 내 수입 비중도 2.9%에서 13.5%로 증가하였다.

무역의 확대, 저조한 FTA 수출 활용률

이처럼 최근 10년간 한-ASEAN 간 교역은 수출입 양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FTA 발효를 기준으로 볼 때, 2013년의 수출입 실적은 FTA 이전 3년

대비, 수출은 2.8배, 수입은 2.0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ASEAN간 수출입이 확대되는 추세와는 반대로 최근 공표된 한-ASEAN FTA의 수출 활용률은 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²⁾ [그림 6]에서 확인되듯이 한-ASEAN FTA 활용률³⁾은 수출의 경우 38.7%에 불과하여 타 FTA에 비해 매우 활용률이 저조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 활용률은 75.6%로 타 FTA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한-ASEAN FTA는 수출입간 불균형적인 FTA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수입자들이 FTA를 활용한 수입을 통해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ASEAN의 수입자는 상대적으로 한국산 물품의 FTA 적용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 FTA 활용률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관세청에서 배포한 2013년 12월 24일자 “우리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이 대표적이다. 해당 보도자료는 2013년 11월 말 기준의 FTA 활용률을 추계한 결과이며, 본 글에서 [그림 6]은 관세청으로부터 자료의 협조를 받아 2013년 말 기준 활용률을 작성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3) FTA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 중에서 특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을 의미한다.

對ASEAN 수출 FTA 활용의 저조 원인과 관련, 기업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ASEAN측 기업이 F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ASEAN 지역의 관세행정으로 ASEAN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를 향유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용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ASEAN FTA 수입 활용은 수출 부문과 다르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ASEAN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도의 FTA 및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즉, 한-ASEAN FTA의 수출입 활용률에는 상반된 모습이 존재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FTA와 관련된 가장 일차적인 데이터인 우리나라의 對ASEAN 회원국의 FTA 전후 교역 변화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에 대한 비교 분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하의 글에서는 관세청의 자료 협조 하에 FTA 교역 및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태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한-ASEAN FTA 수출 활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02 한-ASEAN FTA의 활용 실태 분석

수출활용 : 기관발급⁴⁾ 실적



연도별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액

[그림 7]은 최근 3년간(2011~2013)의 기관발급 실적이다. 동 기관발급 실적은 FTA 특혜관세 혜택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요청에 의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각 세관에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건이다.⁵⁾

2011~2013년간 對ASEAN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건수는 2011년 약 11만건에서 2013년 14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금액은 2011년 8,376백만 달러, 2012년 7,924백만 달러, 2013년 8,952백만 달러로 [그림 7]에서와 같이 2012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기간 對ASEAN 총수출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형식을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눈다.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은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FTA 이다.

5)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ASEAN 회원국의 기준관세와 FTA 특혜관세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않는 품목도 실적에 포함되어 있다. 즉 FTA 특혜 관세 혜택 대상이 아닌 비혜택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은 기관발급 실적 해석 시 유념해야 할 점이다.

그림 7 對ASEAN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금액 및 건수



품목군별 기관발급액 및 비중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을 품목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체 對ASEAN 수출 실적과는 그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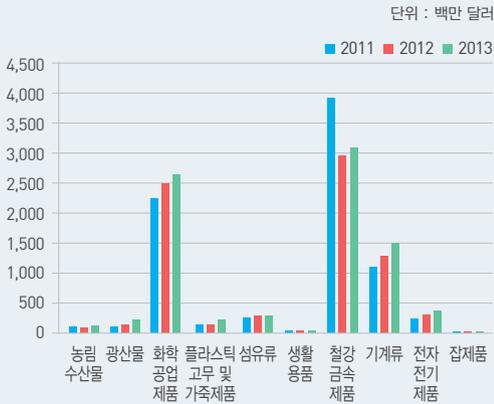
2011~2013년 평균치 기준 對ASEAN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품목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철강금속제품으로 약 39.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이 29.8%, 기계류가 15.7%로 세 품목군이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액의 84.6%를 점유하고 있다(그림 8)과 [그림 9].

반면 2013년 기준 對ASEAN 수출액의 약 28.4%를 차지하는 제1위 품목군인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분의 약 3.3% 점유에 불과하다. 각 국별로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지만, 최근 전자전기제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전자전기제품 전체 수출액 가운데 FTA 특혜수출대상이 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자전기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이 낮은 원인은 상대국에서의 개방 수준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한다.

품목군별로는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등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2012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철강금속제품 부문에서 감소가 그 원인이었다.

그림 8 對ASEAN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의 품목군별 실적(2011~2013)



국가별 기관발급

ASEAN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 금액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2011년의 경우 전체 對ASEAN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인 50.9%가 對인도네시아 수출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2013년간 평균치는 44.2%에 달한다.

對ASEAN 원산지증명서 발급액의 두 번째 점유율을 보이는 국가는 태국으로 최근 3년 평균 23.4%를 점유하고 있다. 3위국은 필리핀으로 최근 3년 평균 14.6%, 4위국은 베트남으로 9.1%, 5위국은 말레이시아로 7.3%로 나타났다. 즉 상위 5개국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수출액이 98.6%에 달하고 있다.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등의 최빈개발도상국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2013년 기준 전체 對ASEAN 회원국 가운데 약 2.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 등 4개국은 對ASEAN 회원국내 수출 점유율도 낮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중은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 對ASEAN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품목군별 비중(2011~201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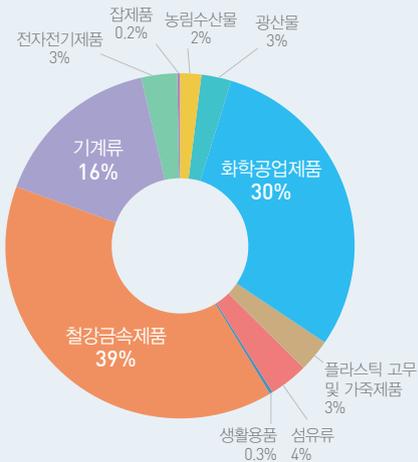


그림 10 對ASEAN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회원국별 비중(201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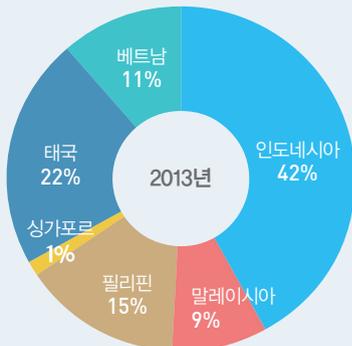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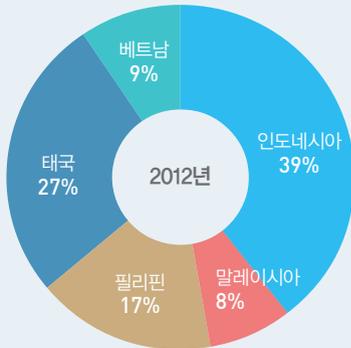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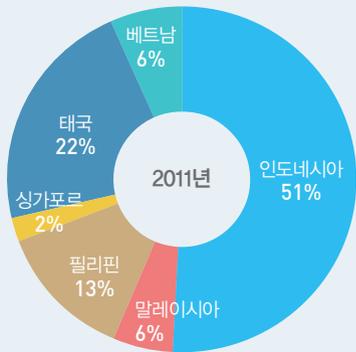


그림 11 2013년 對ASEAN 내 회원 각국별 수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액의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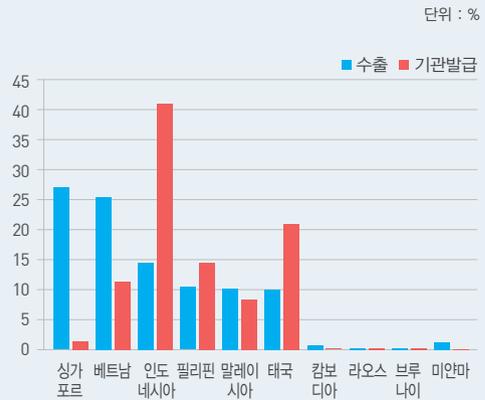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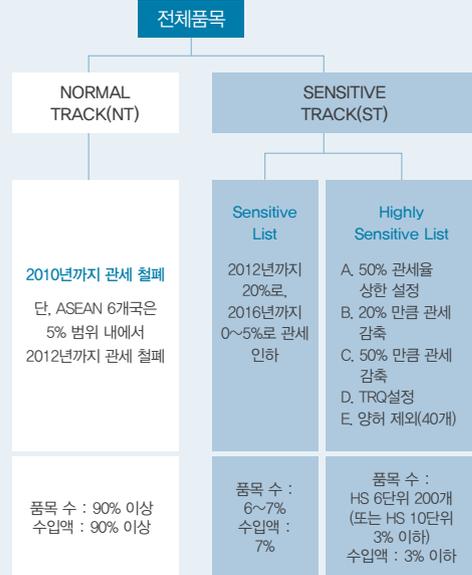


그림 12 한-ASEAN FTA 양허안 : 관세철폐 분류안



자료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편 2013년 우리나라의 對ASEAN 회원국 내 수출 점유율 25.7%에 달하는 베트남의 경우 전체 對ASEAN 회원국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액 중 비중이 9.1%에 불과한 반면, 對ASEAN 수출 점유율이 14.1%인 인도네시아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액 비중이 42.0%에 달한다. 對ASEAN 수출 점유율 10% 내외를 보이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시 각기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ASEAN 협정의 양허안 자체가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되고, 또한 어떠한 품목을 일반/민감 품목군에 포함하는가는 각국이 자국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민감품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의 최빈국은 보다 개방의 속도와 개방의 범위를 느슨하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역시 ASEAN 6개국보다는 관세철폐기한 및 민감품목군 분류의 상한선 등에서 완화된 개방을 규정하고 있다.⁶⁾

한편 싱가포르의 경우 기체결된 한-싱가포르 FTA의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동시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싱가포르의 對세계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활용 : 품목군별 활용 실적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입에 대한 FTA 활용은 전술한대로 타 FTA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수입은 ASEAN 회원별 구분 없이 ASEAN의 전체 품목군별 활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2013년 對ASEAN 수입품목 가운데 FTA특혜수입대상 이 되는 품목의 금액 비중을 FTA 개방도⁷⁾로 간주했을 때, 對ASEAN의 수입 FTA 개방도는 2013년 98.3%로 나타났다. 석유류가 91.2%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용품 87.2%, 잡제품 83.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76.2%, 농림수산물 71.9%, 광산물 57.9%, 농림수산물 57.0% 순으로 식료품, 경공업품, 생활자재 등의 품목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등 장기 고비용 투자가 소요되는 기간산업, 고부가가치 품목,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다.

6)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 시기는 ASEAN 6개국은 2012년, 베트남 2018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2020년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7) 본문에서 개방도는 총수출(입)액 대비 FTA 관세특혜 대상 수출(입)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그림 13 對ASEAN 총 수입액 대비 FTA 관세 특혜 대상 수입금액의 비중



2013년 FTA 특혜활용 대상 가운데 특혜수입 실적 비중이 무려 99.4%에 달하고 있다. 광산물은 對ASEAN FTA 대상품목 가운데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45%가 집중되어 있는 수입 1위 품목군이다. FTA 수입 활용률이 다소 저조한 품목군은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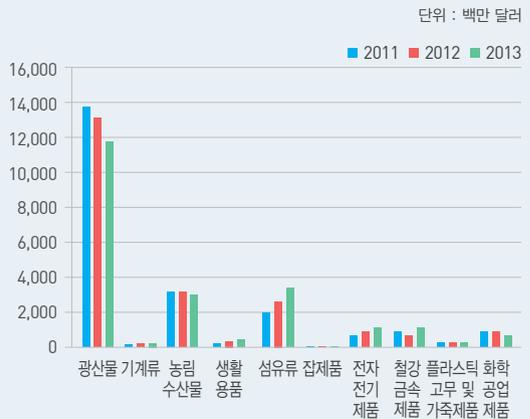
FTA 수입 활용률이 높은 품목군은 광산물,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 ASEAN 내 원자재 조달이 쉽고 ASEAN의 경제발전 수준에서 가공 단계에 따른 원산지 입증에 용이한 품목군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FTA 수입 활용률이 다소 저조한 품목군은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하위 밴더들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협조,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입증이 다소 까다로운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對ASEAN FTA 수입 활용률



[그림 14]와 [그림 1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입 가운데 FTA 수입 활용률과 FTA 특혜수입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광산물 부문이다.

그림 15 2001~2013년 품목별 對ASEAN FTA 대상 특혜수입액



품목군별로는 기계류,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 제품 등에서 특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가장 비중이 높은 광산물은 최근 3년간 특혜수입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물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등락, 국내 수요 변동에 의해 수입 국이 유동적임을 수치 해석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2011~2013년간 특혜수입 규모는 평균 23.3백만 달러 수준으로, 광산물에서 감소된 특혜수입분이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등에서 만회되고 있다.

03 ASEAN 주요 국가의 FTA 전후 수출 변동과 기관발급실적 분석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6%의 성장률로 확대되고 있다. FTA 발효 전 3년인 2004~2006년 평균 36.8억 달러에서 2013년 115.7억 달러로 약 2.6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012년에는 139.5억 달러로 수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2013년간 인도네시아의 FTA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을 보면, 2012년의 실적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對인도네시아 수출 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액은 약 42.6억 달러였으나 2012년 31.3억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16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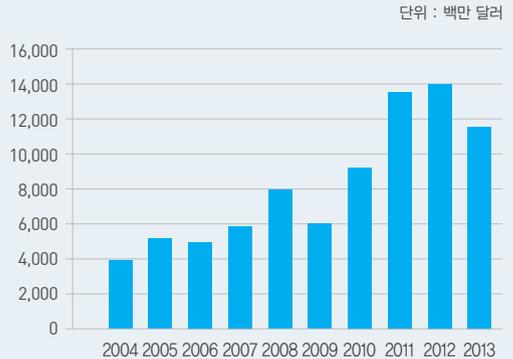


그림 17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 등 세부 FTA 특혜 내역을 살펴보면,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액의 감소가 동시에 FTA 활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확인된다.

그림 18 對인도네시아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품목군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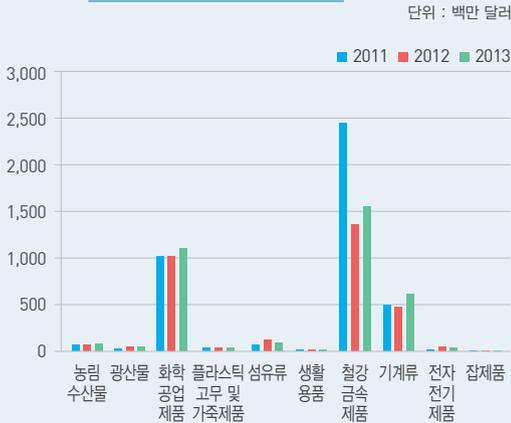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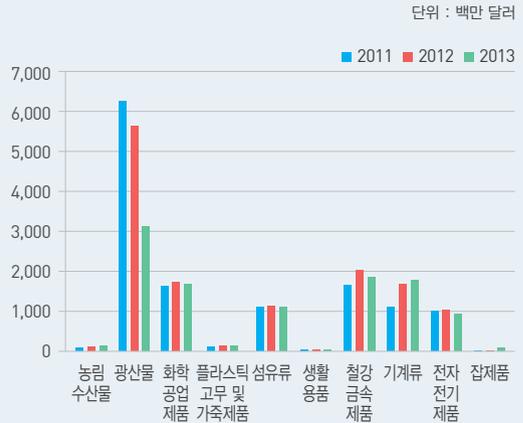


그림 19 對인도네시아 수출의 품목군별 실적



[그림 18]에서 확인되듯이 대부분의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액의 감소분은 철강금속제품 부문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 철강금속제품의 수출액 가운데 FTA 특혜비중은 약 28.6%로 추정된다.⁸⁾ 즉 FTA 비대상 품목이 70%이상이다. 그리고 2012년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액의 감소분 역시 FTA특혜 관세와 기준관세율의 차가 없는 FTA 비대상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철강금속제품 부문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의 수출액의 감소분은 협의의 의미에서 FTA 특혜품목 대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대표적 철강금속제품인 HSK 7208.39-9000호의 對인도네시아 FTA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수출은 2011년 1,668백만 달러에서 2012년 244백만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당품목은 협정관세와 기본세율이 5%로 동일한 FTA 비혜택 품목이다.⁹⁾ 이에 기업 입장에서의 FTA 활용은 직접적인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물품취급수수료 감면, 당사국에서의 가공시 누적기준 적용 등 원산지의 제품으로 인정되었을 때의 혜택 가능 여부가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것으로 생각된다.

8)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500대 품목 중 철강제품부문에 해당하는 부문만을 FTA 대상 비대상을 구분한 뒤, FTA 대상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500대 품목이 아닌 전체 철강부문을 고려하여 추정하면, 철강부문의 FTA 대상은 26.7~ 33.5%로 도출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500대 품목의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약 96.3%를 차지하며, 500품목 내 철강제품부문은 전체 對인도네시아 수출 철강제품의 약 93.2%를 점유한다.

9) 참고로 FTA 특혜 비대상으로 판단되는 HSK 7208.39-9000호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은 FTA 활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 3)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FTA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 중에서 특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對인도네시아의 품목군별 수출액과 기관발급액 추이는 [그림 18], [그림 19]와 같다. 對인도네시아 수출 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은 3년 평균 철강제품에 약 47.1%, 화학제품에 28.3%로 두 품목군에 75.5%가 집중되어있는 구조이다. 해당 품목군은 우리나라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對인도네시아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은 대기업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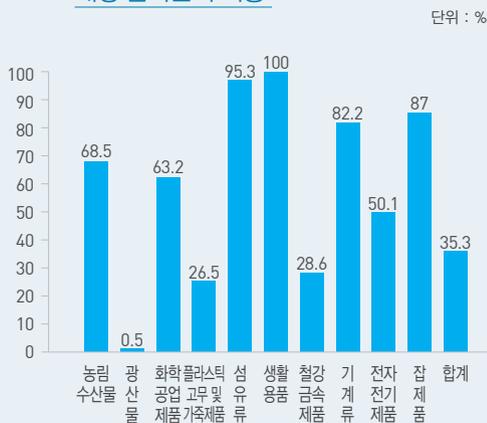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20]은 對인도네시아 상위 500대 수출 품목 가운데¹⁰⁾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금액비중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품목군 내에서 80%이상이 FTA 대상이 되는 부분은 생활용품, 잡제품, 섬유류, 기계류 등이다. 기계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출비중이 1% 내외로 주요 수출 품목군은 아니다.

기계류는 전체 품목군에서 15%를 점유하며, 해당 품목의 FTA 특혜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군이다. 세부 품목은 신차(자동차)로 2013년 FTA 수출 활용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전자전기제품은 전체 품목군에서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전체 수출액의 약 15%를 점유하고,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FTA 특혜대상 품목이다. 그러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은 7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수출액 가운데 2%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1~2013년간 전자전기제품을 대상으로 對인도네시아 수출 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업체수는 20개에 불과하다.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제품의 다양성에 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합되어 있는 품목군으로 對인도네시아 수출 시 FTA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대기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對인도네시아 수출 시 전자전기제품의 FTA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20 對인도네시아 수출액 500대 품목 중 FTA 대상 품목군의 비중



주 : 해당 수치는 양국 관세율의 HS 비교분석을 통한 추정치이다. 이하 500대 품목에 대한 FTA 대상 품목의 비중에 대한 표 작성은 동일한 과정으로 추정되었다.

10) 해당 수치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 수출대상을 기준으로 판별한 것은 아니며, 2012년 기준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500대 품목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500대 품목은 전체 수출액의 96.5% 수준에 달하므로 FTA 대상/비대상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FTA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는 관세청 위탁연구보고서, 국제원산지정보(2013)의 『협정별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 연계 등 DB 산출』의 결과치를 참조한 것이다. 이하의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동일하다.

태국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6%의 성장률로 신장하고 있다. FTA 발효 전 3년인 2004~2006년 평균 36.3억 달러에서 2013년 80.7억 달러로 약 2.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3년 동향은 2011년 80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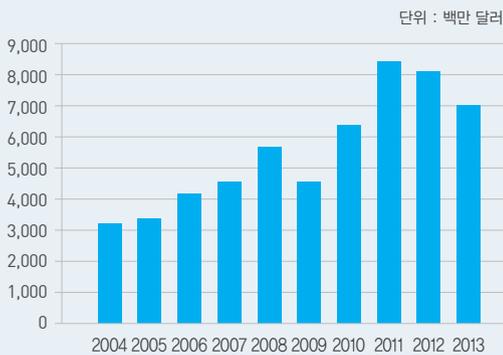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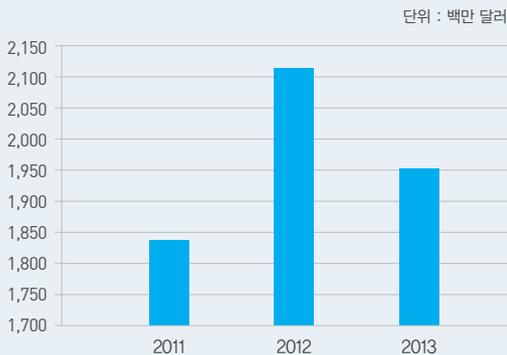


그림 22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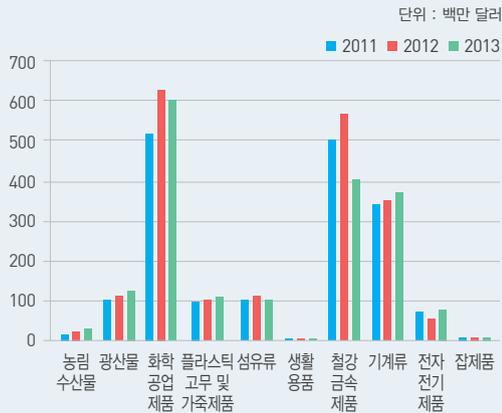
2011~2013년간 태국의 FTA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을 보면, 인도네시아와는 반대로 2012년의 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對태국 수출 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액은 약 18.4억 달러였으나 2012년 21.2억 달러로 크게 증가, 2013년에는 19.5억 달러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철강금속제품의 기관발급실적이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FTA 특혜 협정관세 혜택을 받지 않는 비대상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분이 감소하였던 것과는 달리 태국은 FTA 특정관세 수혜가 가능한, 즉 FTA대상이 되는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분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태국도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산업발전과 건설경기, 자동차 부문 확대 등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분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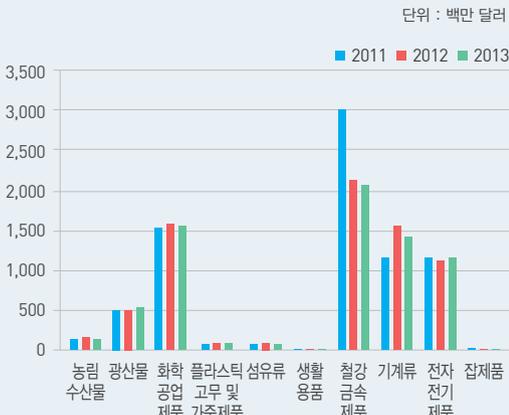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제 부진의 여파로 세계 철강 수요 부진에 의한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국 내 수요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FTA 특혜 여부와 상관없이 태국 내 철강금속제품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림 23 對태국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품목군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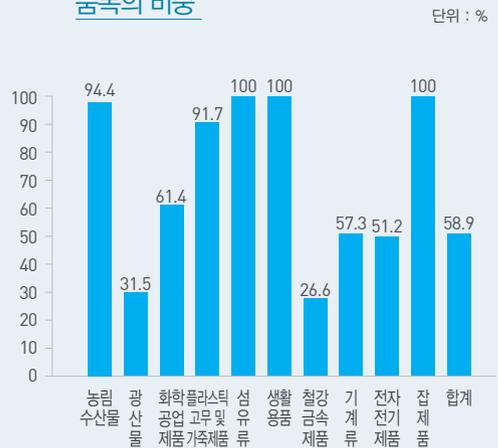
류 18.5%로 세 품목군에 73.9%가 집중되어있는 구조이다. 특히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전체 수출의 비중은 20.8%로 1위 철강금속제품(30.1%)에 이어 2위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액은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은 전체 수출가운데 15.6%로 3위 품목군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액은 3.4%로 매우 저조하다. 이와 같은 전자전기제품의 FTA 활용 수출 저조는 ASEAN 주요국에서 대체로 파악되는 현상이다. 전자전기제품은 그 특성상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의 규모와 다양한 물종이 산재하다. 그러나 FTA 원산지증서 기관발급 시 HS6 단위 세번까지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가용한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출물품의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4 對태국 수출의 품목군별 실적



지난 3년간 對태국의 품목군별 수출액과 기관발급액 추이는 [그림 24]와 [그림 26]과 같다. 對태국 수출 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은 3년 평균 화학공업제품에 약 30.2%, 철강금속제품에 25.2%, 기계

그림 25 對태국 수출액 500대 품목 중 FTA 대상 품목의 비중



한편 對태국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이 농림수산물,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등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은 고무적이다. [그림 25]는 對태국 상위 500대 수출 품목¹¹⁾ 가운데,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금액비중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품목군 내에서 80% 이상이 FTA 대상이 되는 것은 농림수산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잡제품 등이다. 대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5% 내외로 주요 품목군은 아니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대체로 주요 수출물품 가운데 FTA 혜택 가능성이 높은 품목군들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도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가 특징적이다. 태국은 타 ASEAN 회원국에 비해 FTA의 정착과 활용에 적극적인 국가군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2%의 성장률로 확대되고 있다. 對필리핀 수출은 FTA 발효 전 3년인 2004~2006년 평균 35.1억 달러에서 2013년 87.8억 달러로 약 2.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ASEAN 국가들과 동일한 수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8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 수출 감소 추세 없이 2013년 87.8억 달러의 실적을 시현하였다.

2011~2013년간 필리핀의 FTA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을 보면, 2011년 對필리핀 수출 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액은 약 10.7억 달러에서 2012년 13.2억 달러로 증가, 2013년에는 13.0억 달러 수준으로 다소 정체하였다.

그림 26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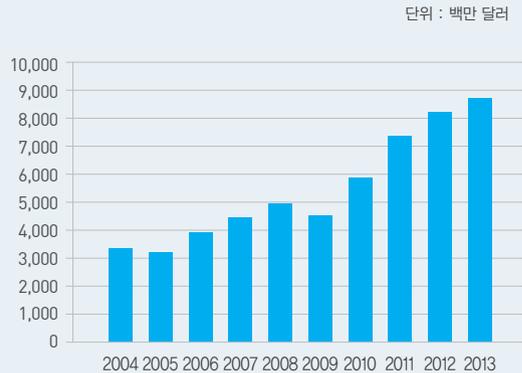


그림 27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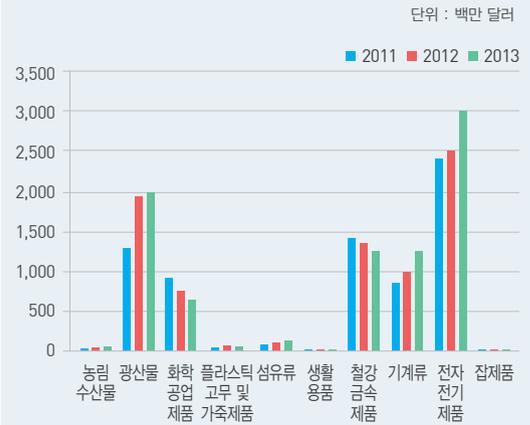


11) 2012년 기준 HSK 10단위 기준 對태국 500대 상위 수출품목은 전체 對태국 수출액 가운데 약 89.1%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8 對필리핀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품목군별 실적



그림 29 對필리핀 수출의 품목군별 실적



지난 3년간 對필리핀의 품목군별 수출액과 기관발급액 추이는 [그림 28], [그림 29]와 같다. 對필리핀 수출 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은 3년 평균 철강금속제품이 절반 이상인 51.7%, 화학공업제품

22.7%, 기계류 17.2%로 세 품목군에 91.5%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2012년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액의 증가분은 기계류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3 2012년 필리핀의 한-ASEAN 특혜 관세 변경

HS Code	품목명	관세율(%)	
		2011	2012~15
72085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 것)	7	0
720837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4.75mm 이상 10mm 이하인 것)	7	0
72091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0.5mm 미만인 것)	7	0
870323	기타의 차량(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0	20
870332	기타의 차량(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30	20
870322	기타의 차량(실린더 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30	20
870421	압출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0	20
870422	압출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30	20

자료 : 필리핀 관세위원회, KOTIS

기계류의 FTA 특혜 수출을 주도한 것은 자동차 부문이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한-ASEAN의 양허 구조는 타 FTA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크게는 일반품목과 민간품목, 두 트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민간품목 가운데 일반민감품목은 2011년도까지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FTA 실행 관세율을 20% 이내, 2016년부터 5% 이내로 적용한다. 그리고 초민감품목은 2016년부터 50% 혹은 20% 이내로 인하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일반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은 2012년부터 조정된 FTA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관련한 행정명령(EC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은 7~10%의 세율조정이 있었다. 이는 필리핀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0 對필리핀 자동차 수출액



그림 31 對필리핀 자동차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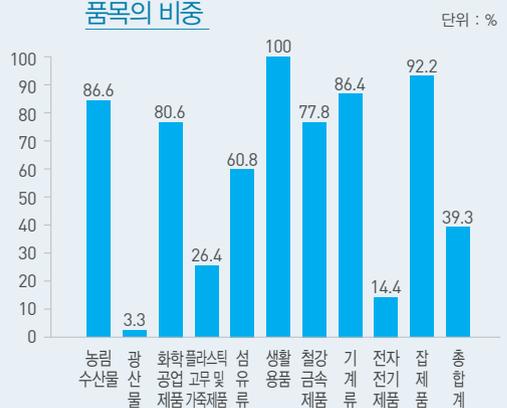
기관발급실적



마지막으로 [그림 32]는 2012년 기준 對필리핀 상위 500대¹²⁾ 수출 품목 가운데,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금액비중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품목군 내에서 FTA 대상이 80%이상인 부분은 생활용품, 잡제품, 농림수산물,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이다. 특히 필리핀의 기계류의 경우 86.4%로 ASEAN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 對필리핀 수출액 500대 품목 중 FTA 대상

품목의 비중



12) 2012년 기준 HSK 10단위 기준 對필리핀 500대 상위 수출품목은 전체 對필리핀 수출액 가운데 약 94.8%를 점유하고 있다.

對필리핀 주요 수출용 자동차는 HS 8703.32로 실린더 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의 준중형급이다. [그림 31]과 [그림 32]에서와 같이 2012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 증가도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對필리핀 수출 전체 품목군에서 제1위로 약 34.5%를 점유하고 있는 전자전기제품은 FTA 대상 수출품목은 약 14.4%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제2위 광산물 역시 FTA 대상 품목은 3.3%에 불과하다. 즉 해당 품목군은 필리핀 내에서 FTA 민감 품목, 즉 보호 산업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미 모든 국가에 0% 관세율 적용하는 다시 말해 개방이 기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필리핀으로의 FTA 수출은 주로 기계류와 철강금속제품 등이 FTA 특혜혜택 가능성 면에서 효과적이며, 정부의 FTA 지원 정책 시 해당 품목군에 대해 지원과 홍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말레이시아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5%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다.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FTA 발효 전 3년인 2004~2006년 평균 47.7억 달러에서 2013년 85.9억 달러로 약 1.8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주요 ASEAN 국가들보다는 다소 저조한 수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FTA체결 직후 60억 달러 내외 수준에 머물렀으나, 발효 6년차가 되는 2012년 이후부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2년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던 품목들의 관세하락이 시작되는 해로 對ASEAN 수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요 기점이다.

2011~2013년간 말레이시아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을 보면, 2011년 對말레이시아 수출 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액은 약 4.7억 달러에서 2012년 6.1억 달러로 증가, 2013년에는 7.8억 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33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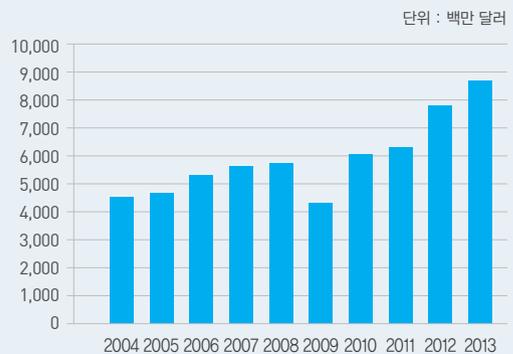


그림 34 對말레이시아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품목군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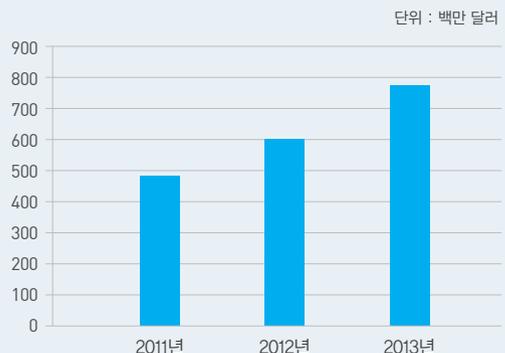


그림 35 **對필리핀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품목군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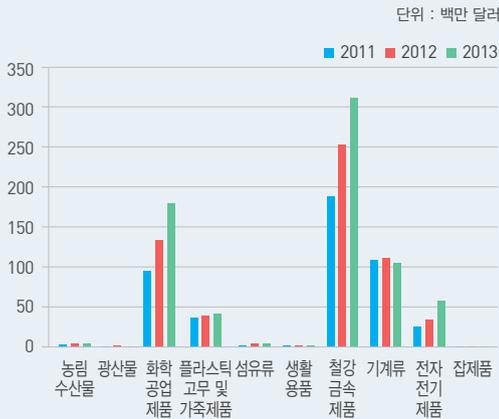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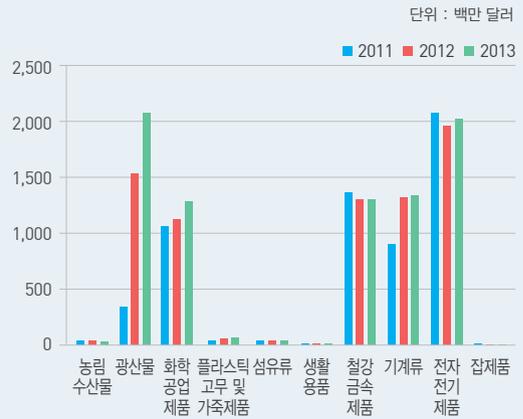


그림 36 **對말레이시아 수출의 품목군별 실적**



지난 3년간 對말레이시아 품목군별 수출액과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액 추이는 [그림 35]와 [그림 36]과 같다. 對말레이시아 수출 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은 최근 3년 평균 철강금속제품 약 41.1%, 화학공업제품에 21.6%, 기계류 19.0%로 세 품목군에 81.7%가 집중되어있는 구조이다. 최근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2013년에 전년에 비해 소규모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對말레이시아 수출구조는 최근 3년 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전자전기제품 27.2%, 광산물 17.9%, 철강금속제품 17.7%, 화학공업제품 16.3%, 기계류

15.8% 순으로 이들에 94.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군 가운데 우리나라가 對말레이시아 수출 시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야로는 철강금속제품 부문이다. 최근 수출의 감소에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른 ASEAN 국가들과 유사하게 말레이시아도 전자전기제품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FTA에 의한 특혜관세 수혜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개방도도 13.8%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7 對말레이시아 수출액 500대 품목 중
FTA 대상 품목의 비중



[그림 37]은 2012년 기준 對말레이시아 상위 500대¹³⁾ 수출 품목 가운데,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금액비중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품목군 내에서 FTA 대상이 80% 이상인 부분은 없으며, 가장 높은 FTA 개방도를 보이는 품목군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으로 59.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군은 최근 3년 평균 對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하여 전체 품목군의 개방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2위인 농림수산물 역시 FTA 개방도는 47.2%에 달하나 수출비중은 1.1%이다. 전체적으로 對말레이시아의 FTA 개방도는 13.8%에 불과하여 상위 수출품목의 FTA 활용 가능성이 낮은 편으로 판단되며, 민감품목의 개방이 실현되는 2016년까지는 FTA의 직접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FTA 관련 인프라를 사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對말레이시아의 FTA 개방도는 13.8%에 불과하여 상위 수출품목의 FTA 활용 가능성이 낮은 편으로 판단되며, 민감품목의 개방이 실현되는 2016년까지는 FTA의 직접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보다는 FTA 관련 인프라를 사전적으로 구축해 하는 등 점진적 대책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對ASEAN 국가들의 지원시에 품목, 산업별 FTA 개방도 등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의 차별적 전략이 그것이다. 앞서 필리핀 자동차 관세조정 사례와 같이 ASEAN 회원 각국이 연차적으로 발표하는 신규세율조정 품목 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수출 기업에게 적극 제공하고 전략 지원하는 등 품목·국가를 구분하여 차별 지원 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3.1%의 고성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對베트남 수출은 FTA 발효 전 3년인 2004~2006년 평균 35.4억 달러에서 2013년 210억 달러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여, 베트남은 對ASEAN 수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對베트남 수출은 다른 국가보다 빠른 2010년 9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1~2013년간 베트남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실적을 보면, 2011년 약 5.4억 달러에서 2012년 7.4억 달러로 증가, 2013년에는 10.1억 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13) 2012년 기준 HSK 10단위 기준 對말레이시아 500대 상위 수출품목은 전체 對말레이시아 수출액 가운데 약 93.1%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38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실적



그림 39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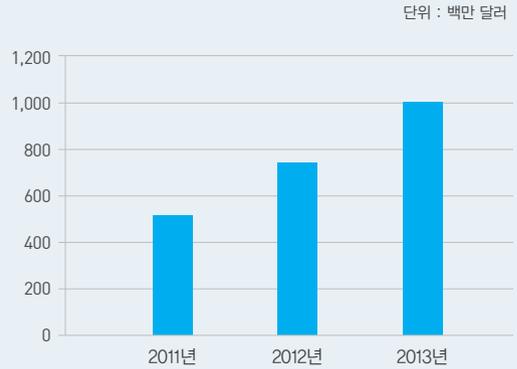


그림 40 對베트남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품목군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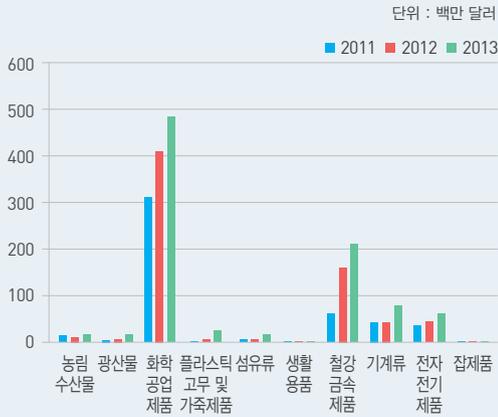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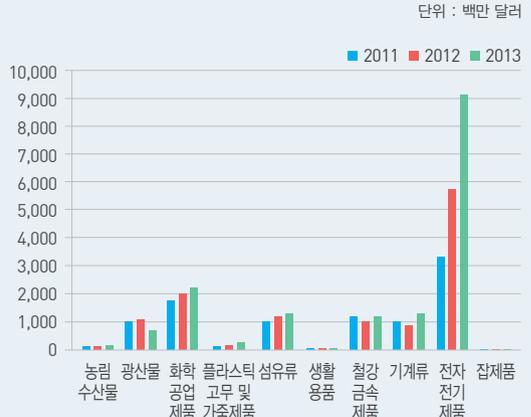


그림 41 對베트남 수출의 품목군별 실적



지난 3년간 對베트남 품목군별 수출액과 FTA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액 추이는 [그림 40]과 [그림 41]과 같다. 對베트남 수출 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은 3년 평균 화학공업제품 54.0%, 화학공업제품에

19.6%, 기계류 7.6%, 전자전기제품 7.1%로 네 품목군에 88.3%가 집중되어있는 구조이다.

對베트남 수출 시 FTA 활용의 특징은 최근 이들 네 품목군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화학공업제품에 집중된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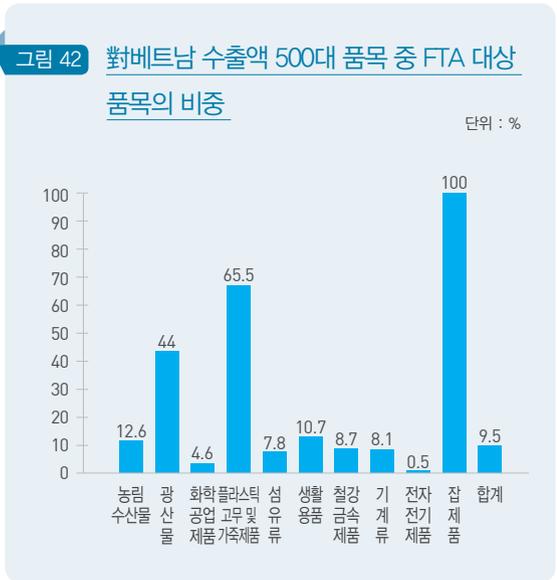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베트남 품목군별 수출구조는 최근 3년 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전자전기제품 36.4%, 철강금속제품 13.3%, 섬유류 13.0%, 화학공업제품 12.6%, 기계류 12.5% 순으로 이들에 87.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은 2013년 수출이 전년대비 58.6% 급증하였으며, 2011년에 비해 2.7배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핸드폰 부분품과 전자집적회로 등이다. 해당 품목은 베트남측 기본 세율이 이미 0%로 FTA에 의한 특혜관세혜택 비대상이다.

한편 품목군 가운데 베트남 수출 시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야로는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 등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42]는 2012년 기준 베트남 상위 500대¹⁴⁾ 수출 품목 가운데,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금액비중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품목군 내에서 FTA 대상이 80% 이상인 부분은 잡제품이 유일하며 다음으로 높은 FTA 개방도를 보이는 품목군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으로 65.5%, 광산물 4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군은 최근 3년 평균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1%, 2.8%, 6.2%에 불과하여 전체 품목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베트남의 FTA 개방도는 9.5%에 불과하여 ASEAN 주요 5개국에서 가장 FTA에 의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 확대는 이미 기준관세율이 0%인 전자전기제품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상위 수출품목의 FTA 활용이 사실상 불필요한 경우도 대다수로 파악되고 있다.



14) 2012년 기준 HSK 10단위 기준 베트남 상위 500대 상위 수출품목은 전체 베트남 수출액 가운데 약 90.6%를 점유하고 있다.

04 한-ASEAN FTA 발효 7년과 시사점

ASEAN과 FTA를 통한 동아시아경제권 통합 실현 가능성 증진 대비

최근 아시아 경제권은 세계 경제 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신흥 성장 동력으로 분류된다. 최근 對 EU 등 선진 경제권의 시장위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ASEAN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무역동향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EU FTA 등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블록화가 대두되면서 동아시아권에서도 경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SEAN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가 그것이다. 2013년 5월 제1차 공식협상이 개최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014년 8월 제2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 분야에서 1차 양허안 교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진전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기존에 ASEAN, EU 등 경제공동체와 이행한 FTA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향후 다자간 FTA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추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 통합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경제권 통합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아시아 경제권과의 FTA의 이행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지속·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 등 한-ASEAN FTA의 이행 분석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로 의의가 있다.

對ASEAN 무역의 확대, 흑자 기조의 유지

우리나라와 對ASEAN 교역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6%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수출은 연평균 14.6%, 수입은 연평균 10.1%로 수출이 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2013년 對ASEAN 무역수지는 한-ASEAN FTA 발효 3년 평균 대비 약 16배 확대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한-ASEAN FTA는 개발도상국이 그 대상으로 실질적인 개방의 속도와 범위, 내용은 매우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한-ASEAN FTA는 발효 이후 4~5년간의 잠복·정착기를 지난 2011~2012년에 이르러 교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ASEAN 주요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對ASEAN 주요 수출품인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에 대해 FTA 협정에서 다소 보수적인 양허스케줄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필리핀 등 회원국에서 자동차 일부 민감 품목에 조정된 FTA 실행세율을 적용하면서 해당 물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對ASEAN의 품목별 교역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FTA 체결 이후 광산물, 기계류 등의 수출비중 증가가 확인된다. 기존에 전자전기제품에만 주로 집중되

어 있던 수출구조가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등으로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입부문의 FTA 체결 전 광산물과 전기전자제품에만 73.5%로 집중되어 있던 수입구조가 FTA 이후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FTA 이전 약 2.2%의 점유율에 불과하던 섬유류는 2013년 7.7%로 그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양국 무역 간에 ASEAN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FTA 수출 활용과 원인 조사

한-ASEAN FTA는 타 FTA에 비해 FTA를 활용한 수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한-미 FTA의 수출 활용률은 76.1%, 한-EU FTA는 80.8%에 달하나, 한-ASEAN FTA는 38.7%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FTA 특혜수출

저조에는 우리나라가 ASEAN으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 가운데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 수출의 비중이 낮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ASEAN 회원 각국에 수출되는 2012년 기준 상위 500대 물품을 대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개수 및 금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 [그림 43]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는 약 64.2%가 FTA 특혜 대상이지만, 실제 FTA 대상이 되는 수출금액은 약 12.6%에 불과하다. 필리핀도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형태로 품목수 기준으로는 무려 71.9%가 FTA 특혜 대상이지만, 실제 FTA 대상이 되는 수출금액은 약 39.3%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對ASEAN 주요 수출 대상 품목은 이미 모든 국가에 대해 0%를 적용하거나 기준년도의 양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3 주요 ASEAN 5개국의 FTA 개방도 : 품목수 및 금액 기준



반대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품목수 및 금액 기준 모두 낮은 개방도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상위 500대 수출품목 가운데 15%만이 FTA 특혜 대상이며, 금액수 기준은 9.5%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역시 품목수 기준으로는 약 27.2%가 FTA 특혜 대상이지만, 실제 FTA 대상이 되는 수출금액은 약 13.8%에 불과하다.

한편 태국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는 약 54.4%가 FTA 특혜 대상이지만, 실제 FTA 대상이 되는 수출금액은 약 49.8%로 ASEAN 회원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품목수와 금액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ASEAN 회원국의 낮은 FTA 개방도는 일차적인 FTA 활용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된다. 실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사항은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ASEAN을 수출대상국으로 하나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체 500개를 추출하여 한-ASEAN FTA의 미활용 사유를 조사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321개 업체로 약 64.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¹⁵⁾ 설문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 표4 한-ASEAN FTA 미활용 사유 설문 조사 결과

단위 : 개사, %

응답내용	응답업체	구성비
미양허품목	78	24.3
인력·재원 부족	52	16.2
FTA혜택 미미	30	9.4
FTA활용지식 부족	35	10.9
기타	116	36.1
미응답	10	3.1
합계	321	100

■ 표5 미활용 사유에 대한 기타 의견

단위 : 개사, %

구분	HS코드 불일치	PSR 불충족	바이어 미요청	소량 수출	원산지 관리복잡	기타	합계
응답업체	1	5	56	8	13	33	116
구성비	0.9	4.3	48.3	6.9	11.2	28.4	100.0

[표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FTA 미활용 사유는 전체의 24.3%인 78개사가 응답한 '미양허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16.2%인 52개사가 응답하였다. 특히 설문 대상 기업 중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137개로 약 42.7%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미양허 품목 혹은 FTA 혜택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0개 업체 약 36.5%로 평균 응답(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15) 설문 주체는 국제원산지정보원, 설문 방법은 전화설문 방식이다. 설문 기간은 2014년 8월 26~29일이다.

종합적으로 한-ASEAN FTA의 수출활용 저조 원인은 '인력 및 자원 및 활용지식' 부문으로 꼽은 기업이 약 27.1%이며, '미양허 등 FTA 혜택 미미'에 응답한 기업이 36.5%로 후자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응답의 36.1%에 달하는 기타 의견, 즉 기업이 ASEAN으로 수출 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카테고리화 하여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바이어의 미요청'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기업이 기타 의견 중 48.3%라는 조사 결과는 상대국의 FTA 활용 의지 등도 수출국의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직접적인 FTA 활용 지원 외에 양국 간 산업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의 정부가 FTA 무역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관발급자료 분석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마지막으로 회원국별로 다양한 양허스케줄을 보유한 한-ASEAN FTA의 특성상 기업의 한-ASEAN FTA 활용 여부 및 미활용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기관발급 자료에 대한 정비 및 분석이 지속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2013년 수출금액 기준 ASEAN회원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싱가포르(27.2%), 베트남(25.7%), 인도네시아(14.1%), 필리핀

(10.7%), 말레이시아(10.5%), 태국(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액은 인도네시아(42.0%), 태국(21.8%), 필리핀(14.5%), 베트남(11.3%), 말레이시아(8.7%) 순으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에는 이미 상대국의 관세율이 0%인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어 모두가 FTA 직접적 특혜관세 수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對ASEAN 수출 시 각국에 대한 기관발급실적은 ASEAN 회원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세 행정 시스템과 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로 가장 원활하게 FTA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신호가 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회원국별, 품목군별, FTA 개방도 별로 분류하는 등 한-ASEAN FTA 관련 1차 교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ASEAN FTA의 저조원인을 보다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의 분석을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은 한-ASEAN FTA의 대한상의 및 전국 세관에 산재한 기관발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일 것이다. 향후 RCEP, TPP 등 광역 FTA 대응 차원에서도 FTA 특혜 수출입 여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등 FTA 관련 정책 통계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수입동향 분석

커피, 아이스크림, 주류 등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임병호 주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01 분석배경 및 목적

분석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국내 외식업체 및 커피전문점 수의 증가, 대형마트를 이용한 저렴한 구매패턴,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비제품의 다양화 등으로 우리나라 가공식품업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경제력을 가진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소비패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이 ‘한 가게 건너 한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베이커리류와 과실주스, 케이크와 비스킷, 차, 그리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등 일반적인 식사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의 가공식품업계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물품의 수입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욕구에 발맞추기 위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도도 존재한다. 또한 새로운 물품이 기존의 유사한 물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신규시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국내 가공식품업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국가별·협정별 수입금액 및 수입비중과 FTA 활용현황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분석대상

분석대상물품은 2014년 상반기 FTA 특혜수입물품 중 제16류부터 제24류까지의 물품 중 수입금액 상위 20개 품목을 HS 4단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동 물품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제23류 박), 직접 섭취가 불가능한 물품(제24류 담배)은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카테고리화 하여 다음과 같이 선별하였다. 이들 세분화된 물품은 각 HS 4단위 중 100만 달러 이상 수입된 물품들이다.

	카테고리	HS	세부 품명
1	초콜릿과 사탕	1703	당밀(糖蜜) [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4.90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2	커피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 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 비율은 상관없다)
		2101.11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2	
3	아이스크림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 지에 상관없다)
4	주류	2203	맥주
		2204	포도주
5	과실주스 및 음료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6	베이커리	1905.31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 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t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32	
		1905.90	
7	조제과실	2008.11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 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19	
		2008.70	

02

주요 FTA 상대국별 기호식품 수입비중 변화

초콜릿류

당밀(Molasses)(제1703호)

당밀은 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얻어진 끈적한 시럽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사탕수수 및 사탕무당에서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빵을 굽는데 사용되는데 특히 쿠키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며, 요리시 단맛을 내기 위해 또는 알코올과 알코올성 음료의 원료 및 가축용 사료와 커피대용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 베이커리 제품의 소비증가와 웰빙트렌드로 인한 가정용 제빵 및 제과 선호도로 인하여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당밀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TA 활용률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다. 2013년 총수입은 1억 1천만 불이며, FTA 활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77%이나, 2014년 상반기 다시 99%로 상승하였다.

그림 1 당밀(제1703호) 수입동향



우리나라의 당밀은 금액적인 측면에서나, FTA의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나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에 편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당밀은 아세안으로부터 들어오며, 이들 아세안 당밀은 사실상 모두 FTA를 활용하여 수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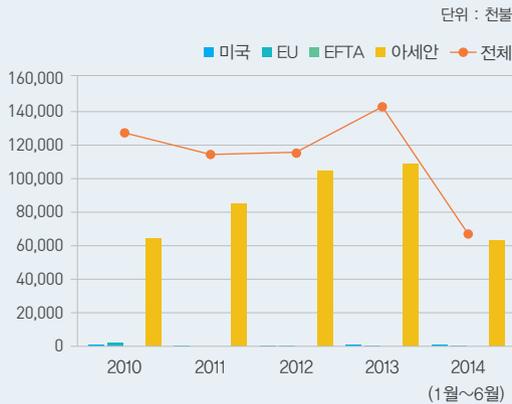
단위 : 천불, %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115,093	104,765	91.0	142,912	110,958	77.6	66,085	65,746	99.5
	비중									
미국	금액	161	113	70.2	1,068	189	17.7	1,058	1,011	95.6
	비중	0.14	0.11		0.75	0.17		1.60	1.54	
EU	금액	1	0	0.0	510	3	0.6	7	0	0.0
	비중	0.00	-		0.36	0.00		0.01	-	
EFTA	금액	-	-	-	-	-	-	-	-	-
	비중	-	-		-	-		-	-	
아세안	금액	105,830	104,651	98.9	109,314	109,891	100.5	64,751	64,735	100.0
	비중	91.95	99.89		76.49	99.04		97.98	98.46	

• 총 수입

우리나라 당밀 수입은 대부분 아세안에 편중되어 있다. 2012년기준 총 당밀 수입금액은 1억 1천만 불 중에서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이 1억 불을 상회하여 비중이 91%를 넘는다. 미국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액이 미미하여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EU는 FTA 발효 전인 2010년 2백만 불 수입하였으나 발효 이후에는 이마저도 감소하여 수입되지 않고 있다. EFTA는 수입이 전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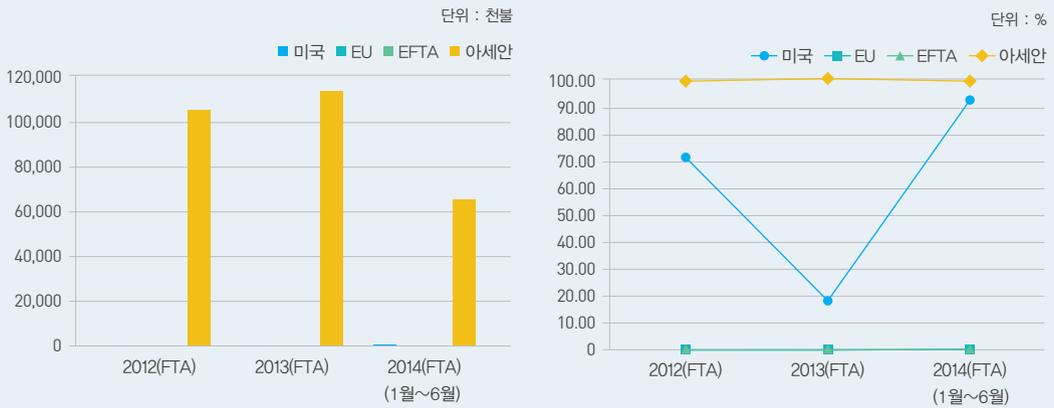
그림 2 당밀(제1703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우리나라의 당밀수입 시 협정별 FTA 활용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밀 대부분의 수입이 아세안에서 수입되므로 아세안의 FTA 활용수입이 전체 FTA 수입과 비슷하다. 특히 아세안 당밀은 FTA 활용도가 100%에 이를 만큼 활용도가 높다. 미국의 당밀 역시 2014년 상반기 FTA 활용률이 95%에 이르렀으나 수입금액이 워낙 작아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림 3 당밀(제1703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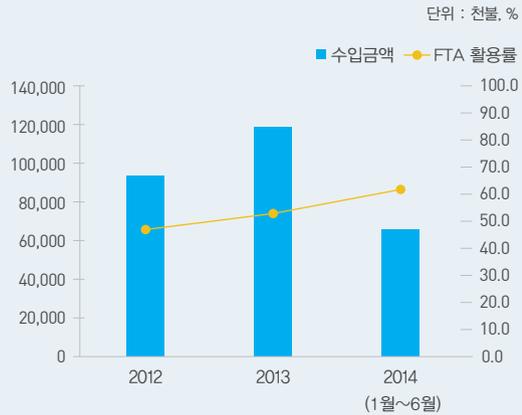


설탕과자(1704.90호)

제1704.90호에는 설탕제품으로서 캐러멜, 캔디, 누가와 설탕으로 제조된 백색초콜렛 및 기타 설탕을 주 원재료로 한 식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설탕과자 중에서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슈퍼츄러스, 플로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캔디류 및 드롭스, 롤리팝 등이 있다.

설탕과자의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FTA 활용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설탕과자 수입금액은 총 1억 1천9백만원이며 FTA 활용률은 절반을 상회하는 53.4%로 나타났다.

그림 4 설탕과자(제1704.90호) 수입동향



설탕과자의 수입은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높으며, EU와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3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FTA 활용률 역시 모두 70% 이상으로서 FTA 활용도가 높은 물품이라 할 수 있다.

단위: 천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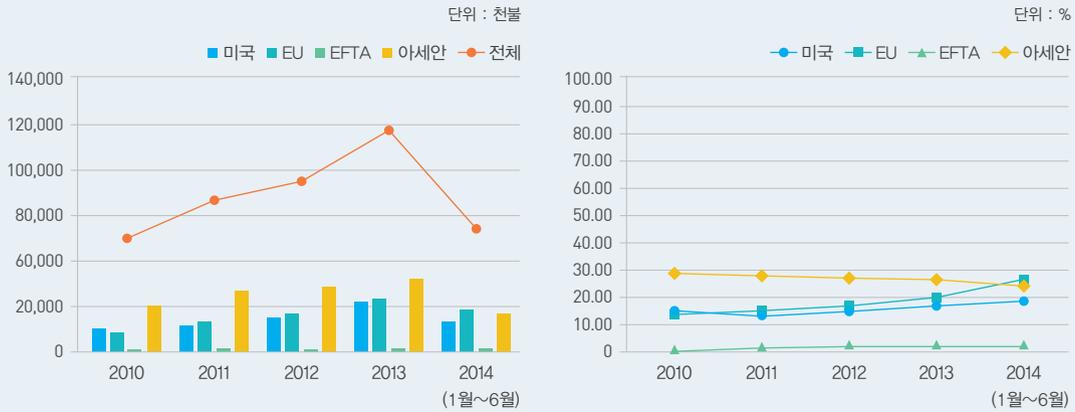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94,682	45,477	48.0	119,006	63,561	53.4	70,931	44,085	62.2
	비중									
미국	금액	15,102	7,290	48.3	21,016	7,290	68.0	13,182	10,853	82.3
	비중	15.95	16.03		17.66	11.47		18.58	24.62	
EU	금액	16,461	12,167	73.9	23,815	18,137	76.2	18,472	14,701	79.6
	비중	17.39	26.75		20.01	28.53		26.04	33.35	
EFTA	금액	1,740	1,620	93.1	1,965	1,854	94.4	875	839	95.9
	비중	1.84	3.56		1.65	2.92		1.23	1.90	
아세안	금액	26,328	24,398	92.7	30,876	28,314	91.7	16,941	15,741	92.9
	비중	27.81	53.65		25.94	44.55		23.88	35.71	

• 총 수입

설탕과자의 수입동향 비중을 살펴보면 기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금액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아세안 수입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과 EU의 증가율이 더욱 높기 때문에 아세안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EU의 수입금액이 아세안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설탕과자(제1704.90호) 협정별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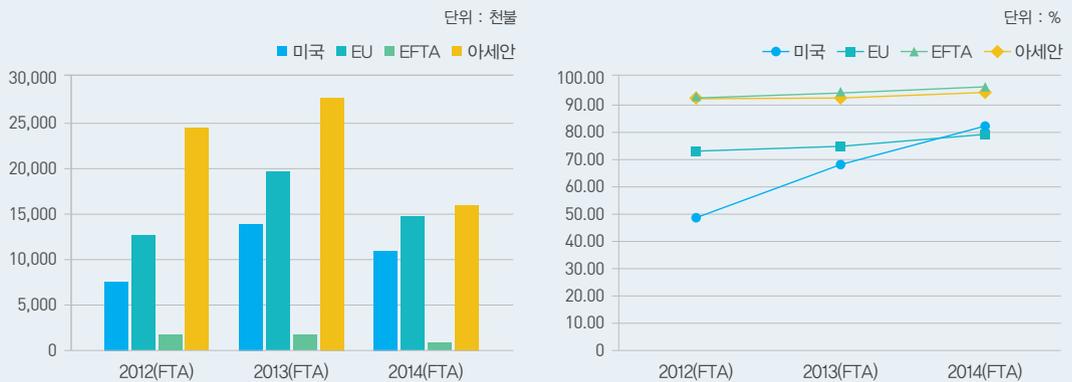


• FTA 수입

설탕과자의 FTA 활용수입은 아세안의 의존도가 가장 높으나,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총 FTA 활용수입 6천3백만 달러 중 아세안이 가장 많은 2천8백만 달러, EU가 1천8백만 달러, 미국이 1천4백만 달러 순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이미 2012년 총 수입금액을 초과한 상태이다.

이러한 FTA 수입은 FTA 활용률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미국을 제외한 3개 국가 모두 70%를 상회하는 FTA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국 역시 2014년 상반기까지 FTA 활용률은 80%를 초과하였다.

그림 6 설탕과자 (제1704.90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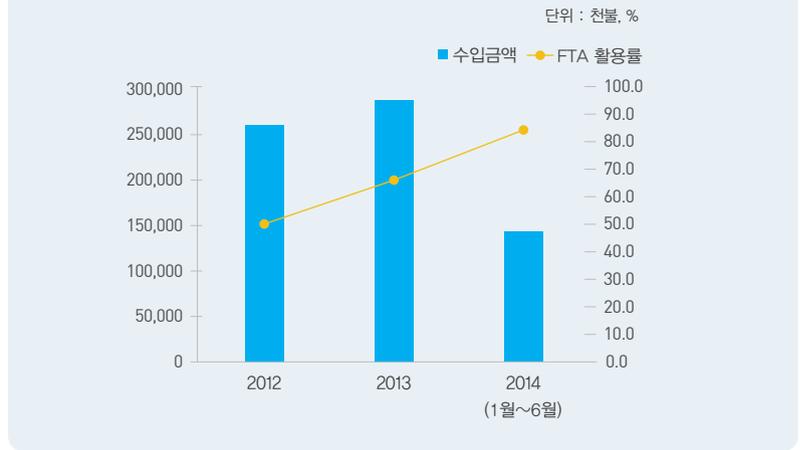


초콜릿(제1806호)

제1806호에는 코코아가 함유된 초콜릿이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어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초콜릿인 제1704.90호의 물품과 구별된다.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유럽의 로쉐 (Rocher) 초콜릿, 킨더(Kinder) 초콜릿, 트웝스(Twix) 초콜릿 등이 있다.

초콜릿의 수입동향 역시 설탕과자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FTA 활용률의 경우 증가폭이 더욱 가파르다. 2012년 50.4%였던 FTA 활용률이 2014년 상반기에는 81.2%로 활용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7 초콜릿(제1806호) 수입동향



백색의 설탕과자 또는 백색 초콜렛이 아세안으로부터 주로 수입되었다면, 코코아를 함유하는 초콜렛은 미국과 EU로부터 주로 수입된다. 특히,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은 FTA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단위: 천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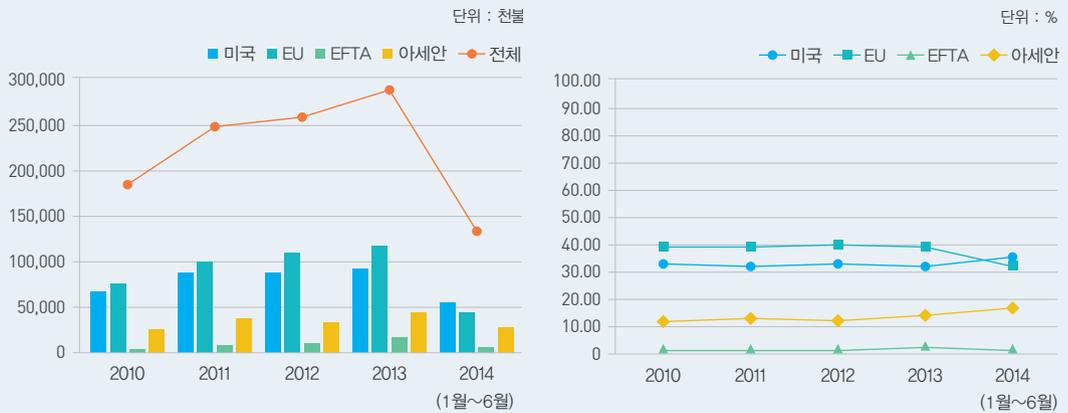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260,935	131,443	50.4	283,800	186,098	65.6	141,073	114,602	81.2
	비중	33.93	42.17		31.82	41.06		36.77	40.94	
미국	금액	88,531	55,425	62.6	90,297	76,411	84.6	51,879	46,919	90.4
	비중	33.93	42.17		31.82	41.06		36.77	40.94	
EU	금액	104,529	61,970	59.3	112,889	92,203	81.7	46,558	40,611	87.2
	비중	40.06	47.15		39.78	49.55		33.00	35.44	
EFTA	금액	6,417	4,202	65.5	8,839	6,402	72.4	3,412	2,256	66.1
	비중	2.46	3.20		3.11	3.44		2.42	1.97	
아세안	금액	31,350	9,728	31.0	40,290	10,442	25.9	24,442	5,098	20.9
	비중	12.01	7.40		14.20	5.61		17.33	4.45	

• 총 수입

백색 초콜릿, 사탕 등의 수입이 아세안에 편중되었던것과는 달리 코코아를 함유한 초콜릿의 수입은 EU가 가장 높다. 2013년 총 수입금액 2억 8천3백만 달러 중에서 EU 수입금액은 1억1천2백만 달러로 약 40% 수준이며 수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콜릿 수입금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EU와 미국의 수입비중이 30~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세안이 1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특정 협정의 FTA로 인한 수입이라기보다 국내 수요의 전반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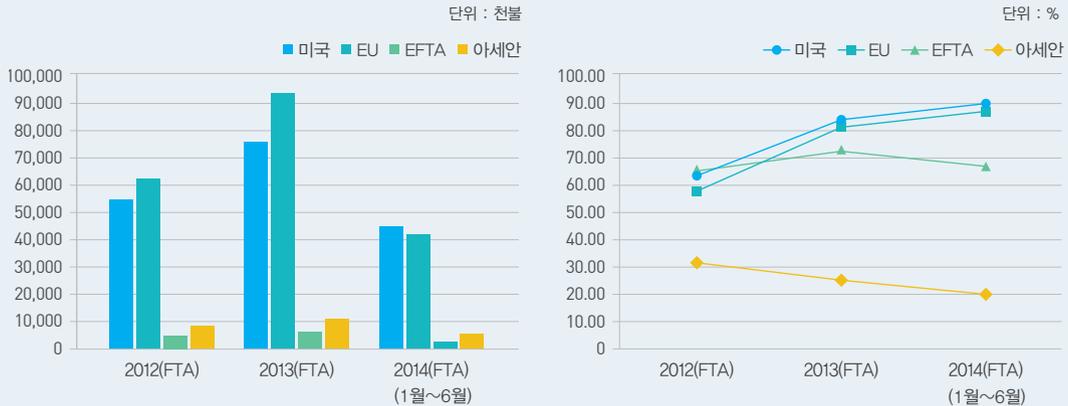
그림 8 초콜릿(제1806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초콜릿의 높은 수입증가율 및 FTA 활용률은 미국과 EU가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FTA 활용률이 높다. 미국의 경우 FTA 발효시기인 2012년의 경우 62.6%에 불과하던 활용률이 2014년 상반기까지 90.4%로 증가하였으며 EU 역시 같은 시기 59.3%에서 87.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9 초콜릿(제1806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소 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일 당류 섭취량은 2010년 66.6g에서 2012년 65.3g으로 줄어든 반면,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은 2010년 38.8g에서 2012년 40.0g로 증가하였다. 가공식품종류별로는 ‘음료류’(34.3%)를 통한 섭취가 가장 많았고, ‘빵·과자·떡류’(15.0%), ‘설탕 및 기타 당류’(14.5%), ‘가공우유 및 발효유’(8.0%),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6.0%)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치는 수입되는 물품의 브랜드 및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최근 증가하는 외식업체 수와 베이커리 제품의 소비 증가, 초콜릿, 설탕 등 다양한 설탕관련 제품 소비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더구나, FTA의 체결로 인하여 낮아진 관세장벽도 외국산 초콜릿 및 사탕 수입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커피류

국내 언론매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해 242억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으며, 국내 커피산업 규모는 4조원을 초과하고, 연간 12만톤의 커피원두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커피는 크게 원두커피와 조제커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커피의 수입은 2013년 기준 5억 달러 수준으로서 전년대비 1억 달러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은 2012년 39.6%에서 2013년 41.9%로 소폭 상승하여 FTA의 활용증가가 커피 수입감소폭을 일부 상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커피(제0901호/제2101호) 수입동향



우리나라의 최대 커피 수입국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이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커피 수입금액은 2013년 7천만 달러로써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2년 최대 수입국이었던 브라질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아세안으로부터 수입되는 커피는 대부분 베트남산 커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불, %

순위	국가명	2012	2013	증가율
1	베트남	73,828	70,805	-4.1
2	브라질	91,705	63,208	-31.1
3	콜롬비아	61,108	48,340	-20.9
4	미국	39,135	40,609	3.8
5	페루	39,090	37,065	-5.2
6	온두라스	42,492	22,632	-46.7
7	스위스	17,562	20,754	18.2
8	이디오피아	22,322	18,855	-15.5
9	이탈리아	14,036	16,881	20.3
	총계	477,206	415,479	

원두(제0901호)

제0901호의 커피는 모든 형태의 생커피와 볶은 커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두커피는 국내 수입 후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경우보다, 국내 다수 분포해 있는 커피전문점에 공급되어 커피엑스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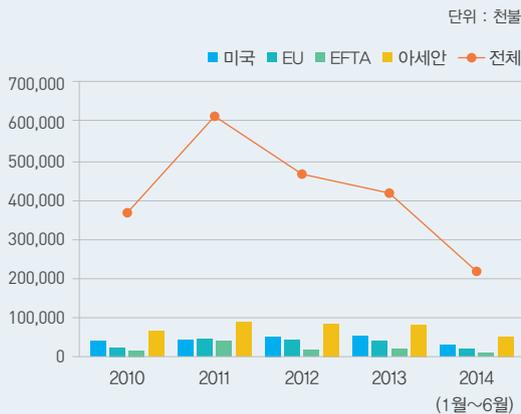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원두커피의 총 수입은 2011년 6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 현재까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상반기의 경우 총 수입금액 2억3천만 달러로써 전년과 유사한 수입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FTA 체결상대국의 경우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EU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커피(제0901호) 국가별 수입동향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커피 최대수입국은 브라질이었으나, 2013년부터 베트남이 최대 커피수입국으로 바뀌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커피 총 수입금액은 감소해 왔으나, 이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수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며 베트남은 감소폭이 완만하다. 미국 커피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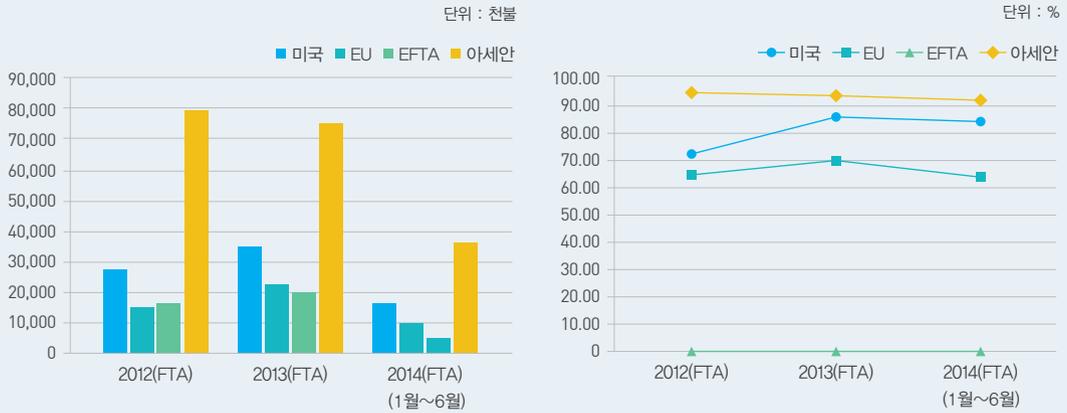
그림 12 커피(제0901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원두의 FTA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입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아세안의 경우 FTA 특혜수입과 전체 특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총 수입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증가는 아니지만 FTA 활용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커피(제0901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조제커피(제2101.11호/12호)

커피를 농축하여 만든 농축물과 커피를 기제로 하여 만든 조제품 등은 제2101호에 분류한다. 특히 동 호에는 액체 또는 분형으로써 고도의 농축물이며 인스턴트 커피가 포함된다.

조제커피의 수입은 원두커피와는 대조적으로 점진적인 감소세에 있다. 조제커피의 총 수입금액과 FTA 활용금액 모두 감소세에 있으며, 미국과 EU의 경우 FTA 활용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아세안의 경우 FTA 활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총 수입

조제커피의 수입 역시 원두와 마찬가지로 2012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도 감소폭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2년 1억2천만 달러였던 수입금액이 2013년 8천6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4 조제커피(제2101.11/12호) 협정별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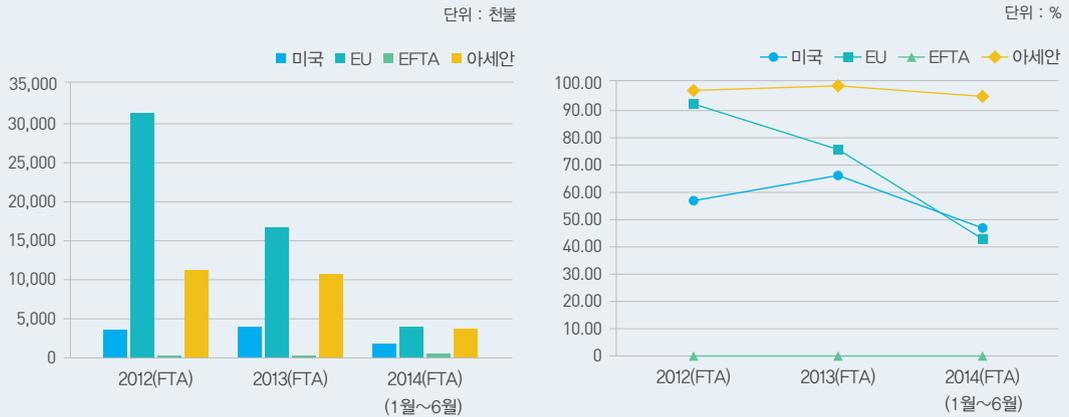


• FTA 수입

조제커피의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역시 총 수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FTA 수입금액을 나타낸 EU의 경우 2012년 3억1천만 달러로 전체 FTA 수입금액인 4억9천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는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1억6천만 달러 수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 약 4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EU의 수입감소는 FTA 활용 비중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EU의 FTA 활용률은 2012년 91%에서 2014년 42%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EU의 원두커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FTA 발효 이후 EU로부터의 커피수입은 조제커피를 직접 수입하는 대신 원두커피를 수입하여 직접 국내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림 15 조제커피(제2101.11/12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소 결

커피수입의 증가는 국내 커피전문점 수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커피전문점 수는 2006년 1,200여개에서 2012년에는 1만5,000개로 6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 커피전문점의 포화로 인하여 증가세가 현저히 낮아졌다. 2012년부터 유명 커피전문점의 신규매장 출점이 2011년에 비하여 절반 또는 3분의 1수준으로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원두커피의 경우 2011년에 총 6억 1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2010년의 3억 7천만 달러에 비하여 65% 증가하였다. 조제커피 역시 2012년 1억2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2010년의 4천4백만 달러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두커피는 2012년부터 조제커피는 2013년부터 급격한 수입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16) 중앙일보. 커피전문점 창업 아직도 '따끈따끈'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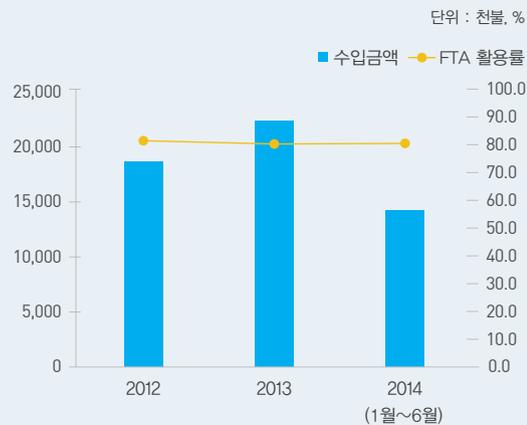
17) 매일경제. 신규출점 주춤... 커피전문점 포화?

아이스크림(제2105호)

국내 커피전문점의 증가는 프리미엄급 아이스크림 가게의 점포증가와 움직임
을 같이하고 있다. 해외 유명 아이스크림 스토어는 개당 1만 원을 초과하
는 고급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입금액도 동반 상승
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도 외국산 아이스크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마트의 중저가 아이스크림은 품질은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총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1천2백만 달러였던 것이 2013년에는 2천2백만 달러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FTA 활용률의 경우 2012년 이후로
20% 수준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림 16 아이스크림(제2105호) 수입동향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의 수입 증가는 한-EU FTA의 FTA 활용증가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U 아이스크림 수입의 경우 2010년에 비하여 2013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입은 90% 이상 FTA를 활용한 결과이다.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도 금액이 높지는 않으나 FTA 활용도는 EU 보다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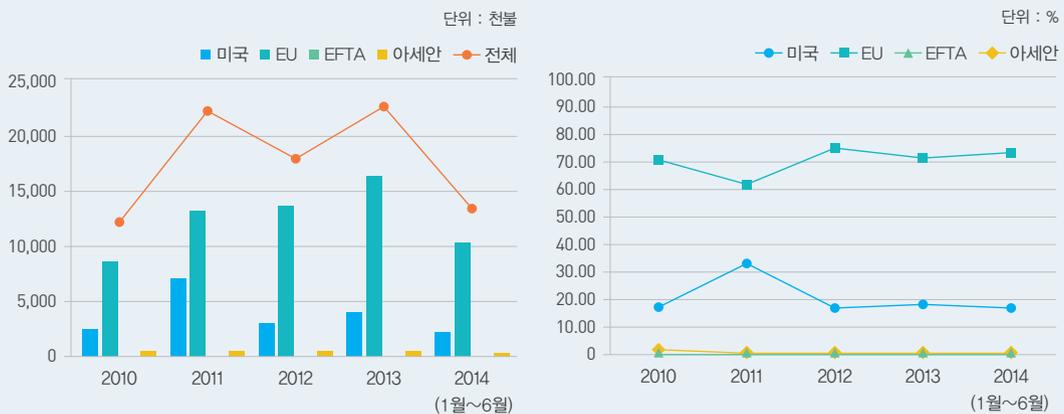
단위 : 천불, %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18,375	14,881	81.0	22,385	17,672	78.9	13,767	10,950	79.5
	비중									
미국	금액	3,141	1,971	62.8	4,094	2,971	72.6	2,240	1,747	78.0
	비중	17.09	13.25		18.29	16.81		16.27	15.95	
EU	금액	13,908	12,800	92.0	16,011	14,536	90.8	10,176	9,126	89.7
	비중	75.69	86.02		71.53	82.25		73.92	83.34	
EFTA	금액	-	-	-	-	-	-	-	-	-
	비중	-	-		-	-		-	-	
아세안	금액	143	109	76.2	168	163	97.0	78	76	97.4
	비중	0.78	0.73		0.75	0.92		0.57	0.69	

• 총 수입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의 수입증가는 주로 EU의 수입증가에 기인한다. EU의 수입금액은 다른 체약상대국 수입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 비중이 70~80% 구간에 머물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품이다. 또한 아이스크림 수입 증가율도 높아 2013년에는 2010년 수입의 2배 수준이다. 2014년 EU의 아이스크림 수입비중은 73.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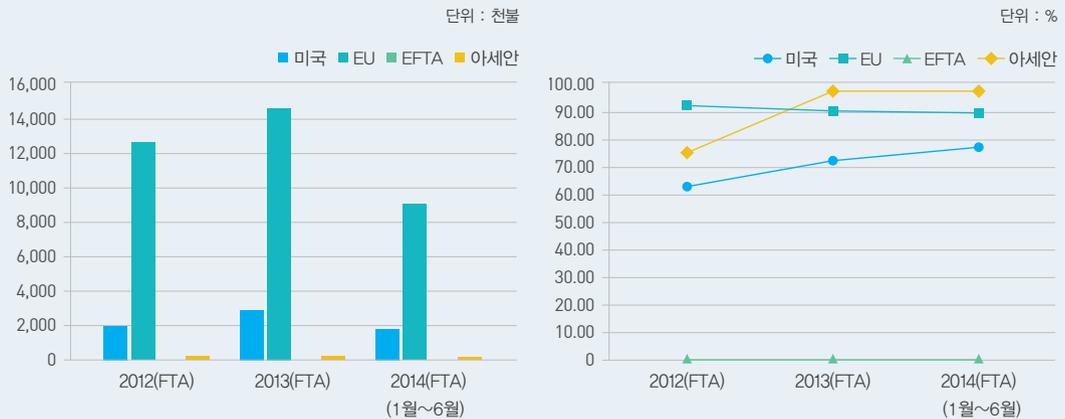
그림 17 아이스크림(제2105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EU의 아이스크림 수입비중이 높은 만큼 FTA 수입금액 역시 EU가 가장 높으며, 미국, 아세안 순으로 나타났다. EU의 FTA 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EU의 전체적인 아이스크림 수입증가는 FTA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아세안 역시 수입 금액은 EU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나, FTA 활용률은 높은 수준이다. EFTA로부터의 FTA 수입금액은 전무하다.

그림 18 아이스크림(제2105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소 결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수입은 한-EU FTA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011년 총 수입은 2천2백만 달러로써 2010년 1천2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중 EU 수입증가분이 5백만 달러이다. 최근 커피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함께 판매하는 가게도 증가하고 있으며, 길어지고 무더워진 여름날씨도 아이스크림의 수입 증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류(제22류)

우리나라 수입주류 시장은 크게 맥주와 포도주 그리고 위스키와 같은 고급 양주로 분류된다. 특히, 최근 저 알코올 주류의 인기와 젊은층이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맥주와 포도주의 인기가 매우 높다.

수입맥주의 경우 사상최대의 수입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첫째, 젊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맥주에 대한 수요 증가, 둘째, FTA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 셋째, 대형마트의 다양한 수입맥주 할인행사, 넷째, 국내 맥주제조사의 라이선스 획득¹⁸⁾으로 인한 수입맥주 유통 활성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맥주(제2203호)

우리나라 맥주수입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총 맥주 수입 4천 3백만 달러였던 수준에서 2013년에는 9천만 달러, 2014년에는 1억 달러 수입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FTA 활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전체 FTA 활용률 33.8%에서 2014년 상반기 45.7%로 수입의 절반 수준이 FTA활용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국내 OB맥주나 하이트 진로는 수입맥주를 라이선스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직접 수입하고 있다. OB맥주는 호가든, 버드와이저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버드아이스, 코로나, 스텔라 아르 투아, 벅스, 레페 브라운, 레페 블론드, 산토리 프리미엄 몰트를 직접 수입하고 있으며, 하이트 진로는 기린 이치방, 크로넨버그 1664, 싱하를 직접 수입하고 있다. 롯데는 아사히 맥주를, 매일유업은 샤프로 맥주를 수입하고 있다.

그림 19 맥주(제2203호) 수입동향



단위: 천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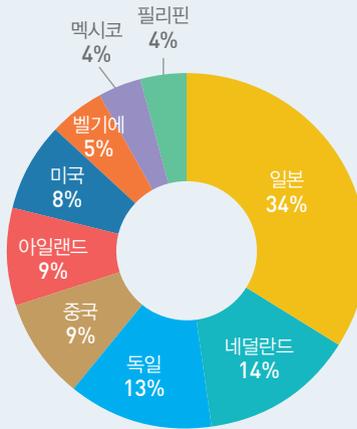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73,591	24,887	33.8	89,667	35,542	39.6	50,789	23,198	45.7
미국	금액	6,457	5,299	82.1	6,756	6,731	99.6	3,581	3,578	99.9
	비중	8.77	21.29		7.53	18.94		7.05	15.42	
EU	금액	26,757	19,561	73.1	37,878	28,675	75.7	23,941	19,525	81.6
	비중	36.36	78.60		42.24	80.68		47.14	84.17	
EFTA	금액	-	-		1	-		-	0	
	비중	0.00	0.00		0.00	0.00		0.00	0.00	
아세안	금액	3,266	0	0.0	4,636	0	0.0	2,169	0	0.0
	비중	4.44	0.00		5.17	0.00		4.27	0.00	

이러한 맥주수입의 증가는 사실상 EU 맥주수입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EU의 비중이 크다. 2013년 EU산 맥주의 수입비중은 50%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수입맥주의 80%는 FTA 활용수입이다.

•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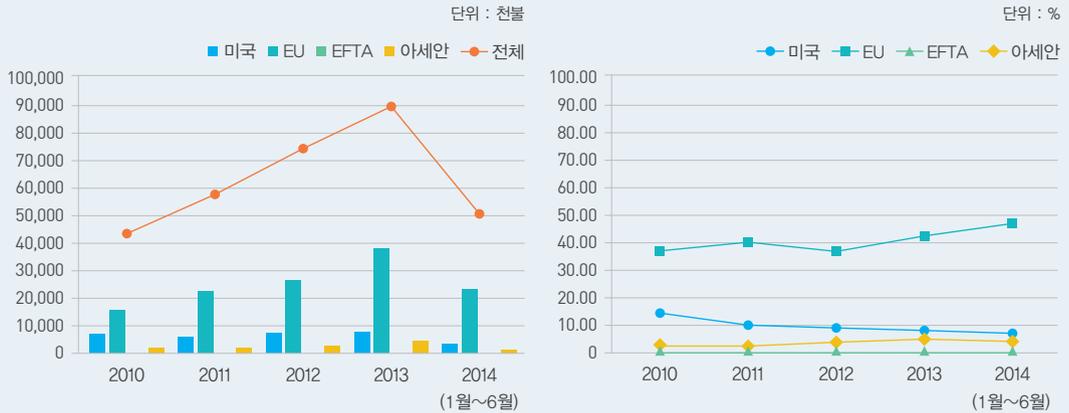
우리나라 최대 맥주 수입국은 일본이다. 2013년 기준 총 8만9천 달러 중 2만 7천 달러(31%)를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2위), 독일(3위), 아일랜드(5위), 벨기에(7위)를 합하면 EU가 최대 수입국이 된다.

그림 20 2013년도 맥주(제2203호) 국가별 수입동향



특히,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전체 맥주 수입 중 절반 가까이가 EU로부터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타 협정의 경우 수입비중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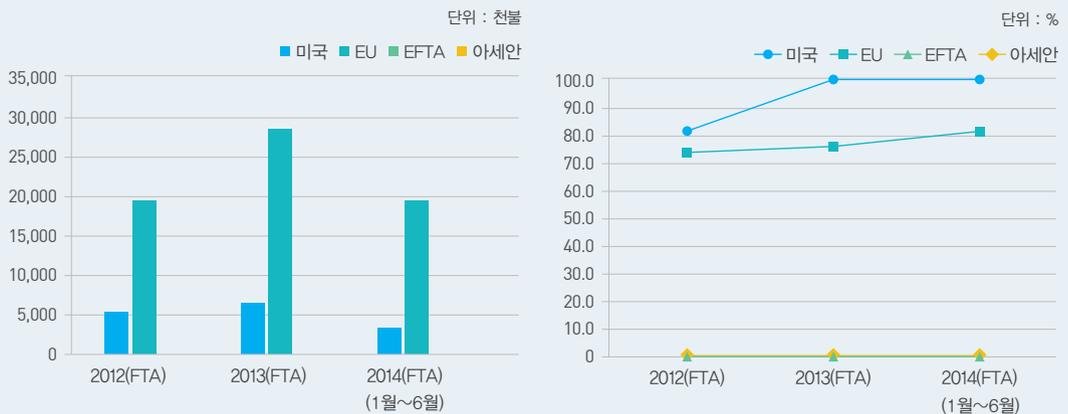
그림 21 맥주(제2203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협정별 맥주수입 시 FTA 활용의 경우, 총 수입과 마찬가지로 EU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높으며, EU에 비하면 낮지만 미국의 FTA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활용률에 있어서는 미국이 EU보다 높은데,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맥주는 FTA 특혜를 적용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아세안과 EFTA의 FTA 활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22 맥주(제2203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포도주(제2204호)

포도주는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로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포도주는 대부분 프랑스, 미국, 칠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및 미주 국가의 것에 편중되어 있다.

주류 중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주류인 포도주의 경우 맥주의 수입과 유사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맥주와 비교하여 수입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23 포도주(제2204호) 수입동향



단위: 천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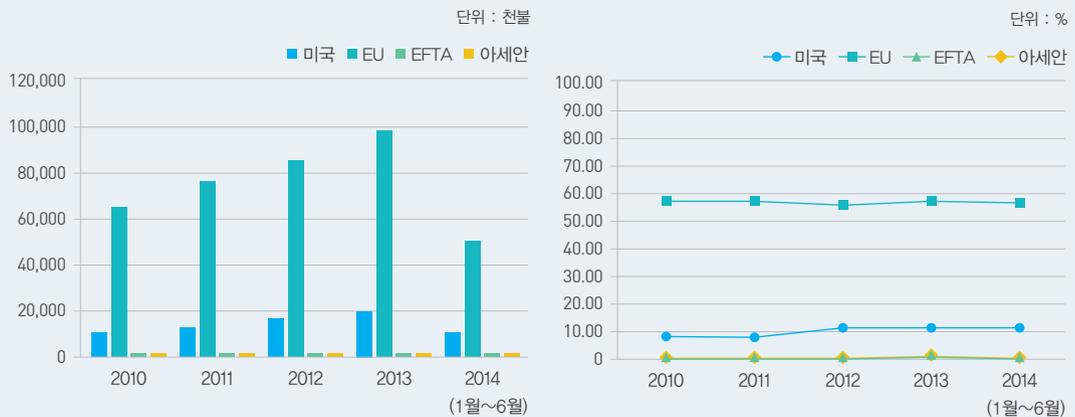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147,260	121,350	82.4	171,840	146,586	85.3	89,767	76,306	85.0
	비중									
미국	금액	17,174	13,592	79.1	19,692	18,366	93.3	10,350	9,298	89.8
	비중	11.66	11.20		11.46	12.53		11.53	12.19	
EU	금액	84,587	78,374	92.7	99,495	93,108	93.6	51,626	48,466	93.9
	비중	57.44	64.59		57.90	63.52		57.51	63.52	
EFTA	금액	13	1		170	10		116	5	
	비중	0.01	0.00		0.10	0.01		0.13	0.01	
아세안	금액	24	-	0.0	1	-	0.0	3	-	0.0
	비중	0.02	0.00		0.00	0.00		0.00	0.00	

우리나라의 포도주의 수입증가는 맥주와는 달리 EU의 수입증가와 더불어 칠레 및 미국산 포도주의 수입증가에도 원인이 있다. EU의 포도주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칠레와 미국의 수입도 역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여 포도주의 국가별 수입비중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를 15%인 포도주는 FTA에 따라 칠레산은 2008년, EU는 2011년 7월, 미국산은 2012년 3월부터 관세가 철폐되었다.

• 총 수입

협정별 포도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EU와 미국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비중은 4개 협정 모두 큰 변화 없이 완만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입금액은 증가하면서 수입비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계약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칠레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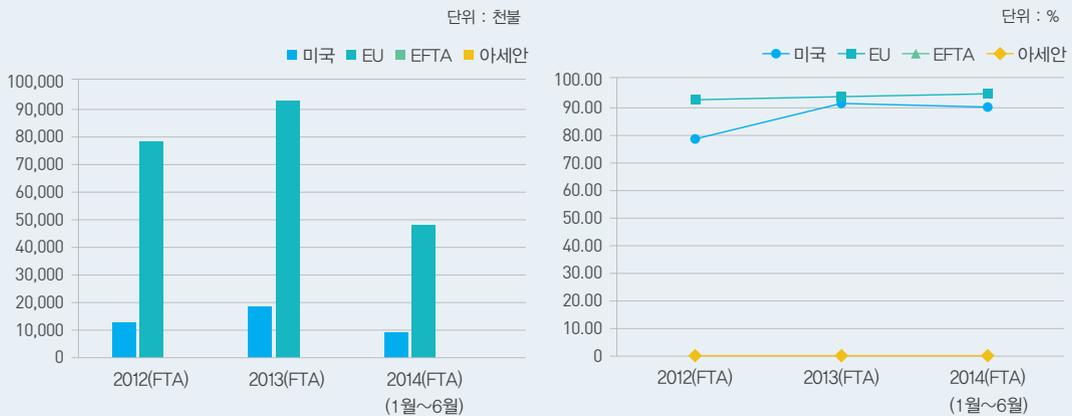
그림 24 포도주(제2204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FTA 수입의 경우 수입증가와 더불어 미국과 EU의 높은 FTA 활용률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협정은 FTA 활용률이 90% 안팎에 분포되어 사실상 수입되는 대부분의 포도주는 FTA 협정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아세안과 EFTA의 수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25 포도주 (제2204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소 결

국내 맥주수입의 경우, 2012년도 최대 맥주수입국인 일본의 수입증가율이 44.6%로 독일의 29.7%, 아일랜드 28.4%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FTA의 발효가 수입맥주 증가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국내 수요자들의 선호도와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 국산 맥주에 대한 사건 사고 등이 더욱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도주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포도주의 최대 수요처인 EU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수입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는 EU에서 포도주의 수입이 증가한 만큼 2004년에 발효된 칠레에서의 포도주 수입도 같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인데, 이는 관세의 철폐로 인한 가격하락이 포도주 수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주스 및 음료

국내 웰빙열풍으로 인하여 기존 탄산·착색음료보다 건강에 좋은 과실 원액 및 천연탄산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실주스는 과실의 원액을 그대로 주스화 한 것이며, 천연탄산수는 물에 미네랄 및 탄산 등 최소한의 감미료만을 첨가한 것이다. 과실주스와 탄산수는 국내 증가하는 커피전문점과 대형마트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과실주스(제2009호)

제2009호에 속하는 과실주스는 주로 과실과 채소를 직접 압착하여 얻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과즙'으로만 만든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오렌지 주스, 레몬주스, 라임주스 등 다양한 과실로 만든 과실주스가 포함된다. 과실주스는 일반적으로 원액 100%상태의 농축액이 국내로 반입되어 이를 희석하는 공정을 거친다.

우리나라의 총 과실주스 수입은 201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3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도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1억2천만 달러에서 2012년 2억 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14년 상반기 현재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과실주스(제2009호)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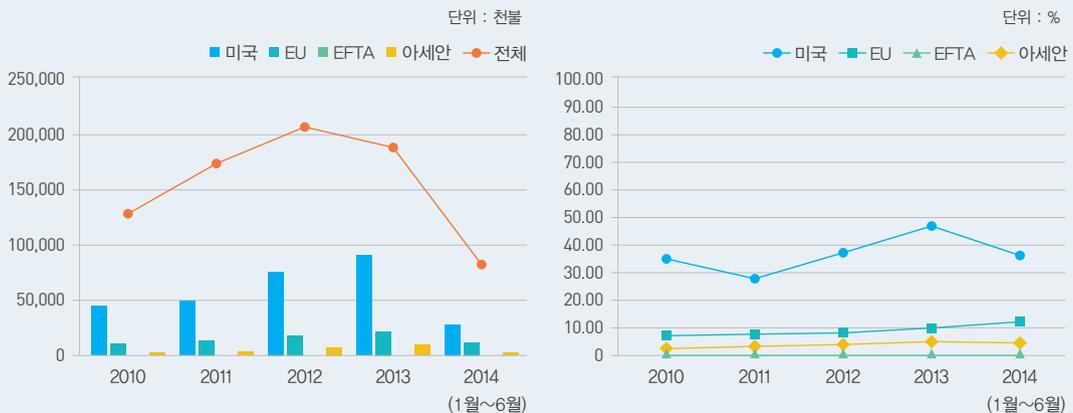
단위 : 천불, %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203,146	109,175	53.7	190,767	141,081	74.0	82,720	59,693	72.2
	비중									
미국	금액	77,200	64,641	83.7	90,662	87,134	96.1	29,738	27,523	92.6
	비중	38.00	59.21		47.52	61.76		35.95	46.11	
EU	금액	17,875	15,936	89.2	19,471	17,744	91.1	10,041	8,993	89.6
	비중	8.80	14.60		10.21	12.58		12.14	15.07	
EFTA	금액	76	5		114	4		70	-	
	비중	0.04	0.00		0.06	0.00		0.08	0.00	
아세안	금액	5,125	2,915	56.9	7,192	5,183	72.1	3,356	2,701	80.5
	비중	2.52	2.67		3.77	3.67		4.06	4.52	

• 총 수입

우리나라의 과실주스 수입은 2012년 2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전체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과실주스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과실주스 수입과 정반대의 동향을 나타내는데 2010년 4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3년에는 그 2배인 9천만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 비중 역시 2013년에는 50%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EU의 경우 미국과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액이 낮은 수준이므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27 과실주스(제2009호) 협정별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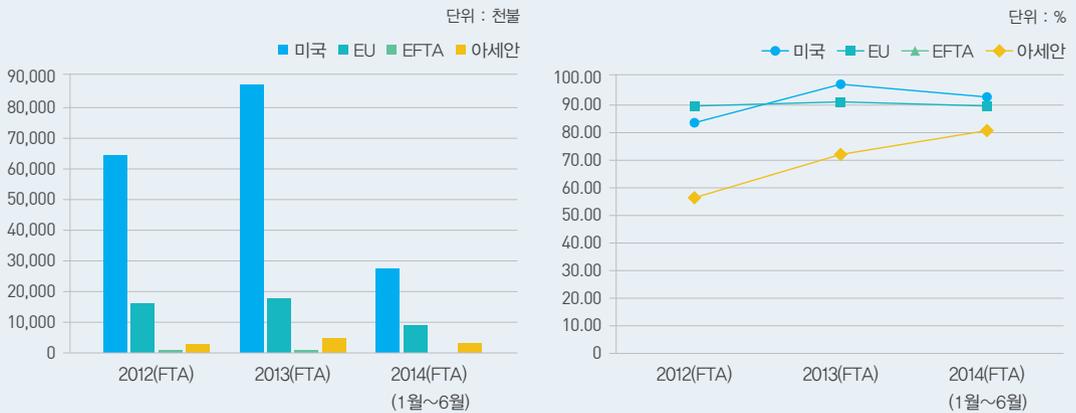


과실주스의 수입증가는 한-미 FTA의 관세인하조치(발효 전 54%, 발효 후 0%)와 더불어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의 특성상 뛰어난 품질에도 원인이 있다. 마트 등에서 쉽게 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품종은 배꼽 모양으로 다른 품종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오렌지에 비해서 씨가 적고 매끈한 모양을 가졌다. 또한 WSJ에 따르면 한미 양국간 무역분쟁¹⁹⁾이 해소되면 한국의 오렌지 주스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FTA 수입

과실주스의 FTA 활용률은 높은 편으로 미국과 EU는 발효 직후부터 80%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아세안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은 낮으나 높은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FTA 활용률이 90%를 상회하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과실주스는 FTA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8 과실주스(제2009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19) 관세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미국산 오렌지 농축액이 원산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6월부터 원산지검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대하여 미 정부가 반발하여, 지난 한미 정상담회담 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TPP참여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오렌지에 대한 원산지 검증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 정부의 요구(품질증명서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것)를 수용하였으며 원산지 검증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음료(제2202호)

제2202호에는 음료수가 분류되는데, 포함되는 물의 함유량에 따라 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음료수입은 과실주스에 비하여 수입금액은 낮으나 FTA 활용률이 70%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써 주요 FTA 수입물품이라 할 수 있다.

수입되는 대부분의 음료수는 물에 탄산을 첨가한 스파클링 워터 또는 약간의 과실향을 첨가한 것으로서 최근 웰빙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미네랄 워터, 마토니(Mattoni), 로리나(Lorina), 페리에(Perrier) 등인데, 이러한 음료수는 최근 대중화된 커피전문점에서 함께 판매되고 있는 종류이다.

음료수의 수입은 FTA의 활용으로 인한 EU의 높은 상승세와 미국의 하락세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이 2012년 FTA 발효 전까지 EU는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FTA 발효와 함께 미국의 점진적인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29 음료(제2202호)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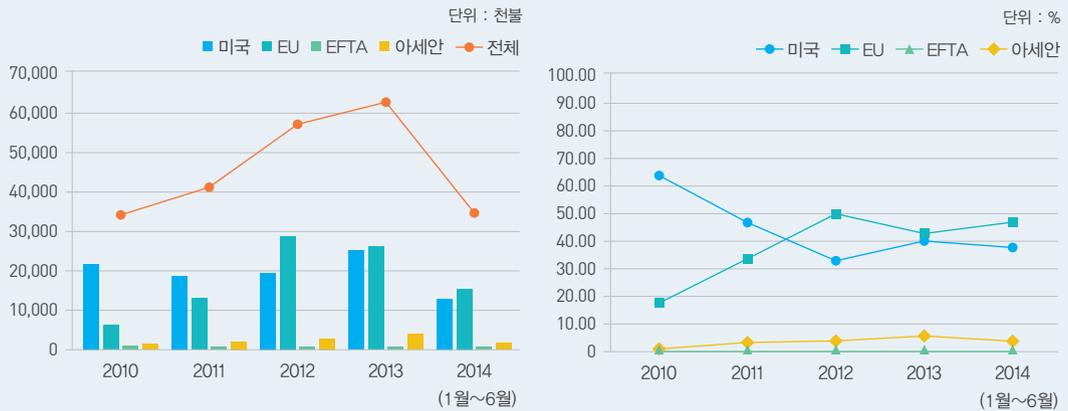
단위 : 천불, %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57,292	39,479	68.9	63,442	48,840	77.0	34,503	27,099	78.5
	비중									
미국	금액	19,055	10,222	53.6	25,711	20,444	79.5	13,250	9,762	73.7
	비중	33.26	25.89		40.53	41.86		38.40	36.02	
EU	금액	28,475	27,662	97.1	27,204	25,926	95.3	16,147	15,829	98.0
	비중	49.70	70.07		42.88	53.08		46.80	58.41	
EFTA	금액	54	35		83	67		54	42	
	비중	0.09	0.09		0.13	0.14		0.16	0.15	
아세안	금액	2,817	1,559	55.3	3,925	2,283	58.2	1,864	1,414	75.9
	비중	4.92	3.95		6.19	4.67		5.40	5.22	

• 총 수입

우리나라 음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3천4백만 달러에서 2013년 6천3백만 달러로 3년간 약 2배 수준 증가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는 총 3천4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협정별로는 과실주스와는 반대로 EU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바뀌는 모습을 나타낸다. 2010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수입이 더 높았으나, 한-EU FTA 발효 이후 2012년부터는 EU의 수입이 미국을 초과하였다. 2012년도 EU의 음료수 수입은 전체 5천7백만 달러에서 2천8백만 달러를 차지하여 약 50%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비중은 2010년 63%에서 2014년 상반기 38%로 하락하였다.

그림 30 음료(제2202호) 협정별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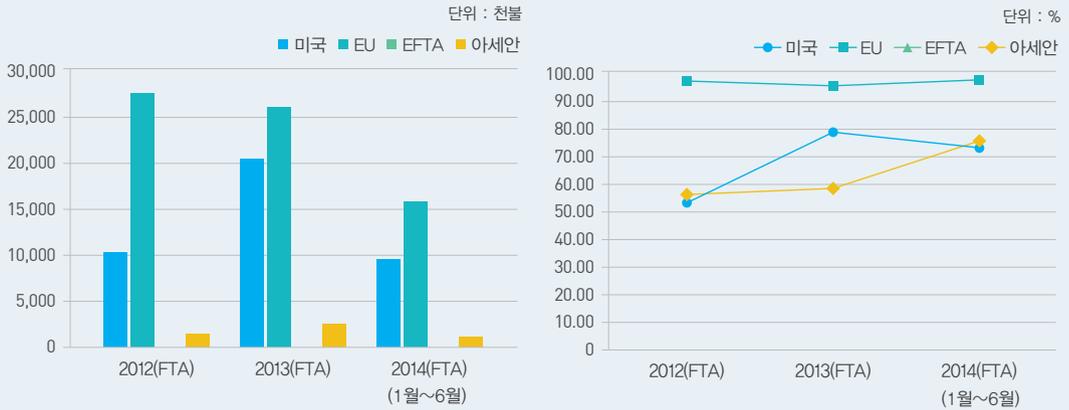


• FTA 수입

미국과 EU의 FTA 수입은 총 수입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2012년에 EU가 FTA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1위 수입국이 되었으며,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도 미국과 EU의 차이는 줄었으나 여전히 최대 수입국으로 남아있다.

음료수의 FTA 수입에 있어서 EU는 2012년 97%, 2014년에는 98%를 기록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음료수는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은 EU보다 낮으나 FTA 활용도는 60%~80%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음료(제2202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소 결

과실주스와 음료는 모두 FTA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FTA 수입물품이다. 과실주스의 경우 2013년도 전체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미국 수입과실 주스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음료는 전체 수입과 EU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EU 수입이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다.

과실주스와 음료모두 웰빙트렌드를 반영한 '과일'의 파생상품이라는 점과, 최근 국내 급증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와 함께 판매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점에서 수입증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빵 및 비스킷류

최근 국내수입과자 전문점 수가 급증하고 대형마트에서도 수입산 진열대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내 유명마트에서 총 과자매출 중 수입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입과자 수요의 증가는 FTA 증가에 따른 관세철폐와 더불어, 국산 과자의 가격상승과 일부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한 결과로 알려졌다. 과자가격의 상승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폭보다 월등히 높으며, 또한 수입과자와는 달리 포장에만 신경을 쓰고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 및 미국으로부터의 빵·비스킷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총 수입 1억4천7백만 달러에서 2013년 2억4천5백만 달러로 약 1억 달러의 증가를 보였다. FTA활용률 역시 2012년 46.1%에서 2014년 상반기 62.6%로 증가하였다.

그림 32 빵 및 비스킷(제1905호) 수입동향



단위 : 천불, %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227,636	105,012	46.1	245,061	146,294	59.7	127,234	79,659	62.6
	비중									
미국	금액	56,572	24,701	43.7	62,994	46,187	73.3	34,948	25,015	71.6
	비중	24.85	23.52		25.71	31.57		27.47	31.40	
EU	금액	35,852	19,534	54.5	39,798	29,785	74.8	22,784	20,842	91.5
	비중	15.75	18.60		16.24	20.36		17.91	26.16	
EFTA	금액	681	222		1,309	704		561	193	
	비중	0.30	0.21		0.53	0.48		0.44	0.24	
아세안	금액	65,684	60,554	92.2	74,739	69,285	92.7	36,204	33,165	91.6
	비중	28.85	57.66		30.50	47.36		28.45	41.63	

스위트 비스킷과 와플(제19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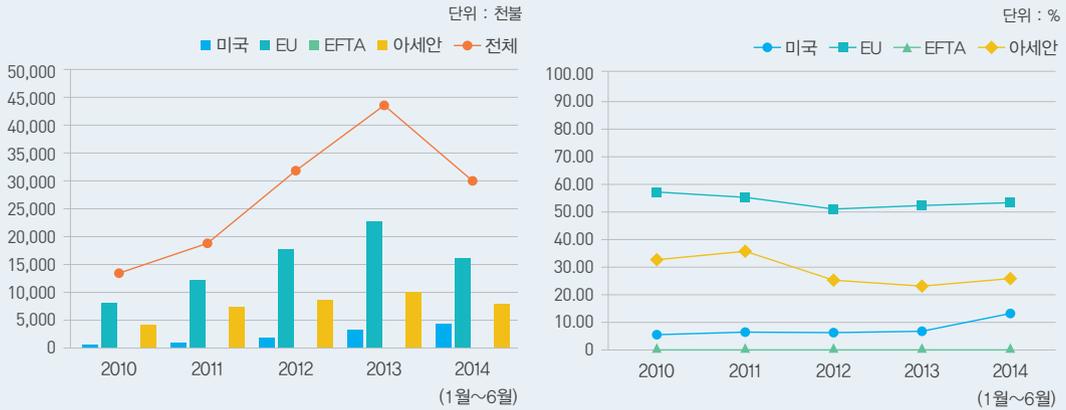
스위트 비스킷은 일반적으로 국내 유명과자인 '초코파이²⁰⁾'와 유사한 물품이다. 설탕 및 기타 감미료 등을 기재로 하여 초콜릿, 커피 등을 함유할 수 있다. 스위트 비스킷은 공업적으로 제조되며 장기 보존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총 수입

스위트 비스킷의 총 수입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증가폭도 높은 수준인데 2010년 1천3백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4천3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FTA 체결상대국간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아세안의 수입비중이 2010년 32.4%에서 2014년 26.1%로 소폭 감소한 반면, 미국의 수입비중이 같은 시기 4.8%에서 13%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10년 이후 줄곧 50%대를 유지해 왔다.

20) 트웝스, 미스터 빅 등도 동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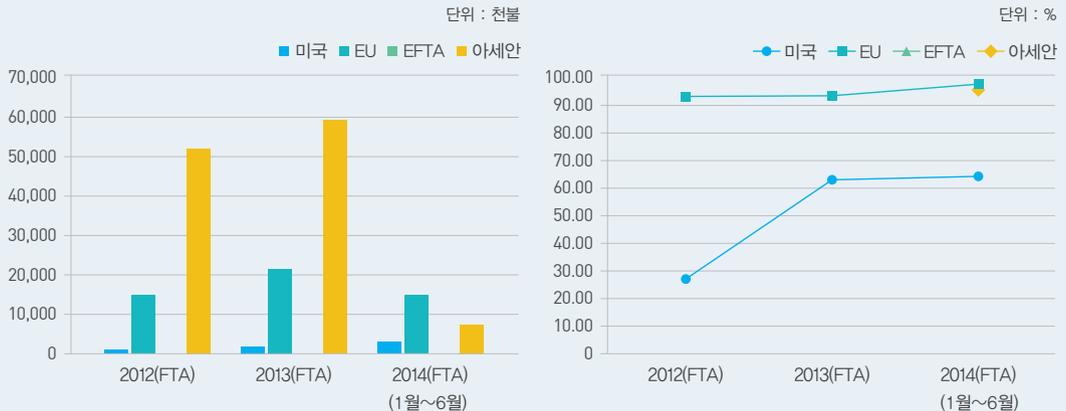
그림 33 스위트 비스킷과 와플(제1905.3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스위트 비스킷의 FTA 활용수입은 EU 증가와 아세안 감소가 주요 변화로 나타난다. FTA 수입금액 측면에서 아세안 스위트 비스킷의 수입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수입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EU의 FTA 수입은 아세안에 비하여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FTA 활용률 역시 98%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이 FTA 활용물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스위트 비스킷과 와플(제1905.3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케이크(제1905.90-1030)

빵집에서만 구할 수 있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케이크는 다양한 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증가하는 커피전문점 및 베이커리, 그리고 대형할인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케이크 구매가능하며, 또한 모양과 크기도 다양하여 조각케이크를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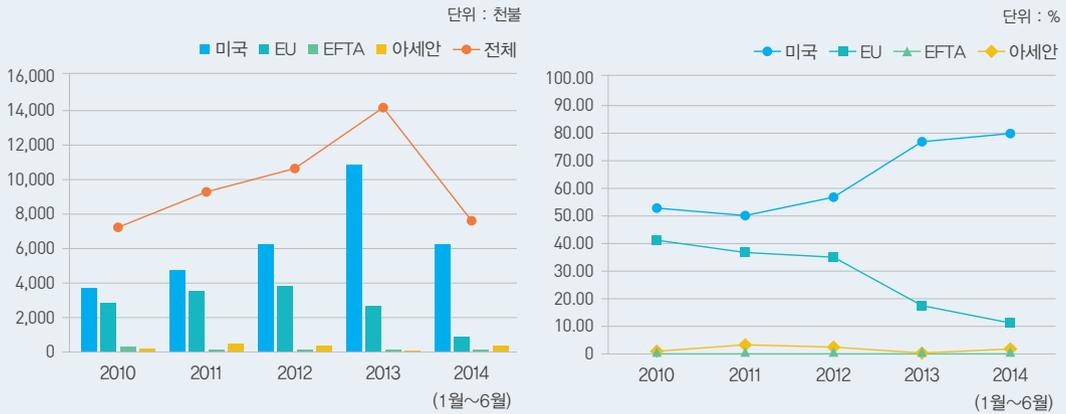
또한 지난 10년간 국내에 큰 폭으로 증가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확산 역시 케이크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켰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식사 후 커피와 디저트를 모두 즐길 수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 유럽 및 미국에서 케이크를 수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치즈케이크, 커피케이크 등이 있다.

• 총 수입

우리나라 케이크 수입은 2010년에 비하여 2013년에는 약 2배가량 급증하였다. 2010년에 7백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1천4백만 달러 수입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는 7천7백만 달러 수입을 나타냈다.

이러한 수입증가는 미국산 케이크의 수입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케이크의 수입은 2010년 3백만 달러로 전체의 53%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총 수입의 80%를 차지하였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계 대형할인마트에서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큰 사이즈의 케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이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EU로부터의 수입은 점차 감소하여 2014년 상반기에는 11%의 수입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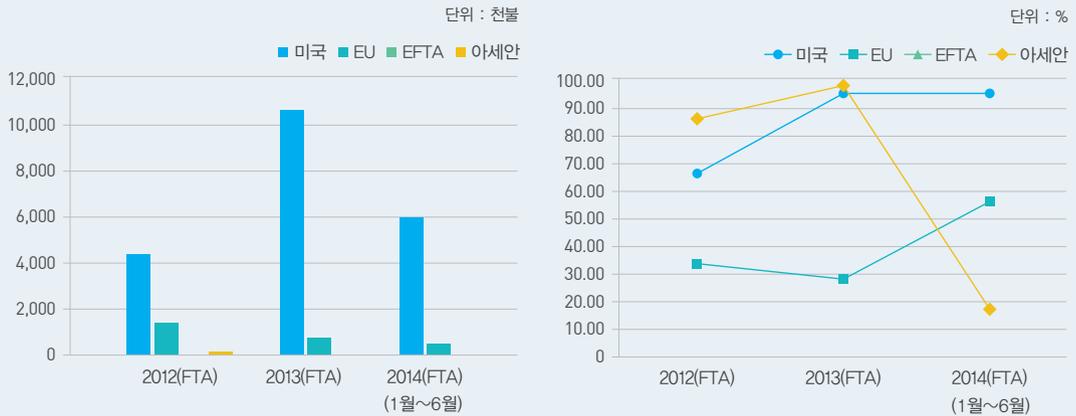
그림 35 케이크(제1905.90-1030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케이크의 FTA 수입은 총수입과 유사한 동향을 나타낸다. 미국의 FTA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EU의 FTA 수입금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FTA 수입 활용률 역시 미국의 케이크 수입 시 FTA 활용률은 2013년 이후 9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의 FTA 수입금액은 감소하였으나 활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특이한데, 이는 FTA를 활용하지 않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 케이크 FTA 수입이 높지는 않으나 수입되는 대부분의 케이크는 FTA를 활용한 수입이다.

그림 36 케이크(제1905.90-1030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제1905.90-1040)

비스킷은 스위트 비스킷과는 달리 감미료를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구워서 만들며 밀폐포장되어 운송된다.

비스킷의 수입 증가는 국내 유통점의 수입과자 매출을 확인해 보아도 규모의 증가를 알 수 있다. 한 대형 유통업체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수입과자의 매출은 11.9% 증가하였으나 국내과자 매출은 9.8% 감소하였으며, 전체 과자 매출 중 수입과자의 비율도 26.7%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수입과자 점유율 7.5%에 비하여 4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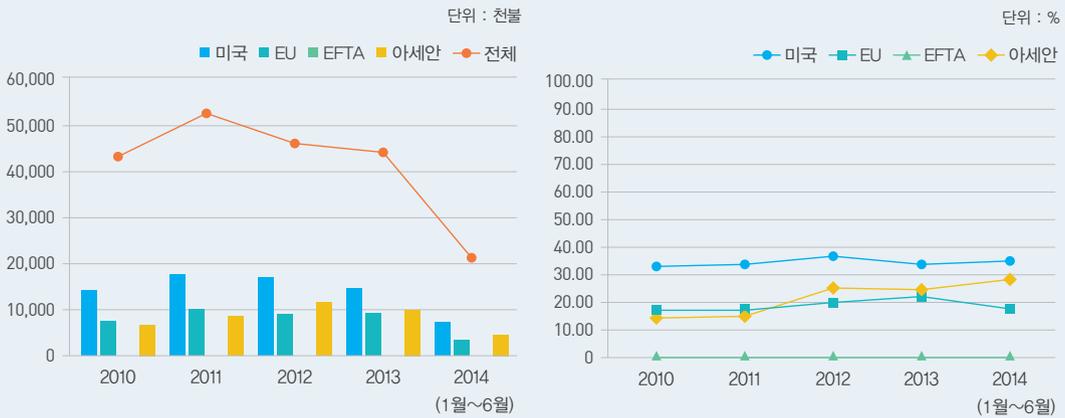
이러한 수입과자의 상승세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국내과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인으로 뽑았다. 국산 과자의 경우 과자의 양은 대략 포장지의 3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고 해마다 과자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킷 수입의 경우, 미국과 EU의 FTA 활용률이 두드러진다. 이들 양 국가의 총 수입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FTA 활용률의 급격한 증가로 미루어 보아 일반수입에서 FTA 수입으로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총 수입

비스킷 수입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총 수입 5천1백만 달러에서 2013년 4천3백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2천만 달러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체약상대국별 수입에서는 미국, EU, EFTA 등은 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아세안 수입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즉 비스킷 수입은 비체약국의 수입은 감소하고 체약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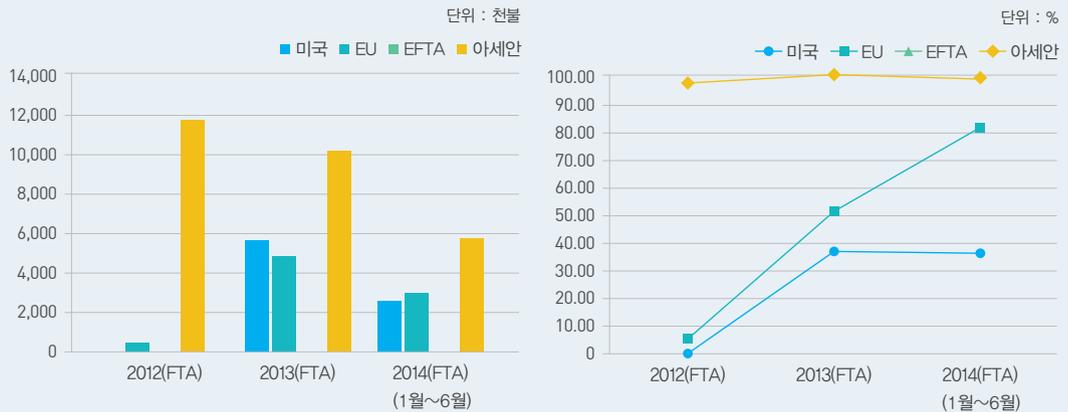
그림 37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제1905.90-1040)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비스킷의 FTA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협정별로는 미국과 EU 수입이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2012년 수입이 거의 전무하였으나, 2013년 5백만 달러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40%의 FTA 활용률의 결과이다. EU 역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FTA 활용률은 미국보다도 높은 80% 수준이다.

그림 38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제1905.90-1040) 협정별 FTA 수입동향



소 결

스위트 비스킷의 경우, 총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수입증가는 특정 체약상대국에 편중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수입증가임을 고려할 때 국내 수요의 증가가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케이크 수입의 경우 한-미 FTA에 의한 수입증가로 볼 수 있는데, 미국산 케이크가 유럽산 케이크를 대체한 것뿐만 아니라, 총 수입금액에서도 EU를 훨씬 앞지르며 케이크 전체 시장규모를 증가시켰다.

이와는 달리 비스킷의 경우 총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스위트 비스킷과 케이크가 비스킷 시장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조제과실 및 견과류(제2008호)

제2008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및 견과류 등이 분류된다. 특히 여기에는 아몬드, 복숭아, 살구 및 기타 조제한 견과류 및 과실 등이 포함된다. 조제과실 및 견과류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0년 1억 8천만 달러 수준에서 증가하여 2013년에는 2억8천만 달러로, 3년간 1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상반기에만 1억6천만 달러 수입을 나타냈다.

그림 39 조제과실 및 견과류(제2008호) 수입동향



단위 : 천불, %

협정	구분	2012			2013			2014 (1월~6월)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일반	FTA	활용률
전체	금액	264,705	69,120	26.1	284,819	101,231	35.5	164,502	65,792	40.0
	비중	15.28	21.70		15.93	30.66		19.45	34.33	
미국	금액	40,446	14,999	26.1	45,360	31,035	35.5	32,001	22,584	40.0
	비중	15.28	21.70		15.93	30.66		19.45	34.33	
EU	금액	5,757	4,598	79.9	8,309	7,188	86.5	4,684	3,770	80.5
	비중	2.17	6.65		2.92	7.10		2.85	5.73	
EFTA	금액	336	201	59.8	118	54	45.8	67	27	40.3
	비중	0.13	0.29		0.04	0.05		0.04	0.04	
아세안	금액	96,227	36,396	37.8	119,102	61,133	51.3	70,610	38,333	54.3
	비중	36.35	52.66		41.82	60.39		42.92	58.26	

조제견과류(제2008.11/19호)

제2008.11호 및 제2008.19호에 속하는 대표적인 수입물품으로써 땅콩버터 (peanut butter creamy)가 있다. 땅콩버터는 건강음식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값싼 비용으로 고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다. 실제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땅콩버터가 기본이 된 구호식품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코코넛 크림 역시 아세안에서 주로 수입되는 물품이다. 이것은 케이크에 토핑하고 쿠키, 초콜릿에 사용하기도 하며 코코넛 밀크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국내 케이크 및 스위트 비스킷의 소비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총 수입

가공한 견과류 조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견과류의 수입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총 수입 8천8백만 달러에서 2013년 1억5천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체약국별로 살펴보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지며 기타 체약국은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아세안 수입은 2010년 14.5%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상반기에는 42.7%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비체약국의 수입을 아세안이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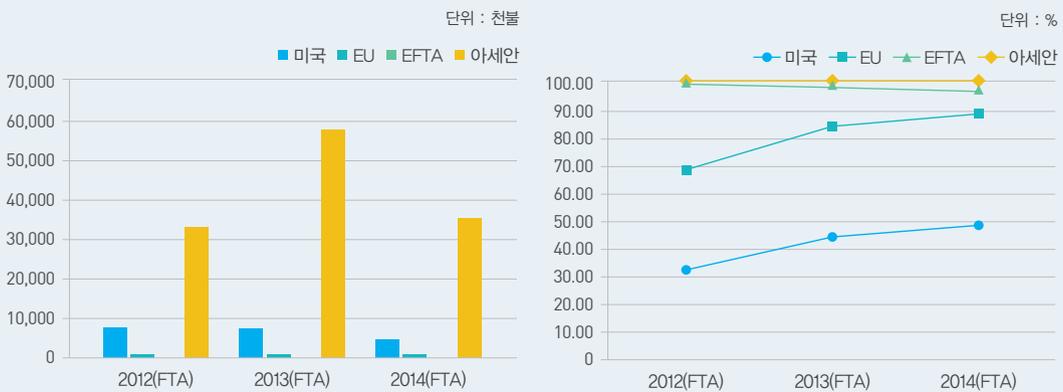
그림 40 조제견과류(제2008.11/19호) 협정별 수입동향



견과류 조제품의 FTA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이 FTA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세안은 2012년도 3천3백만 달러를 수입한데 이어 2013년에도 5천8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2014년 상반기 수입금액은 이미 2012년 총 수입금액을 초과하였다. 수입 두 번째인 미국은 2013년도 5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아세안 견과류는 수입금액이 높을 뿐 아니라 FTA 활용도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사실상 모든 견과류 수입은 FTA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수입 2위인 미국의 활용률은 약 50% 수준이다.

그림 41 조제견과류(제2008.11/19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조제복숭아(제2008.70호)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조제과실 중에서 대표적으로 복숭아가 있다. 이러한 복숭아는 껍질을 벗기고 통조림(canned peach)에 넣어진 상태로 국내로 수입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도 품질의 저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복숭아는 대표적인 웰빙식품이다. 복숭아는 식물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며, 소화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행을 촉진시키고 이뇨작용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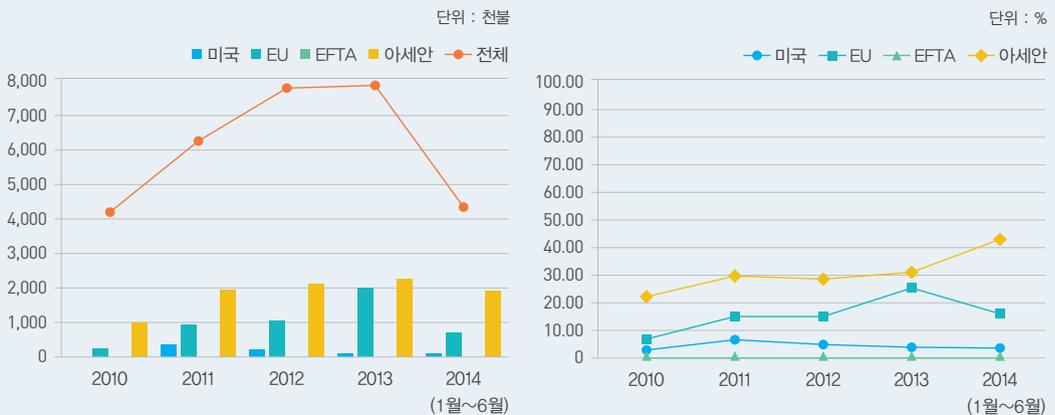
이러한 복숭아 통조림은 대부분 대형유통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과일의 상승과 더불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거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디저트용으로 수입되기도 한다.

• 총 수입

우리나라 조제복숭아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세안으로 수입되고, 최근들어 EU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조제복숭아는 총 7백6십만 달러 수입하였는데, 이 중 아세안이 30%, EU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국별 수입비중은 더욱 편차가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의 경우 2014년 상반기까지 계속 증가하여 50% 부근까지 이르고 있으며 EU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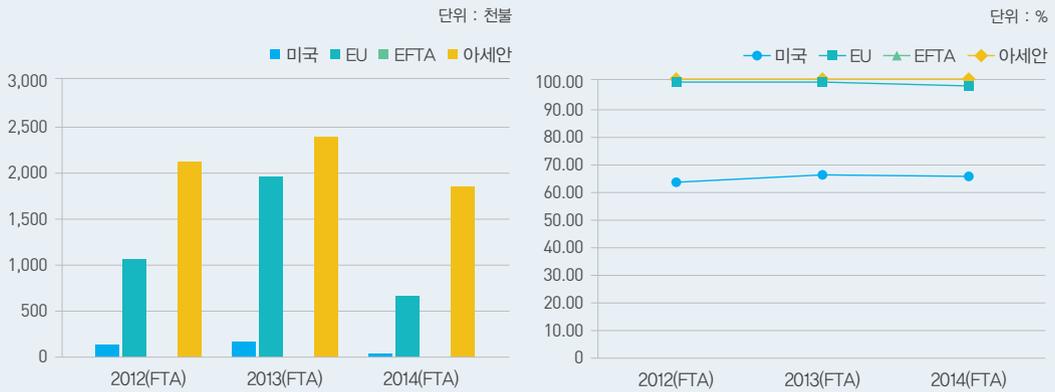
그림 42 조제복숭아(제2008.70호) 협정별 수입동향



• FTA 수입

조제복숭아의 FTA 수입은 총 수입 동향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아세안과 EU로부터의 수입이 FTA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양 계약국의 FTA 활용률은 100%로 수입되는 조제복숭아는 모두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 조제복숭아(제2008.70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소 결

땅콩버터는 주로 식빵에 발라먹는 것으로서 베이커리 제품의 소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의 베이커리제품의 소비증가와 함께 간편하게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땅콩버터의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숭아 통조림의 경우, 제품 특성상 유통기간이 길고 소량보다는 큰 사이즈의 대량구매일수록 가격인하 효과가 높다. 따라서, 최근 급증한 국내 도매형태의 마트에서 인기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입 역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 현황과 FTA에서의 중간재 교역 성과¹⁾

조미진 교수 명지대학교



01 들어가면서

무역을 통한 글로벌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간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Baier and Bergstrand (1997)은 무역자유화와 운송비용의 절감 등이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으며, Hummels and Levinsohn(1995)은 비슷한 규모의 국가간 무역이 증가됨에 따라 세계 무역 규모가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계 무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국제무역의 새로운 경향으로 중간재(intermediate goods)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간의 무역 성장의 측면을 최종재(final goods)에 국한하여 분석한 것에서 벗어나 중간재의 역할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1) 본 글은 2014년 6월에 무역학회지에 발표된 '기발호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을 재편집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선 중간재 교역의 증가세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에 기인한 것과 동시에 다자간 혹은 지역간 자유 무역을 향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leinert(2003)는 OECD 및 독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진국의 중간재 교역의 증가가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활동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Hummels, Ishii, and Yi(2001)의 경우 OECD 10개국과 신흥 4개국을 대상으로 수직적 분업(수입된 중간재가 수출품에 투입된 경우로 한정)이 이들 국가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한 결과 이들 국가의 수출에서 약 21%가 수직적 분업에 의한 것이며, 이들 국가의 수출 성장의 약 30%가 수직적 분업에 의한 성장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중간재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학습효과(learning effects)와 다양성 증대 및 질적 향상 효과 등을 초래하여 국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 Goldberg et al.(2010)은 인도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간재에 대한 관세 철폐가 새로운 중간재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새로운 품목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결과로 중간재를 포함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중간재에 대한 무역자유화 혜택에 따른 성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004년에 가장 먼저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다수의 FTA가 체결·발효되어 왔으며, 2013년까지의 교역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당 기간의 FTA 이행기간이 확보된 만큼 중간재에 대한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의 국내 연구는 FTA 확산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최종재에 국한하여 FTA의 효과를 평가해왔다. 이에 여기에서는 중간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을 비롯하여 FTA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02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 현황

중간재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요소(inputs)로 정의되는데, 자본, 노동, 혹은 천연자원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일종의 고정자산(fixed asset)의 형태로 투입되어 사용('used')되는데 그치지만 중간재는 생산과정에서 소진('used up')되어 변형되거나 혹은 합쳐져 궁극적으로 최종재로 변화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UN에서는 품목의 최종 사용목적(main end-use)에 따라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등 3개 범위로 분류하는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간재를 제외한 소비재와 자본재의 경우 최종재로 보면 된다. 따라서 UN에서 제공하는 BEC 코드와 HS 버전별 연계코드(HS 2002, 2007, 2012버전)를 이용하여, 중간재에 대한 수입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우선 [표 1]은 2004~2013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對세계 중간재 수입 현황을 정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입액은 2013년 기준 약 5,156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80%에 달하는 약 4,121억 달러가 중간재 수입액이다.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과 2013년도 수입규모를 비교해보면 중간재와 전체품목에 대한 수입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중간재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85%로 상당한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들 수입의 대부분이 제조업 품목이라는 점이다.

단위 : 백만 달러

■ 표1
한국의 중간재
수입 현황
2004~2013년

연도	중간재	최종재	미분류	전체 수입
2004	170,922.3(5,588.1)	53,073.9(5,830.7)	464.8	224,461.1(11,418.8)
2005	200,220.4(5,439.9)	60,616.6(6,658.6)	399.6	261,236.5(12,098.5)
2006	237,969.3(5,941.0)	70,955.5(7,668.6)	456.2	309,381.0(13,609.7)
2007	276,165.1(7,478.7)	80,143.7(8,880.2)	535.6	356,844.4(16,360.4)
2008	350,854.1(10,850.6)	83,828.2(9,233.8)	591.4	435,273.7(20,084.4)
2009	252,964.9(8,431.7)	69,768.1(8,070.1)	351.2	323,084.2(16,501.7)
2010	331,625.5(9,803.5)	93,084.6(10,005.2)	501.7	425,211.8(19,808.7)
2011	418,817.4(12,588.8)	105,181.3(13,511.0)	376.0	524,374.7(26,099.8)
2012	417,961.0(12,736.4)	101,141.3(13,047.1)	479.2	519,581.4(25,805.9)
2013	412,089.2(12,982.8)	103,152.1(13,252.3)	319.2	515,560.6(26,235.2)

주 : 연도별 중간재 수입액은 농산품과 제조품에 대한 구분 없이 중간재에 해당되는 모든 품목을 집계한 값이며, 별도의 네모 박스 안에 HS 01~24류에 해당되는 농산품의 중간재 수입액은 집계함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표 2]에 우리나라의 對FTA 발효국별 중간재 및 전 품목에 대한 수입액 합계와 對세계 수입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발효), 한-EFTA FTA(2006년 9월 발효), 한-ASEAN FTA(2007년 6월 발효)가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는데, 이들 4개의 FTA가 발효된 2008년에 중간재 수입은 488.3억 달러로 한국의 對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2%이다. 이후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를 포함한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한-미 FTA(2012년 3월)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되면서 FTA를 통한 중간재 수입은 약 1,231억 달러, 총 수입은 약 1,768억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의 對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 34%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백만 달러, %

■ 표2
기발효
FTA 체결국과의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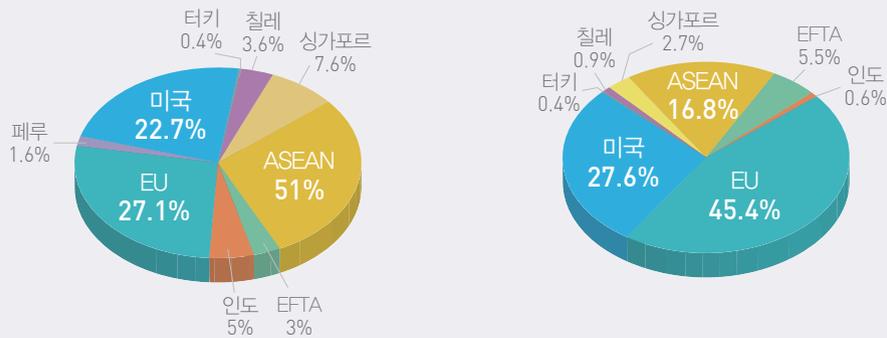
구분	기발효 FTA		對세계 수입액	
	중간재	총수입	기발효 FTA 중간재 수입 비중	기발효 FTA 총수입 비중
2004	1,341.6	1,419.1	0.6	0.6
2005	2,127.2	2,279.2	0.8	0.9
2006	8,049.5	9,577.6	2.6	3.1
2007	39,691.1	47,706.6	11.1	13.4
2008	48,836.3	57,544.2	11.2	13.2
2009	41,468.4	49,576.0	12.8	15.3
2010	56,205.7	67,542.8	13.2	15.9
2011	79,959.5	105,040.9	15.2	20.0
2012	119,322.3	168,484.9	23.0	32.4
2013	123,128.0	176,835.0	23.9	34.3

주 : 기발효 FTA의 중간재 및 총수입액은 발효시점이 고려되어 국가별 수입액이 합산되어 측정됨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 가운데 중간재 수입이 주로 어떤 FTA를 통해 유입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 발효국에 한정하여 2013년 기준 중간재 수입액의 FTA별 비중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비교 차원에서 최종재에 대한 각 FTA별 수입 비중을 함께 정리해보았다. 우선

중간재의 경우 한-ASEAN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약 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EU FTA(27.1%), 한-미 FTA(22.7%) 순이다. 반면 최종재의 경우 한-EU FTA를 통한 수입이 약 4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미 FTA(27.6%), 한-ASEAN FTA(16.8%) 순으로 높다.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 비중은 약간씩 다르나, 주로 미국, EU, ASEAN 회원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1 FTA별 중간재와 최종재 수입의존도(2013년 기준)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하에서는 FTA에서의 중간재 교역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간재 수입의 대부분은 제조업 품목인 만큼 농산품을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한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정하되, 유효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FTA 발효 이후 이행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인 FTA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한-EU, 한-미, 한-페루 FTA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 품목은 한-싱가포르 FTA 외에도 한-ASEAN FTA를 통한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한데, 한-싱가포르 FTA보다 한-ASEAN FTA를 통한 특혜신청 규모가 더욱 큰 만큼 한-싱가포르 FTA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기발효 FTA 가운데 한-칠레, 한-ASEAN, 한-EFTA, 한-인도 FTA 등 총 4개 FTA만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03

기발효 FTA의
중간재 교역
성과분석

FTA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활용률(utilization rates) 분석을 통해 중간재 수입 시 FTA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한다. 활용률 분석의 장점은 실제 국내 교역규모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정확한 수치 제공을 통해 수입 중간재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FTA의 효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한편 활용률 분석 결과에 앞서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FTA 성과 분석을 위해 중간재 수입규모의 확대와 외연적 성장(extensive margin)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3]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등 4개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 2004~2013년 동안의 수입추이를 정리한 결과이다. 한-ASEAN FTA를 통한 중간재 수입규모가 2013년 기준 약 413.7억 달러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FTA 가운데 가장 높고, 우리나라의 對ASEAN 전체 수입액의 약 83% 이상을 차지하는 등 ASEAN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대부분이 중간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칠레, 한-인도 FTA의 경우 수입 규모가 각각 41.4억, 29.5억 달러로, 수입규모 면에서는 다르지만, 한-ASEAN FTA와 유사하게 중간재 수입비중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한-EFTA FTA의 경우 2013년 기준 중간재 수입규모가 34.4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55%만이 중간재 수입으로 여타 FTA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표3

각 FTA별 중간재 수입 추이 2004~2013년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칠레		EFTA		ASEAN		인도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2004	1,800.9	1,807.5	878.5	1,731.5	14,328.3	21,274.1	1,376.5	1,442.6
2005	2,092.6	2,096.3	788.2	1,760.4	16,717.0	24,901.3	1,871.8	1,960.1
2006	3,578.2	3,580.3	948.0	2,121.9	19,630.6	28,459.9	3,247.1	3,385.8
2007	3,883.6	3,884.5	1,904.4	3,450.9	27,447.6	31,528.1	4,166.9	4,316.1
2008	3,846.3	3,847.6	2,047.9	4,044.6	34,450.3	38,644.5	5,742.5	5,997.5
2009	2,790.7	2,795.2	2,159.4	4,439.6	28,546.3	32,211.7	3,667.8	3,824.1
2010	3,888.6	3,892.4	2,681.2	5,554.2	36,717.4	41,902.4	5,172.5	5,328.3
2011	4,400.4	4,403.2	2,631.9	4,967.3	43,215.9	49,820.7	7,257.7	7,475.9
2012	4,192.1	4,193.0	5,082.2	7,526.3	40,681.3	48,537.2	6,057.7	6,283.1
2013	4,139.1	4,141.0	3,439.7	6,209.6	41,366.1	49,993.9	4,948.8	5,191.4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산업별로 보면 [표 4]에 정리된 것과 같이 2013년 기준 한-EFTA FTA를 제외한 한-ASEAN, 한-인도, 한-칠레 FTA에서 모두 가공광물에 대한 중간재 수입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칠레 FTA의 경우 2013년 기준 가공광물 산업의 수입규모가 FTA가 발효된 직후인 2004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TA 발효 직후 금속제품에 대한 수입 규모가 가장 높았으나 최근 들어 가공광물 산업에 대한 수입규모가 더욱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EFTA FTA의 경우 2013년 기준 일반기계 산업의 수입액이 약 7.8억 달러로 가장 높는데 2006년에 비해 약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FTA 발효 직후와 2013년을 함께 비교해 보더라도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수입규모가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FTA 발효 직후 고무/화학 산업에 대한 수입규모가 컸던 반면 2013년에는 금속제품과 전기기계 산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커진 것이 특징이다. 한-ASEAN FTA의 경우 FTA 발효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공광물, 전기기계, 고무/화학 등 세 개 산업에 속한 중간재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한-인도 CEPA의 경우에도 FTA 발효 이후 가공

광물, 금속제품, 고무/화학 산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수입액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가공광물, 비금속광물, 의류/직물 산업에 속한 중간재 수입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4
**각 FTA·산업별
 중간재 수입 현황**
 FTA발효시점 및
 2013년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칠레		EFTA		ASEAN		인도	
	2004	2013	2006	2013	2007	2013	2010	2013
가공광물	624.6	2,021.4	23.7	409.2	12,096.4	20,687.3	3,236.7	2,783.5
가죽제품	0.0	1.2	0.5	0.0	14.1	29.7	34.4	57.2
고무/화학	87.4	4.8	232.3	380.8	2,352.2	4,488.8	458.7	586.7
금속제품	954.8	1,663.4	110.9	607.9	1,617.6	2,762.1	765.3	973.7
기타운송기기			0.2	0.4	1.2	4.7	1.9	0.5
기타제조품	0.0	0.0	4.0	22.9	29.4	76.4	2.6	3.1
비금속광물	15.2	61.9	56.2	372.4	468.6	271.3	144.2	52.9
운송기기	0.0	0.0	4.1	5.8	42.6	81.4	23.5	23.0
의류/직물	0.1	0.3	19.9	40.0	520.5	1,047.6	368.9	286.6
일반기계	0.1	0.2	315.7	784.5	556.6	988.9	79.2	104.2
전기기계	0.9	1.4	90.5	589.1	8,309.2	9,207.8	42.4	69.2
정밀기계	0.0	0.0	76.5	206.6	102.8	310.1	3.6	6.0
종이/목재	117.8	384.4	13.7	20.0	1,336.7	1,410.1	11.0	2.3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도 CEPA의 경우를 제외하고 FTA 발효 이후 대체로 수입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FTA 관세 인하 및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기존 중간재 품목의 수입 확대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FTA 이전에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품목의 진입이 가능해진 외연적(extensive) 성장이 뒷받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간재 수입 품목의 다변화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5]에 4개 FTA를 대상으로

2004~2013년 동안의 국내로 수입된 중간재 및 전체 품목의 수를 HS 10단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교역량 증가가 실제 수입품목의 다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한-칠레 FTA의 경우 2004년 발효 당시 94개의 중간재 품목이 수입되었으나 2013년에 191개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여타 FTA에 비해 수입되는 중간재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나, FTA 발효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EFTA FTA의 경우 2006년 기준 1,599개의 중간재를 수입, 2013년에는 총 1,717개의 품목을 수입하는 등 약 9.5%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FTA의 경우에도 발효 시점과 2013년 기준 수입된 중간재 품목수를 비교할 경우 한-ASEAN FTA의 경우 2.3%, 한-인도 CEPA의 경우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ASEAN FTA의 경우 수입규모가 큰만큼 여타 FTA에 비해 보다 다양한 중간재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FTA 가운데 유일하게 중간재 품목의 증가율(2.3%)이 전체 품목의 증가율(2.0%)보다 높다.

단위 : 개

■ 표5

한국의 對FTA별 수입품목수 추이

구분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2004	94	141	1,567	2,704	2,756	4,636	1,291	1,958
2005	111	170	1,551	2,696	2,817	4,706	1,372	2,137
2006	115	186	1,599	2,805	2,811	4,760	1,410	2,250
2007	117	192	1,601	2,847	2,875	4,877	1,509	2,370
2008	136	230	1,664	2,940	3,017	5,076	1,677	2,612
2009	165	274	1,607	2,862	3,104	5,142	1,832	2,823
2010	165	261	1,628	2,893	3,146	5,247	1,982	3,048
2011	171	283	1,688	2,977	3,225	5,375	1,997	3,104
2012	183	287	1,682	2,985	3,226	5,408	2,110	3,331
2013	191	313	1,717	3,049	3,301	5,482	2,197	3,443

주 : HS 10단위 기준 품목수를 기준으로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와 같이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FTA 체결의 효과가 100%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FTA가 발효되더라도 해당 수입중간재가 역내산임이 입증되어야만 관세 인하 및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전체 수입액 가운데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중간재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입활용률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앞서 살펴본 수입규모의 확대와 중간재 품목의 다변화에 FTA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활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FTA를 포함한 특혜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품의 전체 수입액 중에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율로 정의되며, [그림 2]에 각 FTA별 중간재에 대한 수입활용률의 측정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각 FTA별 이행과정에서의 변화를 파악해볼 수 있는데, 한-인도 CEPA의 경우 이행기간이 3년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FTA의 경우 충분한 이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한-칠레 FTA의 경우 2013년 기준 99.4%의 활용률을 기록하는 등 수입중간재 품목이 특혜대상 품목일 경우 거의 모든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EFTA FTA의 경우 2012년 들어 68.8%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기록한 이후 2013년에는 37.1%로 낮아지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ASEAN FTA의 경우에는 2007년 5.4%로 가장 낮은 활용률에서 출발하였으나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0년 이후 50%대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의 경우 현재까지 활용률이 이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한-인도 CEPA의 경우 이행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3년 기준으로 활용률이 약 61%를 기록하는 등 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對FTA별 중간재 수입활용률 추이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6]은 상기의 연도별 추이에서 벗어나 각 FTA별 발효 시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의 중간재 수입실적을 토대로 수입활용률을 측정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각 FTA별 포괄적인 성과를 비교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한-칠레 FTA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2013년 동안의 FTA 특혜대상 수입액이 약 191억 달러로, 이중 실제 특혜관세가 적용된 수입액은 약 149억 달러로 여타 FTA에 비해 가장 높은 78%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기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이전의 활용률이 저조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이행 기간 전체의 활용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EFTA, 한-ASEAN, 한-인도 등 나머지 3개의 FTA 모두 전체 이행기간의 수입실적을 토대로 집계된 활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한-인도 CEPA의 경우 이행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경우 48.2%의 활용률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향후 활용률의 변화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 표에는 특혜신청이 가능한 품목이나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에 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MFN 세율과 할당세율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관세율이 적용된 품목의 수입 규모 역시 함께 정리해두었다. 할당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반면 수입자는

특혜세율 적용이나 할당관세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이 인하되는 과정에서 할당세율보다 특혜세율이 높을 경우 할당세율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준비가 미흡한 경우 할당세율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EFTA를 제외한 칠레, ASEAN, 인도 등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비중이 미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칠레 FTA의 경우 특혜대상 수입액의 약 15.4%에 달하는 29.5억 달러, 한-ASEAN FTA의 경우 특혜대상 수입액의 약 21.0%인 312억 달러, 한-인도 CEPA의 경우 특혜대상 수입액의 약 14.4%인 10.1억 달러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의 경우 특혜대상 수입액의 약 46.2%에 달하는 80.5억 달러에 MFN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 FTA의 전반적인 활용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MFN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규모가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백만 달러, %

■ 표6
한국의 對FTA별
전체 이행기간의
수입활용률

구분	한-칠레 (2004~13)	한-EFTA (2006~13)	한-ASEAN (2007~13)	한-인도 (2010~13)
MFN 세율 적용 수입액	846.0	8,047.3	32,490.5	1,968.0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14,918.2	8,192.2	69,189.6	3,371.4
할당관세 적용 수입액(A)	2,952.1	621.7	31,208.7	1,008.0
특혜대상 수입액(B)	19,058.5	17,335.2	148,669.3	6,997.2
중간재 전체 수입	34,612.7	20,894.7	252,425.0	23,436.7
활용률(A/B)	78.3	47.3	46.5	48.2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04

마치며

지금까지 칠레, EFTA, ASEAN, 인도 등 분석대상에 포함된 FTA 체결상대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FTA 체결 이후 중간재 수입의 변화 양상을 비롯하여 수입 중간재 품목의 다변화 정도, 그리고 FTA의 활용률 분석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FTA 확산에 따른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한-칠레 FTA를 제외한 EFTA, ASEAN, 인도 등 3개의 FTA의 경우 전체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본다면 중간재 수입실적의 절반 정도에 실제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이후 양 당사국 간의 교역 확대 및 품목 다변화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한-ASEAN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최근 활용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중간재 품목별 공급 현황 및 국내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도 등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토대로 특혜관세 활용률 개선의 여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인도 CEPA의 경우 연차별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향후 활용률 개선의 여지가 높은 반면, 중간재 전체 수입액 규모에서 특혜대상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재가 최종재보다 국내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욱 크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감안한다면 중간재의 수입활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각 FTA별, 그리고 산업별 보다 미시적인 접근에서 기업들이 FTA 특혜신청을 포기하는 원인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한-EU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경우 이행기간이 확보된 이후 활용률에 대한 추가 고려를 포함하여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비용 추정연구 등이 지속되어 FTA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수출입 업체의 대응 전략

이승열 법무법인 화우



01 개요

FTA 원산지검증

FTA 원산지검증이란 FTA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 기준 · 원산지증명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하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특혜관세 적용배제 등)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FTA 원산지검증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FTA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해당 협정별 세부적인 사항은 언급을 생략하며 크게 수입국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이 가능한 간접검증으로 구분되는 정도만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02

FTA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자
대응의 문제점**수출입 업체의 FTA 원산지검증 시 문제점**

수출입 업체의 FTA 원산지검증업무 대응 용역을 수행하다보면, 상당수의 수출입자가 FTA 원산지검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소 안이한 대응으로 준비하다 뒤늦게 입증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원산지 부인에 따른 특혜관세 추징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에, FTA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자의 대응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수출입자가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기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상대방과의 정확한 원산지검증 자료협조(의사소통) 부족

수출입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시 관세당국은 우선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통상 30일의 관련 입증서류의 제출기한이 주어집니다(자료 등의 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입증을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동 물품의 수입자는 수출자 등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원산지 입증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상이한 국가에 위치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양질의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 30일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대응 업무를 제공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과 달리 외국기업(특히 수출자의 경우)은 관련 자료작성 및 준비 등에 있어 내부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당국으로부터 서면조사 공문을 수령한 업체는 거래상대방(수출자 등)에게 원산지검증을 위한 소명자료를 요청함에 있어 시간적 압박을 느끼게 됨과 동시에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수출자 등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지부터 준비과정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자 등에게 필요한 요청자료를 정확하게 지시하지 아니하여 30일의 서류제출기한 동안 특별한 자료준비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출기한이 임박하여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관세당국에 제출하게 되면, 이 자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함에 있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검증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산지검증을 위한 입증자료의 준비 방법의 미숙

상당수의 수출입자가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소명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관세당국에 제출하지만, 대부분 해당 자료를 검토해 보면 관련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자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검증은 해당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해당 입증자료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준비되어야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의 입증자료 준비 방법은 철저하게 “해당분야의 초보자에게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정확한 규정 등의 미숙지

실제로 한 수입업체가 FTA 원산지검증 서면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수출자에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자료를 요청하였고, 수출자로부터 각 수입제품별 BOM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제공한 BOM 중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PSR)인 4단위 세번변경(CTH)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미국산이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수출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물품이 NAFTA 협정 하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국산이므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미국산이라 회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동일한 품목 A에 대해 한-미 FTA와 NAFTA가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FTA와 동일한 기준으로 미국산임을 판정하여 한-미 FTA에 적용한 케이스



품목 A의 원산지결정기준 | 한-미 FTA :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미국산 원산지 불충족! / NAFTA :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미국산 원산지 충족

이처럼 수출자 중 상당수의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 및 해당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뿐만 아니라 FTA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역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발급방법 및 요령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관세당국의 오해와 그로 인한 특혜 관세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산지검증에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

수출입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은 사전에 다양한 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사유에 기초하여 검증에 착수합니다.

실제 수출입업체의 원산지검증 대응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수출입자 중에 “거래상대방과의 오랜 계약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수출자는 믿을 만하므로 수출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는 100% 신뢰성이 있다.” 또는 “수출국의 사회 특성상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 수출자는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없고 처벌을 받으므로 원산지 제품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담당자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산지검증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즉, 객관적인 원산지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관세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임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FTA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자의
대응방안**전문가의 섭외를 통한 정확한 원산지검증 전략 수립**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조사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의 경우 효과적인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분야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정확한 요청자료 파악 가능

우선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요구하여야 할 관련자료의 내용, 구성 및 형식 등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요청은 자료준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준비 시간을 단축하여 서류 제출기한 내에 양질의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게 합니다.

수출입자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원산지검증의 이해도 향상

FTA 협정 및 이행특례법령 상의 정확한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등 수출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혹은 실무적 상황에 있어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은 양 거래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키고, 필요 시 신속한 결과물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HS),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상의 정확성 확인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입증자료 검토 시 해당 원재료 등의 품목분류(HS)의 정확성, 협정상 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 및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상의 오류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정확한 입증자료의 제공이 가능

관세당국에서 어떠한 형태의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지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증자료로 준비·가공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게 때문입니다.

수출자와의 매매계약 시 원산지검증 관련 세부조항 삽입

원산지검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등을 추정당하는 경우 그 1차적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반드시 수출자와의 매매계약서상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있는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가 원산지 입증자료 소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불이행 시에는 양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원산지 입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적용혜택을 부인 당할 경우 그 책임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어떠한 비율로 부담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설정을 통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원산지 관련 전담자 또는 전담조직 운영

효과적인 FTA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자 또는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FTA 원산지검증을 받은 수출입업체 중 상당수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FTA 전담자가 아닌 구매, 회계부서의 담당자였는데, 이들은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원산지검증을 대응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가하는 FTA활용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전담관리자 또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하나의 위험관리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원산지관리 실태 점검 실시

주기적으로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을 위한 모의검증을 실시하여 FTA 원산지검증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자의 협조가 가능할 경우 수출물품의 원재료 공급선 또는 기술개발에 따른 원재료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 역시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하나의 위험관리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04

결 어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원산지검증 대응 용역을 수행하면서 원산지검증을 받는 업체가 느끼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은 현재 기업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으며, 어떠한 대응 방안은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산지검증은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소명하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여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경우가 원산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나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절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수출입자는 원산지검증 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수출자 등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는 양질의 관련 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세당국의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FTA 활용 관리 방안으로 원산지 전담조직 등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FTA 원산지 관리방안을 구축한다면 기업이 향유할 수 있는 FTA 이익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속에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한 대응으로 FTA 시대의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 방안

오수교 전문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01 개요

각종 FTA에서 정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상품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방법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기관발급은 세관인 국가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EU FTA협정과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라도 6,000유로를 초과하여 EU회원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수출자로 인증 받은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³⁾와 품목별 인증수출자⁴⁾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경우

2) 한·EU FTA 협정문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1항에 의하여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다음 각 호 요건 생략).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다음 각 호 요건 생략).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지정받은 품목(HS 6단위 기준)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이나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포털 사이트(UNI-PASS)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세관은 인증신청서에 근거하여 원산지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심사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는 부분은 신청물품과 원재료 명세서(BOM)상에 표시된 재료의 품목번호와 수출물품의 부가가치 비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이다.

특히 이러한 오류는 수입국 세관당국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때에나, 사후 검증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02 품목분류 오류발생 현황

오른쪽 [표1]은 EU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본부세관·인천본부세관·대구본부세관에 신청된 물품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740건을 모집단으로 하여 신청서상의 신청물품의 품목번호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려서 분석한 자료이다.

우선 검토대상 모집단의 유형은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관세율표 제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가 256건(14.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87건 오류발생 가능 물품으로 확인, 오류비율이 10.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관세율표 2단위 류별(chapter)로 살펴보면 제60류가 28건(1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제54류(인조필라멘트,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21건(11%)·제85류 19건(10%)·제39류 18건(10%)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를 물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속하는 제54류·제59류·제60류·제61류가 63건을 차지하여 전체에서 40.6%를 이루고 있어 가장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제11부의 품목분류규정과 4단위 호나 6단위 호의 분류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소량 다품종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특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란 품목분류결정에 필수적인 요소인 품명과 함께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명이나 원재료별 구성 비율(함유량), 규격, 용도, 기능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어 신청서만으로는 확정된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신청서상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도 품목 분류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품을 말한다.

■ 표1
관세율표
부(Section)별
신청건수에 따른
오류비율 비교표

단위 : 건, %

신청 부	제11부	제16부	제7부	제15부	제6부	제18부
신청건수	422(24.3%)	421(24.2%)	212(12.2%)	195(11.2%)	168(9.7%)	72(4.1%)
오류건수	76	33	22	14	9	3
오류비율	40.6	17.6	11.8	7.5	4.8	1.6

신청 부	제20부	제17부	제4부	제13부	기타	합계
신청건수	61(3.5%)	60(3.4%)	49(2.8%)	20(1.1%)	60(3.4%)	1,740
오류건수	5	10	4	-	11	187
오류비율	2.7	5.3	2.1	-	5.9	100.0

※ 이 통계는 신청건수가 20건 이상인 물품을 대상으로 함

■ 표1-1 제11부 류(Chapter)별 비교표

단위 : 건, %

신청 류	제60류	제54류	제61류	제59류	제62류	제55류	제58류	기타	합계
신청건수	139	118	43	29	21	17	16	39	422
오류건수	28	21	8	6	2	3	2	6	76
오류비율	20.1	17.8	18.6	20.7	9.5	17.6	12.5	15.4	18.0

■ 표1-2 제16부 류(Chapter)별 오류비율 비교표

단위 : 건. %

신청 류	제84류	제85류	합계
신청건수	256	165	421
오류건수	14	19	33
오류비율	5.5	11.5	7.8

■ 표1-3 제7부 류(Chapter)별 오류비율 비교표

단위 : 건. %

신청 류	제39류	제40류	합계
신청건수	195	17	212
오류건수	18	4	22
오류비율	9.2	23.5	10.4

03

품목분류 오류발생 원인과 진단

신청건수가 많고 오류발생 가능빈도가 높은 조제식료품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비금속(非金屬)과 그 제품 · 기계류와 전기기기(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6개 그룹에 속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제식료품

관세율표에서 조제식료품은 제4부에 속하는 제16류부터 제21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이 조제식료품은 일반적으로 제1부나 제2부에 속하는 동물성 생산품(예: 육,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등)이나 식물성 생산품(예: 채소, 과실이나 견과류, 커피 · 차 · 마태와 향신료, 곡물 등)을 기본재료로 하여 조리하거나 조미한 것 등이 분류된다. 물론 제4부에 속한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1부나 제2부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것만 분류된다는 것과 조제방법이나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해당 류나 호가 달라진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Whole Black
Garlic

• 물품설명 : 원형의 통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발효·숙성·건조시켜 만든 흑 마늘(그림1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2001.90	HS 2005.9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나, 이 물품을 식초나 초산의 첨가 없이 원형의 통마늘만을 발효·숙성·건조시킨 것이므로 이 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2005.99호로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마늘은 식용 채소로 신선·냉장·냉동·염장이나 염수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 건조(가루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한 것은 제7류에 분류되나 식용에 적합하도록 그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것은 대부분 제20류로 분류
- 다만, 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마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마늘과육 속에 함유된 초산이 100분의 0.5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하여 분류된다는 것에 유의

②
Roasted seaweed
(laver)

• 물품설명 : 김에 식용유를 바르고 소금(정제염)을 뿌리고 구운 것을 소매 포장한 것(그림2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2008.99	HS 2106.9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조제한 김을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는 조제한 식용 해초류(김)을 제2106.90-4010호에 열거하고 있음
- 따라서 조미한 김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2109.90호로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조제하지 않은 해초류는 “식용에 적합한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되어 제1212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냉동·건조·분쇄한 정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장 처리한 것을 분류하고 그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것은 다른 곳에 분류
- EU에서는 제1212호의 저장 방법을 벗어난 것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것이라 하여 제2008호로 분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FTA 협약 당사국(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품목분류를 따라야 함. 물론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조정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품목분류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수입국의 품목분류를 존중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⁵⁾

5) 즉, FTA특혜원산지서를 발행할 때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의 품목분류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기재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림 1 마늘



신선마늘(제0703호)



흑 마늘(제2005호)

그림 2 김



건조 김(제1211호)



조미 김(제2106호)

※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며, 설명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님을 밝혀 둠(이하 그림도 같음)

플라스틱과 그 제품

관세율표에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은 제7부 제39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서는 우선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일차제품⁶⁾은 플라스틱의 종류(성분)에 따라 제309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분류하고, 이어서 웨이스트와 스크립, 반제품과 완제품을 제3915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 류에서 특히 플라스틱과 다른 재료의 물질과 혼합되거나 결합된 물품으로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에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물품은 결합된 재료나 물질(예: 고무·종이·방직용 섬유·금속 등)이 해당하는 류에 분류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더라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유념할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39류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종류를 예시하면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제16부의 제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 제17부의 항공기의 부분품이나 차량, 제90류의 제품(예: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제94류의 제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사인·조립식 건축물), 제95류의 제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이 있다.

6)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일차제품이란 “액체와 페이스트(pastes)[분산물(에멀션과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s)·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s)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Car Mount

- 물품설명 :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을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치대(그림3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3907.40	HS 3926.9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 수지 · 그 밖의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7.40호는 “폴리카보네이트[일차제품(primaryform)으로 한정한다]”가 해당
- 이 물품은 특정 형태로 만든 것이므로 일차제품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3926.90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이 거치대는 카메라용 삼각대와 같이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부속품에 해당하고, 이들과 직접 결합되거나 작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분품은 아님
- 내비게이션의 부분품은 제8529.90호에, 스마트폰의 부분품은 제8517.70호에 분류하는데, 이 거치대는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 재료의 제품이 해당하는 호(제3926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②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film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로 만든 얇고 투명한 필름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3919.90	HS 3920.62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물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
 - 따라서 이 물품은 접착력이 없는 PET필름으로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3919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3920.62호[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으로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제3919호에서 접착성이란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접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으로 한정
 - 또한 이 호에는 영구적인 접착성(permanently tacky)이 있는 평면 모양이므로 일시적인 접착성이 있는 포스트잇과 같은 물품은 이 호로 분류될 수 없으며, 평면 모양이 아닌 것은 주로 제3926호로 분류
 - 따라서 이와 같은 물품이 제3919호의 접착성 필름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한 면이나 양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하고 앞에서 언급한 정도의 접착력이 있어야 함

③ 칸 스톤

- 물품설명 : 석영가루나 알갱이(90%~93%)에 불포화폴리에스테르(7%~10%)를 혼합·응결·압착하여 판으로 건축 재료로 사용(일명 “인조 석”이라 함)(그림4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3920.63	HS 6810.19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

- 박이나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20.63호에는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중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이 분류
- 이 물품의 구성 재료를 살펴보면 불포화폴리에스테르가 전체중량의 7~10%의 비율로 투입되므로 플라스틱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중량의 90%~93%를 차지하는 석영가루나 알갱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플라스틱물질은 석영가루를 응집하는 결합제의 역할에 불과한 것임
 - 따라서 이 물품은 인조석제품⁷⁾이므로 통칙 제1호[제6810호의 용어 “시멘트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6810.19호로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인조석을 제6810호에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구성 재료의 함유량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플라스틱의 함유 중량이 많고 또한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될 수 있음

그림 3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거치대



제3926호

그림 4 칸 스톤(인조석)



제6810호

※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며, 설명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님을 밝혀 둠(이하 그림도 같음)

7) HS 해설서 제6810호에 따르면 “인조석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의 파편·알갱이나 가루를 석회·시멘트나 그 밖의 결합제(예:플라스틱)와 함께 응집시켜 제조된다.”라고 설명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관세율표에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제11부에 속하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11부의 물품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섬유·사(실)·직물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편물은 제60류에 속하는데 이들은 섬유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둘째는 특수사(실)와 특수직물로 제56류부터 제59류까지에 속한다. 끝으로 의류와 의류 부속품 및 그 밖의 제품을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섬유·사(실)·직물(제50류~제55류)

이들 물품을 분류할 때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물품인 경우에는 제11부 주 제2호에서 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분류하고,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인조섬유인 경우에는 섬유장이 긴 필라멘트(장섬유)로 만든 것은 제54류에, 섬유장이 짧은 필라멘트(단섬유)로 만든 것은 제55류에 분류한다. 또한 직조 방법(예: 평직이나 능직 등)이나 가공 여부(표백·염색이나 날염 등)와 면적당 중량 등에 따라 해당 호나 소호가 달리진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수사(실)와 특수직물(제56류~제59류)

이들 물품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사(실)와 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방법으로 방직하거나 직조한 것이 해당한다. 따라서 그 구분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그룹에 속한 것은 방직이나 직조방법(예: 펠트나 부직포) 또는 용도(예: 양탄자·공업용 제품)와 표면처리 여부 등에 따라 달리 분류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직물이나 편물(특수한 직물이나 편물을 포함한다)에 플라스틱이나 고무 또는 금속과 같은 다른 재료를 결합한 경우의 분류원칙에 관하여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구성 재료 중에서 어느 것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류와 의류 부속품 및 그 밖의 제품(제61류~제63류)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61류에 분류하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이외의 직물이나 부직포 등으로 만든 것은 제62류에 분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다만, 브래지어나 거들과 같은 물품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라도 제6212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의 분류는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 여부와 의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같은 의류라 하더라도 유아용 의류를 먼저 분류하고 이어서 도포·피복·침투한 직물(편물)로 만든 의류를 다음에 분류하고, 이어서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① Sanitary pad

- 물품설명 : 위생용 냅킨으로, 부직포로 만든 안쪽 층과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흡수층과 분비액이 누수 되지 않도록 방해주는 플라스틱 부분으로 구성된 일회용 제품(그림5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5603.91	HS 9619.0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하거나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원단상태의 부직포를 포함하나, 이와 같은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만든 제품(예: 위생용 제품)은 이 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 유아용 냅킨·냅킨 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또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므로 종이나 부직포 등으로 만든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호에 포함하므로 통칙 제1호에 근거하여 제9619.00호로 분류

②

Poly/Tensel-G
50/50 Ingrey

• 물품설명 : 폴리에스터(50%)와 텐셀(50%)⁸⁾로 구성된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사로 직조한 직물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5515.91	HS 5515.91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이 분류되며, 제5516호에는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직물”을 분류·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의 재료를 살펴보면 폴리에스터는 합성 섬유에 해당하고, 텐셀은 재생·반합성 섬유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같은 양으로 구성되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음
- 따라서 이 물품은 통칙 제1호(제5516호의 용어와 11부 주 제2호)와 제6호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로 제5516.91호에 분류

③

PP Composite
sheet(PP board)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시트(87%)에 부직포(17%)를 도포한 물품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5703.20	HS 3921.19	

8) tensel은 목재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섬유로 관세율표의 분류상 재생·반합성 섬유에 해당하고, “라이오셀(lyocell)”이라고도 함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터프트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
- 이 물품은 두꺼움·단단함·강도를 고려할 때에 양탄리나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상 터프트 공정도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제5703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부직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7에 불과하여 부직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5603호에도 분류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이 물품은 플라스틱시트에 그 밖의 재료를 보강한 물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3921.19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터프트(turfed)’란 직물기포(基布)에 파일을 구성하는 모사(毛絲)나 합성 섬유사를 여러 개의 비늘로 지수해서 만들고, 뒷면에 고무나 라텍스계열의 도료를 도포해서 파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포에 적당한 견고성을 부여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이 호의 제5703호의 물품은 두꺼움·단단함·강도가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제5802호의 터프트한 직물과 구별

④

Polyester tricot bonded with polyester knit

- 물품설명 : 경편직물(전체 중량의 100분의 60)과 파일편물(전체 중량의 100분의 40)을 폴리우레탄수지로 겹 부친 것(그림6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5903.20	HS 6005.32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5903호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폴리우레탄수지로 이와 같이 처리한 것은 소호 제5903.20호에 속함
- 그러나 이 물품은 접착성의 폴리우레탄수지를 사용하여 경편직물(제6005

호)과 파일편물(제6001호)을 겹부친 것이므로 제5903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HS 해설서 제5903호에서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 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단면에 플라스틱 층이 보이지 않는 직물은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

- HS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따르면 “둘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구성된 물품(제581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봉제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호에 따르도록” 규정
- 따라서 이 물품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경편직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칙 제3호나목과 통칙 제6호에 따라 제6005.32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겹 붙인 직물류와 제5811호의 원단상태의 누비물품과 구분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제5811호의 물품(그림7 참조)은 원단 상태로서 첫째로는 한 층의 직물류(직물 · 편물이나 부직포)와 한 층의 패딩재료(예: 웨브형상의 방직용 섬유 · 펠트 · 발포성 플라스틱이나 발포성 고무 등)로 구성된 것. 다음에는 한 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 층의 직물류(직물 · 편물이나 부직포 또는 이들의 결합물)로 구성

⑤

Cotton 45%,
Polyester 39%,
Nylon 16% plain mixed
woven fabric coated
with wax

- 물품설명 : 면 45%, 폴리에스테르 39%, 나일론 16%로 직조된 염색직물에 왁스 코팅한 것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5903.90	HS 5907.0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5903호는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

※ 이 물품의 코팅에 사용된 왁스는 제39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플라스

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59류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에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질에 따라 해당 호를 달리 하고 있는바,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제5903호에, 고무인 경우에는 제5906호에, 그 밖의 물질(예: 타르나 역청물질·왁스·기름이나 건성유 등)인 경우에는 제5907에 각각 분류

–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하며, HS 해설서 제5907호에서도 왁스⁹⁾를 도포한 직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5907.00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이와 같은 혼방직물은 면 45% 보다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의 합이 55%로 그 중량이 많으므로(최대 중량을 차지) 합성섬유로 제54류나 제55류에 분류하나, 이들 직물에 플라스틱이나 고무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질(예: 왁스)을 도포·피복·적층한 경우에는 제59류의 해당 호로 분류

⑥ Men's Jacket

• 물품설명 : 왁스코팅한 면직물로 만든 남성용 재킷(그림8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6203.32	HS 6210.2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자나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32호에는 면으로 만든 재킷과 블레이저가 해당

9) 관세율표에서 왁스(wax)는 원재료나 조제방법에 따라 동식물성 왁스(제1521호), 광물성 왁스(제2712호), 인조왁스나 조제왁스(제3404호)로 각각 구분

- 반면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62류 주 제5호에서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세부적인 사항은 앞의 ⑤항 물품 내용 참조)
- 이 재킷은 제5907호에 해당하는 직물로 만든 것이므로 통칙 제1호(제62류 주 제5호와 제5907호의 용어)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6210.20호로 분류
 - ※ 왁스 등으로 도포한 직물이 아닌 것으로 만든 남성용 재킷은 제6203호에 분류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62류에는 직물이나 부직포 등으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아닌 것으로 만든 의류를 분류(단, 제6212호의 브래지어나 거들과 같은 제품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도 포함)
- 제62류에 속한 의류는 분류하는 순서가 있는데 우선 유아용 의류(제6209호)를 가장 먼저 분류하고, 이어서 제6210호에 속한 의류를 분류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제6201호부터 제6208호까지와 제6211호에 속한 의류를 분류하는데 이들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여부와 의류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제61류에 속한 의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

그림 5 위생용 냅킨



제9619호

그림 6 겹 붙인 직물



제6005호

그림 7 누빈 제품



제5811호

그림 8 남성용 재킷



제6210호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일반적으로 금속은 은·금·백금과 같은 귀금속(제71류)과 철·구리 등과 같은 비금속(卑金屬)으로 구분하고, 비금속은 철강과 비철(非鐵)금속으로 구분한다. 관세율표에서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은 제15부에 속한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3류까지에 분류한다. 제15부에서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된 합금인 경우에는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분류한다(제15부 주 제5호가목 참조).

또한 제15부에 속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물품이 특정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¹⁰⁾하더라도 그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용성 부분품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39류의 물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표2

범용성 부분품 일람표

제7307호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제7312호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제7315호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제7317호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인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제7318호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7320호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제8301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10) 다만, 철강으로 만든 체인의 부분품(제7315호)에는 이들 범용성 부분품을 포함한다.

제8302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제8306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거울 ※ 제8306호에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은 범용성 부분품이 아님
제8308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팅글(spangle)
제8310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①
Bracket

• 물품설명 : 알루미늄으로 만든 브래킷(bracket)(그림9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7616.99	HS 8302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그 종류에는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리벳·와셔와 체인 등을 포함
- 제83류 주 제2호 따르면 “앞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브래킷(bracket)”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물품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더라도 제15부 주 제2호와 제8302호의 용어에 따라 제7616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통

칙 제1호(제15부 주 제2호와 제8302호의 용어)와 통칙 제6호에 근거하여 제8302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제15부 주 제2호에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물품에 적합하게 만들어 그 물품에만 전용하더라도 제15부에 속한 호에 분류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범용성 부분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②
Blade for
shearst

- 물품설명 : 전지가위용(shears)의 날로 철강으로 만든 것(그림10 참조하되, 이 물품은 완성된 전지가위가 아니라 그 날만 해당)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8213.00	HS 8201.6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8213호에는 “가위 · 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가위의 날도 포함된다(완성품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반면에 제8201호에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 · 삽 · 곡괭이 · 픽스(picks) · 팽이 · 포크와 쇠스랑, 도끼 · 빌훅(bill hooks)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지위 등“을 분류하며, HS 해설서 제8201호에서 “손가락 구멍을 갖춘 가위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8213호에 분류된다고 설명
 - ※ 손가락 구멍을 갖춘 전지가위는 제8213호에, 손가락 구멍을 갖추지 않은 전지가위는 제8201호에 각각 분류되므로 손가락 구멍이 있는지가 분류의 핵심사항
- 또한 제82류 주 제2호에 따르면 “제8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지가위에 사용하는 날[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해당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

- 이 물품은 손가락 구멍을 갖추지 않은 전지가위에 사용하는 날이므로 통칙 제1호(제8301호의 용어와 제82류 주 제2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8201,60호로 분류

그림 9 알루미늄 브래킷



제8302호

그림 10 전지가위



전지가위(제8301호)



전지가위(제8213호)

기계류 ·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등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 ·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 음성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을 제84류와 제85류에 나눠 분류한다. 제16부는 비록 2개 류에 불과하지만 해당 호는 제84류에 86개의 호와 제85류에 48개의 호로 총 132개로 되어 있어 전체 1,224개의 호에서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 기능단위 기계, 다용도기계, 불완전미완성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관한 것이 특히 그렇다. 그 중에서도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제16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라도 관세율표의 특정한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거나, 제16부 · 제84류 · 제85류의 해당 주에서 제16부 · 제84류 · 제8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6부에 분류할 수 없다.

특히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 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에 따라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 있다.

①
Filter

- 물품설명 : Polypropylene 섬유로 만든 액체 여과용 필터(식품 공업용)로서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한 상태(그림11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8421.99	HS 5911.9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며, 이들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특별히 열거된 호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도 같은 호에 포함
- 그러나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마목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은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
- 이런 규정에 따라 액체여과용 기기에 직접 장착하여 전용할 수 있도록 카트리지형태 등으로 된 경우에는 제8421호에 분류되나, 단순히 재료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만 한 경우에는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 따라서 이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공업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1호마목과 제5911호의 용어)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5911.90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이와 같이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에, 종이로 만든 것은 제4812호나 제48231호 등에, 세라믹으로 만든 것은 제6909호에 각각 분류

②
Filter cartridge
for gas masks

- 물품설명 : 가스마스크에 부착되어 오염된 공기를 여과·흡수시키는 역할 수행하는 정화통(그림12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8421.99	HS 9020.0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며, 이들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특별히 열거된 호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도 같은 호에 포함
- 그러나, 유독가스의 여과나 청정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 마스크는 제9020호에 분류되며, 이 정화통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으며, 가스마스크는 정화통과 결합 없이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정화통은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가스마스크에 전용되어지는 부분품에 속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규정

- ① 우선적으로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
- ② 다음에는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
- ③ 끝으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이 물품은 가스마스크의 부분품이므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호와 제9020호의 용어)와 제6호에 따라 제9020.00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이 물품은 가스 마스크에 전용되는 것이므로 제8421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 품목분류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

현된 호에 우선해서 분류토록 통칙 제3호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정화통을 분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표현된 “액체나 기체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기기”보다는 “가스마스크¹¹⁾”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해당

그림 11 필터



여과용 필터(제5911호)



원통형필터카트리지(제8421호)

그림 12 정화통



제9020호

③ 전기 정미기기

• 물품설명 : 쌀을 현미나 백미 등으로 도정해 주는 곡물 가공 기계로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무게는 7.2킬로그램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8509.80	HS 8437.8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85류 주 제3호에 따르면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로써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는 제8509호로 분류토록 규정

11) 가스마스크란 먼지·유독증기·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장소(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HS 해설서 제8509호에 따르면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¹²⁾’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이나 용적 등의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한다. 이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또한 “구조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예: 식품공업용)는 제84류에 분류된다”라고 언급
-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물품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로써 전동기를 갖춘 전기기이라 하더라도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이나 용적 등을 고려할 때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관세율표 제8437호에는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8437.80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물론, 이러한 기계가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전기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8509호로 분류
 - 다만,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라도 팬이나 팬을 결합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원심식 식류건조기(제8421호)·접시세척기(제8422호)·가정용 세탁기(제8450호)·롤 기계(rolling machines)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재봉기(제8452호)·전기가위(제8467호)나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음

12) WCO 제25차 HS 위원회에서 domestic(가정용)과 household(가정형)의 두 용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그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두 용어를 바꾸어 써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세율표에서도 이를 구분 없이 가정용이나 가정형이라 표기한다. 참고적으로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의 영명은 'household washing machines'이다.

④

Drill Bit

- 물품설명 : 금속탄화물이나 서멧으로 만든 수지식 드릴링용 공구(그림13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8467.99	HS 8207.5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시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이들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특별히 열거된 호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도 같은 호에 포함
- 제16부 주 제1호차목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 제8467호에서도 제82류의 공구는 제외토록 설명. 따라서 특정한 수지식 공구에 전용되더라도 제8467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물품은 드릴링용 공구이므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1호차목과 제8207호의 용어)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8207.50호로 분류

그림 13 드릴링용 공구



차량(자동차)

관세율표에서 육상을 주행하는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류에 분류하며, 이 차량은 매우 많은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라도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열거(예: 제4011호의 공기타이어, 제7009호의 백미러 등)되어 있거나 관련 주의 규정에 따라 제87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 제9029호의 속도계 등)에는 제87류에 분류할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87류에 속한 부분품이나 부속품과 다른 류에 속한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① Exhaust manifold

• 물품설명 : 불꽃 점화식의 엔진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배기 매니폴드 (그림14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8708.92	HS 8409.91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나, 제17부 주 제1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HS 해설서 제8409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

- 따라서 이 물품은 불꽃 점화식의 엔진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배기 매니폴드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8409.91-1000호에 분류

그림 14 배기 매니폴드(제8409호)



② Bracket

• 물품설명 : 자동차용 고무호스와 파이프에 결속되어 차체에 부착되는 철강으로 만든 브래킷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8708.99	HS 8302.30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나, 제17부 주 제1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

※ 범용성 부분품 중에서 관세율표 제83류에 속한 것은 “제8301호 · 제8302호 · 제8308호 · 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 해당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 ·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문 · 계단 · 창 · 차일구 · 차체 · 마구 · 트렁크 · 장 ·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

※ HS 해설서 제8302호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와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나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신청물품은 자동차 고무호스와 파이프에 결속되어 차체에 부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브래킷¹³⁾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8302.30호에 분류

③ Air intake hose

- 물품설명 : 에어클리너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엔진으로 유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가황한 고무로 만든 호스(그림15 참조)

- 오류내용

신청품목번호	정정품목번호	비고
HS 8708.99	HS 4009.11	

- 분류근거와 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
- HS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C)항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제17부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3) 차체·엔진·발판·축전지나 연료탱크 등에 사용하는 것과 변회판용의 브래킷은 차량용의 부분품으로 제8708호에 분류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조인트(joints)·엘보(elbows)·플랜지(flanges) 등 연결구가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며, 조인트(joints)·엘보(elbows)·플랜지(flanges) 등 연결구가 부착된 경우라도 관·파이프·호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야 함
- 따라서 이 물품은 고무로 만든 호스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제4009호의 용어)와 제6호에 근거하여 제4009.11호에 분류

• 기타 참고사항

- 다른 기계적인 구성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관·파이프·호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고, 차량용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708호에 분류될 수 있음
- 물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호스라 하더라도 다른 재료로 만든 경우에는 각각 구성 재료에 따라 달리 분류된다는 것도 유념(예: 플라스틱은 제3917호, 방직용 섬유재료는 제5909호)

그림 15 제4009호



04 결론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나 형식에 맞춰 원산지물품 인지를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수출물품이나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해당 품목번호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결정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수출입물품이 역내가치비중(일명 “부가가치”)에 따르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수입금액과 공장도가격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품목분류의 관점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상의 품목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실무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하거나 관심 있게 살펴 볼 중요 내용에 대하여 신청서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관세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수출입업자가 다종다양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바르게 결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수출입업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물품이 정해져 있고 그 물품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품목분류의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자기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이라도 그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의 ‘HS 정보시스템’이나 국제원산지정보원의 ‘FTA-PASS’를 이용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관의 검증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FTA 특혜세율 적용과 사후 검증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품목분류는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세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상에 품명과 원재료명이나 원재료별 구성비율(함유량), 규격, 용도, 기능 등이 관세율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자세히 기재된다면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며, 본래의 인증심사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FTA특혜세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길 기대한다.

2014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8월 관세청이 개최한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수상작 일부를 소개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FTA 활용지원 분야 : 대상(이화다이아몬드㈜)
중견기업의 롤모델, FTA 정착의 길 제시

수출업체 개요

설립일자	업종	'13년 매출액(수출액, 비중)	직원 수	주요 생산물품
1975.1.22	공구제조업	215,288백만원(124,723천\$, 61%)	729명	다이아몬드공구

- 同社は 다이아몬드공구만을 38년간 전문 연구제조하여 80여개 국으로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적극적인 FTA활용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구전문기업으로 지속 성장
- 同社の 제품은 반도체, 태양광, 자동차, 전기, 항공기, 건설 산업 등 피삭재 가공에 필수적인 공구로서 축적된 기술력과 특허* 출원된 노하우 ▶ 고품질 전략화로 경쟁국의 저가제품과 차별화

*특허 : 242건(해외:123건), 신규 등록중 : 103건

다이아몬드공구 사용분야



● 수출국 현황

'13년 수출 대비 국가별 점유율	적용 가능한 FTA	주요 거래처
<p>기타 39% EU 42% 미국 15% 인도 2% 아세안 2%</p>	EU, 미국, EFTA, 아세안 인도, 터키, 페루, 칠레	삼성, 하이닉스, 애플, 현대, 도요타, GM, 포드, BOSCH, HILTI 등 세계적 기업

활용사례

FTA 활용 前

- 同社의 다이아몬드공구는 '0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화 상품으로 선정 받은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들어 저가의 중국제품이 EU 등 주요 시장에서 밀려들면서 가격경쟁이 격화되는 현상
 -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이 점차 기술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품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대두
- 對EU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42%를 차지하는 同社는 '11년 한-EU FTA를 선점하여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발생
 - 한편, FTA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족으로 활용에 매우 소극적이었기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EU FTA'는 큰 부담이 되었고 오히려 risk가 될 수 있는 상황

한-EU FTA 활용 과정



① 한-EFTA FTA 관련 검증을 받다

- 실질 검증으로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인식
 - '11년초 한-EFTA FTA 관련하여 스위스세관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인천세관의 원산지 검증을 받게 됨(다행히 원산지 KR 판정) → 이때 실제적인 FTA 검증을 계기로 구체적인 원산지관리 및 판정에 대해 이해
- 세관의 원산지 상담을 통한 FTA 활용기반 마련
 - 검증완료 후 본격적인 한-EU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FTA협정문 및 인증수출자 규정에 대해 인천세관과 상담

②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한-EU FTA 활용 시 관세혜택 확인

HS	적용협정	원산지결정기준	관세혜택	
			기준세율	협정세율
6804.21 외 3개	한-EU FTA	CTH	1.7~2.7%	0%

-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전산화 구축 시작
 - 수입업체의 C/O 요청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ERP(SAP)에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전산화 구축 시작
 -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의무 이행을 위해 전자적 보관
-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11.7.28)

- 인천세관과 FTA 종합컨설팅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 수출입통관실무 경력자를 FTA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세관과 소통
 - FTA 정부지원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연 6회이상 FTA 교육 참여
- 자체적인 FTA관리시스템 개발 완료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13.8.22)

③ 협력업체까지 관리하는 SYSTEM化 완료

- FTA전담관리자 운용으로 사내 및 협력사 등과 업무협조
 - 생산, 영업 외 전문 관리부서를 두는 것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형편이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5년 이상 수출입통관실무를 담당한 사내 경력직원을 FTA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사내 및 협력사 관리
- FTA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맞춤형 내부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
 - 많은 외부교육을 전담 소화하여 FTA 전문성 극대화
 - 회사 시스템과 제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FTA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직원 및 협력사 수시 교육
- 자체 ERP(SAP)에 FTA협정별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행 시스템 구축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변경으로 자율발급 가능

활용성과

C/O 자율발급	정량효과		정성효과
	수출증가	일자리 창출	
<p>C/O 자율발급</p> <p>2% 발표 전 100% 발표 후</p> <p>한 EU 100%활용 ▼ FTA활용 선점</p>	<p>수출액(만불)</p> <p>4,883 발표 전 16,795 발표 후</p> <p>연평균 15% 증가 ▼ 가격 경쟁력 제고</p>	<p>직원</p> <p>574 발표 전 729 발표 후</p> <p>155명 고용창출 ▼ 고용창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 획득으로 한국산 신뢰도 증가 - 협력사에 대한 FTA교육 등 네트워크 확대

2013년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자율발급 100%로 FTA 선점

협정국 수출대비 원산지증명서 발행한 매출액 비중				
EU	미국	인도	아세안	기타 *EFTA, 터키, 페루, 칠레
100%	100%	50%	38%	100%

- 수출하는 물량 96%(EU 42% > 기타 39% > 미국 15%)를 차지하는 협정국에 대하여 100% 원산지증명서 자율발행으로 FTA 선점효과

한-EU FTA('11.07.1.발효 이후) 성과

구분	기간	수출액(만 불)	연평균	FTA활용
발효 전	'10.07.1.~'11.06.30.	4,883	5,598 ↑	-
발효 후	'11.07.1.~'14.06.30.	16,795		100%

- 발효 전 대비 수출금액 : 연 평균 15%정도 증가추세
 - 수입업체는 '11년 FTA발효 이후 해당품목의 관세 전면 철폐로 약 453만 불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기본세율 2.7% → 협정세율 0%)
- 수주물량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직원 수 : 574명 → 729명)

협력업체 등 FTA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준비로 다져진 경험을 토대로 원산지관리에 대한 자신감 향상
- 2013. 8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등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EU 업체의 당사 원산지증명서 및 한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증가

특 징

-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수출입통관 경력이 오랜 직원을 FTA 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전문가로 육성 → 효과적인 사내 및 협력사 FTA전문가로 활동
- 회사 시스템과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FTA관리 전산화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최소 인원으로 FTA활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지름길 역할

시사점

- 同社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이 외부교육을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ERP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FTA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FTA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SYSTEM化
- 이에 그치지 않고 협력사에 원산지관리업무 지원 및 FTA 교육 실시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으로서의 모범사례

FTA 활용지원 분야 : 최우수상(대구세관)

위기의 '섬유' FTA 파고 넘어 세계로 비상(飛上)

배 경

- 국내 섬유산업에서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비중은 업체수, 고용인원, 출하액, 수출액 모두 약 25%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섬유산지
-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지역 섬유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 EU, 미국, 터키 등 섬유 주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FTA 활용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
- 섬유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관세수준이 높아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 효과가 상당히 크지만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품목보다 까다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 한-미 FTA : yarn forward rule(원사규정)
- 과거에는 유행을 잘 활용했거나 염색기술 등 품질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지만, 후발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원가 무한 경쟁시대 돌입
 - FTA 활용을 통한 수입국 관세혜택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이 시급

FTA 활용

장애요인

- 어렵고 복잡한 섬유류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 원재료의 혼용률에 따라 품목분류 상이, 품목별 관세철폐 스케줄 상이
 - 한-미 FTA에서 원사는 대부분이 반드시 한국산이어야 하지만 편직물(6006.42)인 경우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10, 5403.31, 5403.32, 5403.41)는 비역내산을 사용해도 원산지를 인정
- 한-미 FTA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 미리 포기
 - * 한-미 FTA에서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에 따라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 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원산지 인정
- 지역 섬유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업체로 FTA 활용 및 특혜대상 신제품 개발 여력 절대적 부족

극복과정

- 지역 섬유업계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대구세관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지역 섬유업체 대상 FTA 실무교육 및 컨설팅 상시지원체제 가동
 - 주요 섬유제품 미국 품목번호 HS 해설서 발간(한-미 FTA)
- 경북 섬유생산기술활용 FTA 지원사업 실시(경상북도 등 예산 2억 유치) (대구세관 - 경상북도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FTA 체결국별 양허조건 분석, 관세 즉시 철폐 및 기간 단축 품목 발굴
 - FTA 활용 가능 섬유 업체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품목분류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컨설팅
 - 생산기술과 FTA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관세혜택 품목 신제품 연구·개발
 - 신제품 FTA 확산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및 비즈니스 지원

경북 섬유생산기술활용 FTA 지원사업 요약

구분	내용
실무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실무교육(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생산 제품 분석)
관세 혜택품목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혜택품목 발굴 관세혜택품목 개발 현장생산기술 지원
사업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센터 연계지원

활용효과

● 활용사례 요약

사례	기존 생산품목	개발품목(신제품)
Y사	합성필라멘트 직물(5407.52)	합성스테이플 직물(55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 합성필라멘트사(100%) - 한·미 FTA 세율 : 10.4%(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스테이플사(85%) • 합성필라멘트사(15%) - 한·미 FTA 세율 : 즉시철폐(0%) - 기존 생산품보다 고품질
T사	합성필라멘트 편직물(6006.32)	비스코스레이온 편직물(600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 합성필라멘트사(100%) - 한·미 FTA 세율 : 7%(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 비스코스레이온사(100%) - 한·미 FTA 세율 : 즉시철폐(0%) - 인체친화형 고품질
D사	합성필라멘트 직물(5407.69)	장/단섬유 교직물(551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 Poly(96%) / Span(4%) - 한·미 FTA 세율 : 10.4%(14년) - 터키 : 반덤핑관세부과(최고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 Poly(49%) / Modal(51%) - 한·미 FTA 세율 : 즉시철폐(0%) - 터키 : 반덤핑관세 제외

활용사례 상세내용

- 원사 혼용률 조정을 통한 특혜대상 품목 개발로 미국시장 진출(Y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존생산품)	합성필라멘트 직물 ※장섬유	5407.52	10년 단계적 철폐 (‘14년 10.4%)	- 원재료 상대적으로 저렴
		〈원재료〉 ① 합성필라멘트사(100%)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합성스테이플 직물 ※단섬유	5512.19	즉시철폐 (0%)	- 관세 즉시철폐 대상 (원가상승분 상쇄) - 품질 우수
		〈원재료〉 ① 합성스테이플섬유사(85%) ② 합성필라멘트사(15%)		

활용과정

-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 5407.52)은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세 → 미국시장 진출 애로
* 5407.52 : 관세 철폐 스케줄(‘10년, 2014년 10.4%)



- 주요 생산품과 유사한 물품 중 한-미 FTA 즉시 활용 가능 품목 개발 · 연구
-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율을 변환시켜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 신제품 개발(HS 5512.19)
* 5512.19 : 한-미 FTA 관세 철폐 스케줄(즉시철폐)
* 원재료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원재료	① 합성필라멘트사(100%)(장섬유)	① 합성스테이플섬유사(85%) (단섬유) ② 합성필라멘트사(15%)

활용효과

- 합성스테이플섬유사는 합성필라멘트섬유사보다 원가가 조금 높지만, 수출제품(직물)이 FTA 즉시 관세철폐 대상 품목이 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시켰으며, 합성필라멘트 직물보다 품질이 고급화되어 미국시장 공략 성공
❖ 미국 M사 연 12만 yards(48만 불) 계약 성사 등 향후 10년간 500만 불 이상 對美 수출 파급 효과 창출

- 한-미 FTA 예외원사를 사용하여 'yarn-forward rule' 극복(T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존생산품)	합성필라멘트 편직물	6006.32	10년 단계적 철폐 ('14년 7%)	- 원재료 상대적으로 저렴
		〈원재료〉 ① 합성필라멘트사 (100%)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비스코스 레이온 편직물	6006.42	즉시철폐 (0%)	- 관세 즉시철폐 대상 - 인체친화형 고품질 니트
		〈원재료〉 ① 비스코스 레이온사* (원산지 : CN)		

* 비스코스 레이온사

'비스코스 레이온사'는 펄프(나무)로부터 생산되는 천연원사로 촉감이 견고 아주 흡사하여 인간이 만든 비단(인견)으로 불리며, 천연섬유에 가까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땀흡수 및 통풍성이 뛰어나.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가공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사

활용과정

- 한-미 FTA 섬유품목은 'yarn-forward rule'이 일반적이어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산 원사를 사용해야 하며,
-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한-미 FTA 관세철폐 스케줄이 10년으로 관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고품질 품목 개발 시급



- 합성필라멘트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31, 32)는 한-미 FTA 'yarn-forward rule' 제외품목인 것을 확인(비원산지 원사 사용 가능), '비스코스 레이온사'를 수입하여 편직물품 생산

* 단, 합성스테이플 '비스코스 레이온사'(5510호)는 'yarn-forward rule' 적용

* 원재료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원재료	① 합성필라멘트사(원산지: KR)	① 비스코스레이온사(원산지: CN)

- 또한, '비스코스 레이온사'로 편직한 '6006.42' 품목은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

● 6006.42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품명	원산지결정기준
6006.42	편물 (재생·반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1호 내지 소호 제5503.20호, 소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상기 편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나,
- 붉은 박스안의 품목(원사)을 제외하고 있는 대표적인 'yarn-forward rule'
- 하지만, 5403.31,32의 '비스코스 레이온사'는 제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

활용효과

- 국내의 높은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입 '비스코스 레이온사'로 편직 및 염색하여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 대상 고품질 한국산 원단 개발(6006.42)
 - ❖ 한-미 FTA 맞춤형 신제품 개발이라는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미국시장 진출 성공 및 향후 10년간 300만 불 이상 수출 예상
- 한-전략적 신제품 개발로 특정시장(터키, 미국) 공략(D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존생산품)	FABRICS (PET직물)	5407.69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 40%)	- 관세철폐스케줄 : 10년('14년 10.4%)
		〈원재료〉 ① Poly(96%) ② Span(4%)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FABRICS (PET/Modal 교직물)	5516.22	반덤핑관세 없음	- 관세철폐스케줄 : 즉시철폐(0%)
		〈원재료〉 ① Poly(49%) ② Modal(51%)*		

* '모달'이란 재생섬유의 하나로, 만드는 방법과 기능은 비스코스 레이온과 거의 같으며,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섬유로 21세기 꿈의 섬유로 일컬어짐

활용과정

-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 5407.69)은 터키 수출 시 최고 40%의 반덤핑관세 부과
- 한-미 FTA에서도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
 - * 5407.69 : 관세 철폐 스케줄(10년, 2014년 10.4%)
 - 터키 및 미국시장 진출 애로



-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한-터키 및 한-미 FTA 즉시 활용 가능 신제품 개발 · 연구
-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율을 변환시켜 한-터키 및 한-미 FTA 동시 활용 가능 신제품 개발(HS 5516.22)
 - * 한-터키 : 반덤핑관세 제외대상(40% 관세 혜택)
 - * 한-미 : 관세 철폐 스케줄(즉시철폐)
 - * 원재료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원재료	① Poly(96%) ② Span(4%)	① Poly(49%) ② Modal(51%)

활용효과

- 신제품인 Poly/Modal 교직물(5516.22)은 Modal사의 사용으로 Poly 직물보다 원가가 조금 높지만, 한-미 FTA 즉시 관세철폐 대상 및 한-터키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상쇄시키고, Poly 직물보다 품질이 향상되어 터키 및 미국시장 공략
 - ❖ 반덤핑관세 회피 및 즉시 특혜관세 혜택으로 향후 200만 불 수출 효과

FTA활용 특징 및 시사점

활용사례 특징

- 일반적인 FTA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FTA 활용지원이 아닌,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품목 분류 및 기술개발 · 연구 등 실질적인 FTA 활용 지원
 - 생산물품 품목분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등 실질적인 지원
- 체결국별 양허조건 분석, 관세 즉시철폐 품목 발굴 및 FTA 활용을 위한 투입원사의 혼용률 조정 등 생산기술과 접목한 적극적인 FTA 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미국 등 거대시장 선제점령

-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을 기관별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FTA 지원을 통해 위기의 지역 섬유산업을 재도약의 전기 마련
 - 15개 업체 FTA 활용 신제품 개발, 매출증가 100억원(평균 9.1% 신장), 고용창출 30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의 근간산업인 섬유업계에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 고취

시사점

- 협정별 / 품목별 철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철폐 스케줄 분석을 통한 고품질 한국산 신제품 개발로 가격 경쟁력 향상
 - 관세철폐 품목의 신제품 개발로 거대 FTA 시장 공략
- FTA 활용으로 8~32%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중국산과 가격 차이를 거의 상쇄하며, 비슷한 제품일 경우 바이어 입장에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납기를 성실히 준수하는 한국산 선호
 - FTA 활용을 통한 원가절감 및 고품질 섬유제품 개발 필수
-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체를 위해 민-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요 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을 지원한 사례
 - 섬유업종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FTA 활용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 가능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분야 : 최우수상(신한관세법인)
원산지 검증 뒤엎은 한판 승부

기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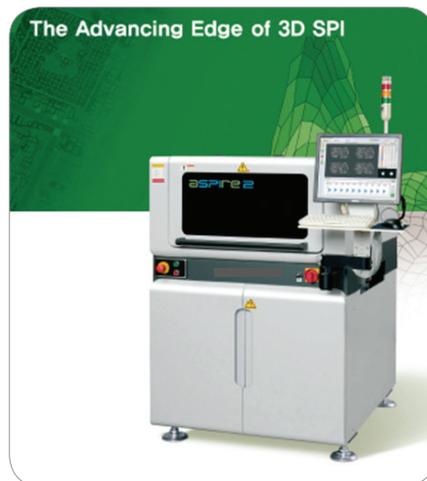
- 업체명 : K 테크놀로지

- 업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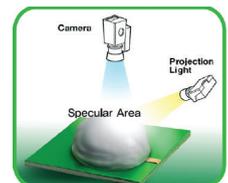
K 테크놀로지는 국내 3차원(3D) 정밀 측정 검사 장비 전문 업체로서 2차원(2D)으로 하던 납도포 검사를 3차원(3D)으로 바꿈으로써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강소 기업임

- 주요 수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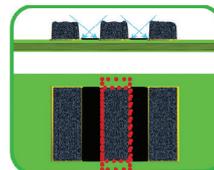
K 테크놀로지가 제조, 판매하는 "ASPIRE 2" 제품은 PCB 외관을 내장 카메라로 촬영하여 PCB 외관의 상태를 측정 검사 하는 장비로 특허 받은 4방향 Projection 기술을 적용하여 PCB 외관의 그림자, 난반사, 기준면 그림자 문제 및 Projection 방향성 문제를 측정 검사 하는 장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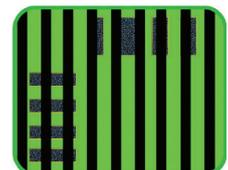
Shadow Problem



Specular Problem



Reference Plane Shadow Problem



Directional Problem

● 매출액 (수출액)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매출액	수출액	매출액	수출액	매출액	수출액
802	718	1,008	848	1,039	931

● 주고객사 별 수출비중

주고객사	C사 Automotive	F사 Cellur phone	F사 Electronics	J사 Electronics
소재지	독일	중국	미국	미국
수출비중	6.5%	5.8%	4.3%	3%

K 테크놀로지의 한-미 FTA 활용

한-미 FTA 활용

- 미국과의 거래 형태
 - K 테크놀로지는 미국 내 판매대리인 격인 미국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본 판매 대리인이 미국 내의 영업, 판매 및 고객 관리를 하고 있음
 - K 테크놀로지의 판매대리인이 직접 수입자가 되어 고객사에 납품하는 형태(판매대리인 Normal 거래)와 고객사가 직접 수입자가 되어 물품을 직접 수취하는 형태(End User Normal 거래)로 수출,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
- 한-미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혜택
 - K 테크놀로지가 제작, 판매하는 “ASPIRE 2” 제품은 미국 내 HS CODE(HTS)기준에 의거 제9031.49-7000호로 분류되며 미국 수입통관시 관세율 3.5%가 적용되어 왔음
 - 한미 FTA를 통해 0%의 협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연간 342,626,000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음
- 주문제작 방식을 통한 생산 제품 관리
 - K 테크놀로지는 고객이 요구하는 옵션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 주문제작방식을 통해 제품을 생산 및 관리하고 있음
 - 고객의 P/O(구매주문)를 받으면 K 테크놀로지의 내부 ERP 시스템 상 “Tracking Number”가 자동 생성되며, 해당 Tracking Number를 통해 제품의 BOM 관리, 협력업체의 부품 주문, 제품 생산도면 등의 생산관리 및 원자재의 재고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관리됨

-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 K 테크놀로지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PSR) 중 아래 표의 “나”목에 해당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CTSH+BD45%)”을 선택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였음

3차원측정기(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참조]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다. 다른 물품(같은 소호의 물품을 위한 베이스 및 프레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생산된 것

- K 테크놀로지는 수출 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여 미국에서 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

K 테크놀로지의 미국세관 검증 요청 및 대응

K 테크놀로지의 미국세관 검증 대응 상황

2014.01.21	2014.03.18	2014.03.24	2014.06.16	현재
Miami 세관 검증자료제출 요청	Boston 세관 검증자료제출 요청	Miami 세관 검증결과 통지(Negative)	Boston 세관 검증결과 통지 (Positive)	Miami 세관에 이의제기 (Protest) 준비중

미국 Miami 세관으로부터의 검증 요청 및 결과통지

- 요청 내용(CBP Form 28)
 - K 테크놀로지는 미국 내 판매대리인 격인 미국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본 판매 대리인이 미국 내의 영업, 판매 및 고객 관리를 하고 있음
 - Miami 세관으로부터 아래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음

- 원산지 증명서, 제조공정도, 제품 정보 서류
-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증빙 서류
- HS CODE, 원산지, 원재료비가 기재된 BOM 및 원재료 송장
-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 증명서 또는 진술서
- 물품 가격 확인을 위한 구매 Order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
- 재고관리, 직접재료 등과 관계된 자료
- LC 사본 또는 미국 구매자로부터의 대금지급 입증 자료

• 결정 내용(CBP Form 29)

- CBP Form 28에 대한 제출자료에 대해 Miami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한국산 불인정)을 받음

- 상품이 품목별기준(PSR)을 어떻게 충족시키는 지에 대한 근거자료 불충분
- 공제법에 따라 적용한 45% 대한 근거자료 불충분
- 원재료 송품장, BOM과 기타 제출 서류들이 한국어로 작성됨.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미국 Boston 세관으로부터의 검증 요청 및 결과통지

• 요청 내용(CBP Form 28)

- Miami 세관의 검증요청 서류와 거의 동일하지만 과세가격에 대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함

-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에 대한 정보
- 미국 내 과세가격에 대한 증빙서류(거래가격 배제 조건에 대한 증빙)
- 원산지 증명서
- HS CODE, 원산지, 원재료비가 기재된 BOM 및 원재료 송장
-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 증명서 또는 진술서
- 원가자료(원산지 결정기준이 역내가치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경우)
- 생산 제조기록, 구성품의 원산지 국가를 보여주는 제조 공정도 등 기타 자료

● 검증 대응 방식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재검토

Miami 세관에 검증 자료를 제출 시 제9031.4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CTSH+BD45%)”으로 검증자료를 제출하였음. 하지만, Boston 세관에 대응자료 제출 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세번변경기준(CTH)” 기준과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제 6.6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용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 의견서 추가 제시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판정 및 원산지입증을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 분류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Miami 세관에 제출한 HS CODE의 증빙서류 이외에도 HS CODE 4단위가 달라지는 모든 원재료 (52개)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함

Miami 세관 제출 자료

Boston 세관 제출 자료

A010-110000-001 / MAIN AIR ASS'Y									
	<table border="1"> <tr> <td>Name</td> <td>MAIN AIR ASS'Y</td> </tr> <tr> <td>HS CODE</td> <td>8481.20</td> </tr> <tr> <td>Material</td> <td>PLASTIC AND STEEL</td> </tr> <tr> <td>Explanation of function</td> <td>MAIN AIR ASS'Y consists of an On/Off switch to input compressed air from a pump to an machine and a valve to regulate the quantity of compressed air</td> </tr> </table>	Name	MAIN AIR ASS'Y	HS CODE	8481.20	Material	PLASTIC AND STEEL	Explanation of function	MAIN AIR ASS'Y consists of an On/Off switch to input compressed air from a pump to an machine and a valve to regulate the quantity of compressed air
Name	MAIN AIR ASS'Y								
HS CODE	8481.20								
Material	PLASTIC AND STEEL								
Explanation of function	MAIN AIR ASS'Y consists of an On/Off switch to input compressed air from a pump to an machine and a valve to regulate the quantity of compressed air								
<p>Classification: Note 2 (c) to Section 16 states that Parts which are goods included in any of the headings of Chapter 84 or 85 (other than headings 8429, 8431, 8446, 8448, 8475, 8487, 8522, 8529, 8538 and 8548) are in all cases to be classified in their respective headings and also second part of General (2) to Section 16, indicates that parts, coils, valves, etc. (heading 8481) are in all cases classified in their own appropriate heading even if specially designed to work as part of a specific machine.</p> <p>The Explanatory Notes to heading 8481, HTS indicate that valves for electrohydraulic or pneumatic transmission. These valves, which may be of any type (pressure-reducing type, check type, etc.) are used specifically in the transmission of "fluid power" in a hydraulic or pneumatic system, where the energy source is supplied in the form of pressurized fluids (fluid or gas).</p> <p>The subject good is a regulator to control the air pressure. Therefore it would be classified in subheading 8481.20, HTS.</p>									

- 모든 증빙 서류의 영문화 필수

미국 세관에 검증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제출해야 함
Miami 세관에 제출된 증빙 서류 중 한글이 사용된 ERP 캡처 화면을 증빙 서류로 제시하였기에 모든 증빙 서류의 영문화 작업 실시한 후 제출함

Miami 세관 제출 자료

Boston 세관 제출 자료

- 결정 내용(CBP Form 29)

- CBP Form 28에 대한 제출자료에 대해 Boston 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한국산 인정)을 받음

검증결과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임

향후 업체 대응 방안

이의신청(Protest) 준비

- 미 Miami 세관의 “Negative(한국산 불인정)” 회신(CBP Form 29)에 대해 이의제기 (Protest)를 준비 중에 있음

FTA 원산지 시스템 구축

- 내부 ERP 시스템의 “Tracking Number”를 통한 원산지 관리를 넘어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 및 내부 TFT 구성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체계를 구축 할 예정임



정윤호 매니저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원산지관리사로 블루오션을 향해하다!

원산지관리사 첫번째 합격수기.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정윤호 매니저의
「원산지관리사 취업성공기」를 들어본다.

원산지관리사에 도전!

저는 지방소재 대학의 무역학과에 입학하여 서울지역 대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이하 GTEP)이라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 대학과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실무적인 무역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FTA를 통해 전라남도라는 “무역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 바로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흔히 무역학과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관세사가 있지만, 국제무역사라는 자격만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관세사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FTA 전문 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준비기간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수업을 통해 원산지관리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 관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협정별·상품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하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FTA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원산지관리사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FTA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원산지관리사를 공부하다보니 원산지관리사 각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점차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생각에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로 취업성공!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고 4학년 2학기 재학 중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의 FTA활용 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을 수강하여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게 되었고, 전라남도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면 꿈꾸고 있던 “전라남도 무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유로 높은 가산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FTA 활용 증대에 온 힘을...

현재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FTA활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센터에 파견된 관세사님들과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다니면서, 전라남도의 상황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의 FTA활용도를 높여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라남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무역이 강한 전라남도를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FTA시대를 향해하기 위한 나침반, 원산지관리사

벌써 원산지관리사로서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야할 부분이 많지만, 그동안 원산지관리사로서 각종 FTA관련 교육·설명회 기획, 전라남도 기업들의 BOM 부터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작성,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 준비 등을 도움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의 FTA 활용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FTA 활용측면뿐만 아니라 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개척을 증대시키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넛크래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FTA를 활용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로서 전라남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꿈을 키우고 있지만, 원산지관리사로서의 업무영역이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오니 여러분께서도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꿈을 키워가는 것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2012년 12월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으로 지정되었다.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이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제외한 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과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서비스업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① 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
 - ② 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③ 근로자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④ 근로자수 100명 이하의 그밖의 업종 등
- ※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업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4번에 걸쳐 각각 27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3명까지 지원하며,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4명을 한도로 지원된다.

본 사업은 고용창출지원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사업 실시 및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여부 확인, 사업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준비, 지원금 신청, 지도·점검 대응 등을 꼼꼼이 챙겨 전문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금 혜택이라는 1석2조 효과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게시판 고용창출 지원 사업 시행공고 및 세부 시행 지침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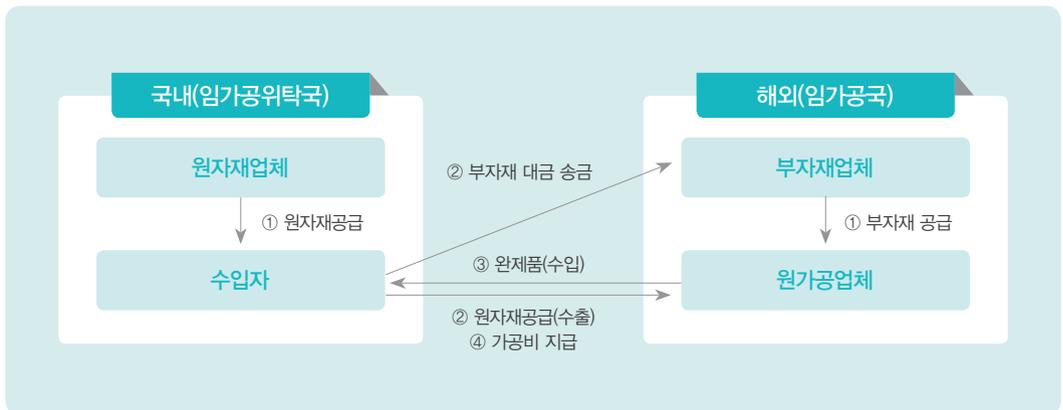
해외임가공 감면대상 제외비용, 물품 취급 수수료 등의 FTA활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김덕연 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A 해외임가공품의 FTA활용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세의 감면이란,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세를 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들을 통틀어 관세의 감면제도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란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업체가 외국의 임가공 업체에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완제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후 수입하는 때에 수출 원재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해외임가공물품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로 첫째, 원재료 또는 부품품을 수출하여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둘째, 제조·가공 및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서 제조·가공 및 수리 후 수입된 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단,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범위는 수출된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해외임가공을 위해 발생하는 임가공료와 왕복 운임 및 보험료는 해당 원재료와는 별개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재수입 물품에 대한 100% 감면의 의미는 아니며, 관세법 101조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만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가공료, 물품 취급 수수료, 왕복운임 등 거래제반비용까지 세액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FTA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만약 해외임가공업체(수탁가공업체)가 우리나라

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며, 임가공물품이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해외임가공품에 대한 감면보다 더 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임가공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수출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물론 임가공료와 왕복 운임·보험료에 대한 세액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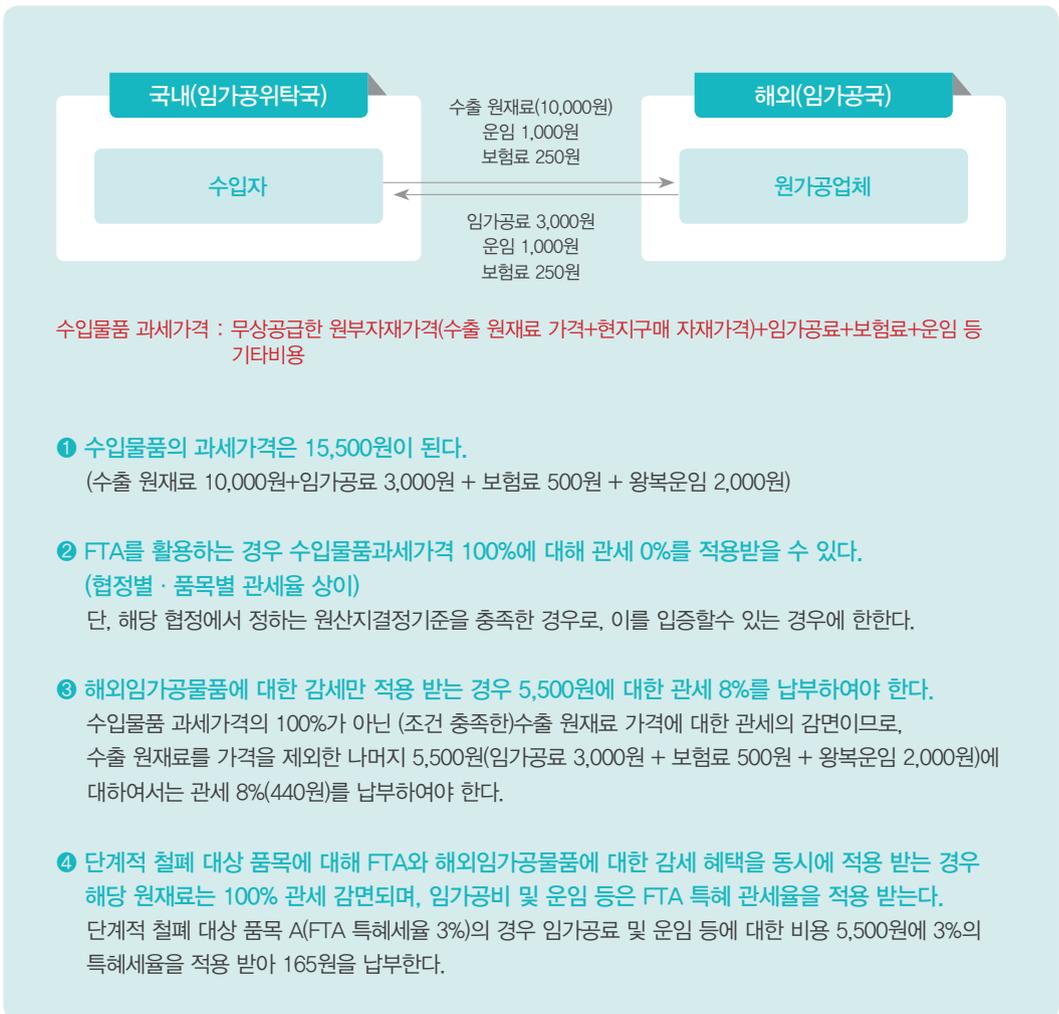
또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원재료가 활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요량, 잔량관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지만 FTA를 활용하게 되면 역내산을 입증할 비교적 간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수월하다. 단, 반드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임가공 물품 등 감면	FTA 특혜세율
적용 대상 물품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HS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제한 없음
특혜 범위	수출된 원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100% 면세	철폐 스케줄에 따라 0%~100%
제출 서류	임가공계약서, 수출원재료와 수입물품 HS 10단위가 일치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	원산지증명서 (EU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적용시점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소급 가능)
적용범위(국가)	어느 국가나 적용 가능	FTA 체결국에 한정

이에 따라 해당 해외임가공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며,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가공업자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받음으로써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단계적 철폐 등의 이유로 100% 특혜세율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위탁가공업자는 FTA 특혜 효과와 해외임가공 감세의 효과를 비교하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임가공 감세가 가능한 제품 A(수입세율 8%)에 대해 발생 가능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때, 제품 A가 한-ASEAN FTA를 활용 100%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FTA를 활용한 특혜세율을 적용받겠지만, 제품 A가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으로 수입신고 당시 FTA 특혜 세율이 3%인 경우에는 수입물품가격 1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65원의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해외임가공감세를 선택할 경우 25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임가공료 등에 대한 관세 4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때 관세 440원에 대한 절감이 다시 한 번 가능한데, 역시 FTA의 활용이다. 수입신고 당시에 임가공 수입 인보이스에 원재료와 임가공비 등을

구분하여 신고할 경우, 각 란별로 감면과 FTA 혜택을 각각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는 100% 관세 감면이 되고, 임가공비 등은 FTA 특혜관세 3% 적용, 납부해야 하는 최종 관세는 165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FTA를 전략적으로 혜택을 활용한다면, 기업에게는 새로운 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임가공료 및 원재료, 운임, 보험료는 계속해서 변동하므로 임가공계약 전에 정확히 실익을 계산하여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겠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대비 대한민국의 FTA를 FTA PASS가 지원합니다!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

김덕연 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지난 5월 대구 소재 수출기업 4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FTA 활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수출기업의 약 65.4%인 272개사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사 결과(대구지역 FTA 활용수출기업 비중 34.5%)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영세 소규모기업의 FTA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변함이 없었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144곳이나 되었는데, 이들 기업의 FTA 미활용 이유로는 '현지 바이어 요구가 없기 때문'이 35.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원산지증명 발급절차의 어려움(9.4%) ▲FTA활용방법을 몰라서(8.8%) ▲전문인력 부족(7.5%) 등 그동안 기업들이 FTA활용에 있어 호소하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은 아쉽다. 또, FTA활용을 위한 기업들의 인력 및 시스템 관리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업무담당자 지정(81.4%)과 업무매뉴얼 관리 정도(69.1%)에 대한 답은 양호했으나, FTA 전산시스템 구축(34.1%)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FTA-KOREA) 활용(25.6%) 등 FTA 시스템 전산화에 대한 응답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렇게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기업의 FTA원산지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FTA 종합상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올해 상반기에 171개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또 7월말부터는 하반기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의 보급 및 활용·원산지검증대비 사전 진단·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담까지 중소기업의 FTA활용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지난 6월 23일부터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용 FTA-PASS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들은 인력 및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물품 재료, 자재명세서 등 FTA 특혜 수혜에 필수적인 원재료관리 자료들을 FTA-PASS 양식에 맞추어 매번 수작업으로 등록하는 번거로우면서도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관세청이 중소기업용 FTA-PASS서비스를 통해 엑셀 자동연계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은 번거로운 작업 없이 엑셀자료를 FTA-PASS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재료 등록,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이다. 엑셀 자동연계기능을 활용하면, 시스템에 따라 원산지관리 기본양식 22종이 엑셀과 연계되고, 업체 필요에 따라 신규양식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도록 메뉴별 도움말 기능도 제공받을 수 있다.

01

엑셀자동연계 기능이란?

「FTA-PASS 엑셀 양식」으로의 재가공이 필요없이 기업이 관리하는 엑셀 정보를 파일 단위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처음 이용 시 FTA-PASS 입력항목과 기업 엑셀정보의 항목간의 연결처리 한 번만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며, 한 화면에서 모든 메뉴별 자료의 업로드가 가능하다.

엑셀정보 기본 제공양식

기본 양식	
일반형 ¹⁾ (9)	거래처, 물품재료, 자재명세서, 신국제통일상품분류 코드(HS CODE) 관리, 생산공정, 고객사 물품정보, 원가관리, 원산지근거서류, 완제품 가격관리
수불형(13)	거래처, 물품재료, 자재명세서, 신국제통일상품분류 코드(HS CODE) 관리, 생산공정, 고객사 물품번호, 구매원장, 수불부, 재료비관리, 매출 원장, 원장별 비용처리, 표준비용처리

1) 일반형은 원재료 수불대장을 사용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단순하고 간편하게 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02

엑셀자동연계 기능을 활용하려면?

엑셀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FTA-PASS(<http://www.ftapass.or.kr>)에 로그인 후 [시스템관리 > 엑셀 연계] 메뉴를 클릭하고,



[기업양식관리]탭을 클릭하여 기업이 관리하는 엑셀정보를 등록한다. FTA-PASS 활용 유형에 따라 기본 양식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결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해 두 항목을 연결하면 입력이 완료된다. 항목은 필요에 따라 신규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 자세한 사용방법은 FTA-PASS 공지사항 게시판[엑셀연계기능 서비스 실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FTA-PASS
활용이 여전히
어렵다면?

「현장지원서비스를 활용해보자」

FTA-PASS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FTA-PASS 사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후관리팀에서는 매월 FTA-PASS 소식을 포함한 FTA 관련 소식지를 FTA-PASS 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발송하고 있으며, FTA-PASS 활용현황 점검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설문조사와 간담회 열고, 사용자 경진대회, 워크숍 등을 통해 보다 쉬운 FTA-PASS 활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수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 및 현장지원 서비스다. 특히 현장지원 서비스는 많은 기업들이 반기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은 「FTA-PASS 사후관리팀」이 직접 해당 기업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시간을 내어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청 기업만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다.

현장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FTA-PASS활용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FTA-PASS활용 교육을 위해서도 신청한다고 하니, 내용에 해당하거나 FTA-PASS를 활용함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면 현장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FTA관련 교육을 이수한 FTA-PASS 사용자면 어느 기업이나 가능하며, 신청 기업과 별도 협의한 날짜와 시간에 FTA-PASS 사후관리팀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1. 16 ~ 2014. 11. 30
- 접수방법 : FTA-PASS 홈페이지
- 문의사항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사후관리팀 (031-600-0770)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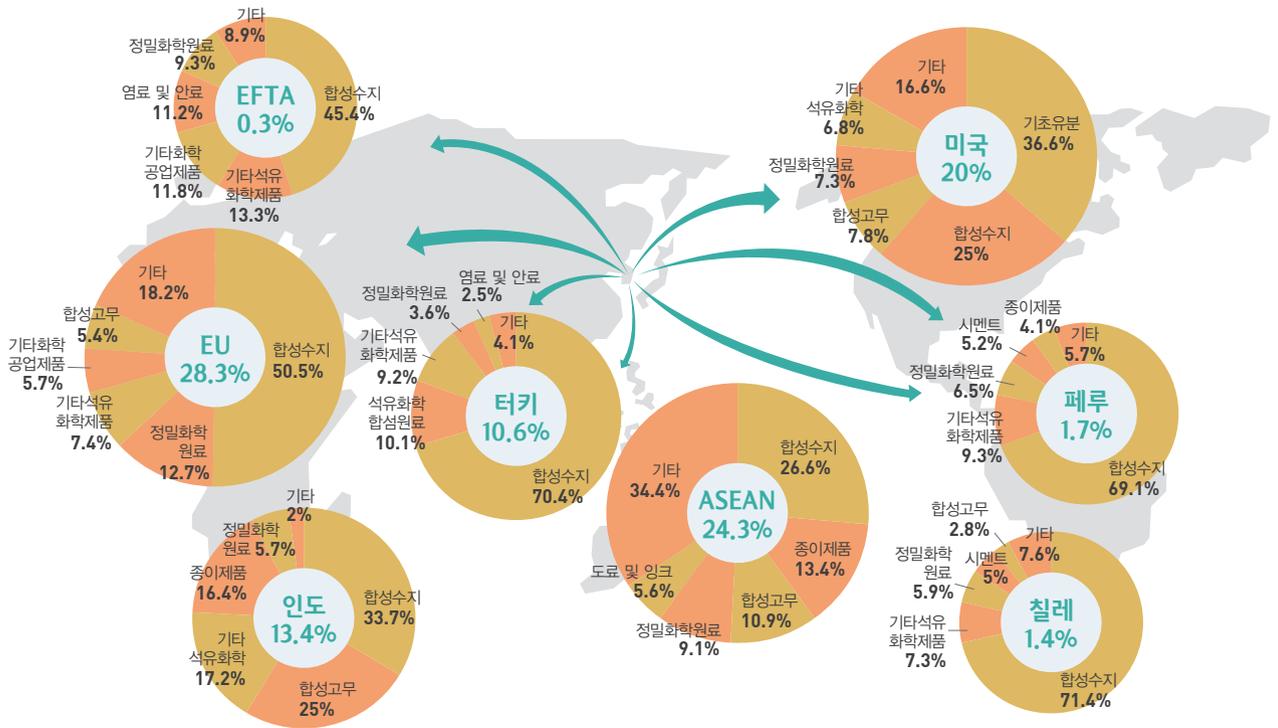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수출 화학공업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6,583,213 (5%)	114,978,628 (95%)	121,561,841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6,583,213.493

	EU 1,860,534.699
	ASEAN 1,601,925.649
	미국 1,317,941.202
	인도 879,872.925
	터키 697,057.900
	페루 110,820.419
	칠레 94,453.635
	EFTA 20,607.064

화학공업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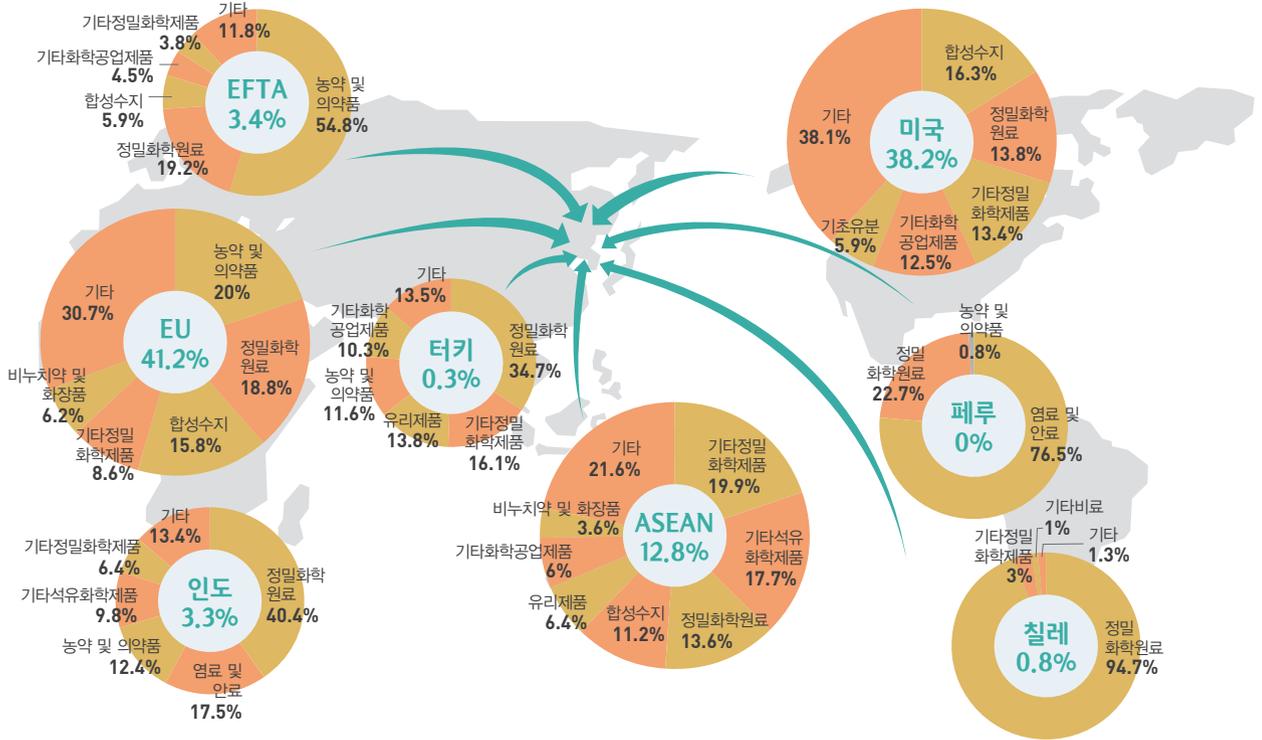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합성수지	2,558,090.753	38.9
2	정밀화학원료	582,078.856	8.8
3	합성고무	560,928.864	8.5
4	기타석유화학제품	529,667.746	8.0
5	기초유분	517,545.271	7.9
6	종이제품	365,011.179	5.5
7	기타화학공업제품	228,774.254	3.5
8	농약및의약품	196,371.814	3.0
9	기타정밀화학제품	165,998.334	2.5
10	석유화학합성원료	150,710.616	2.3
총계		6,583,213.493	100.00

수입 화학공업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7,018,189 (8%)	84,778,459 (92%)	91,796,648 (100%)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7,018,189.110



화학공업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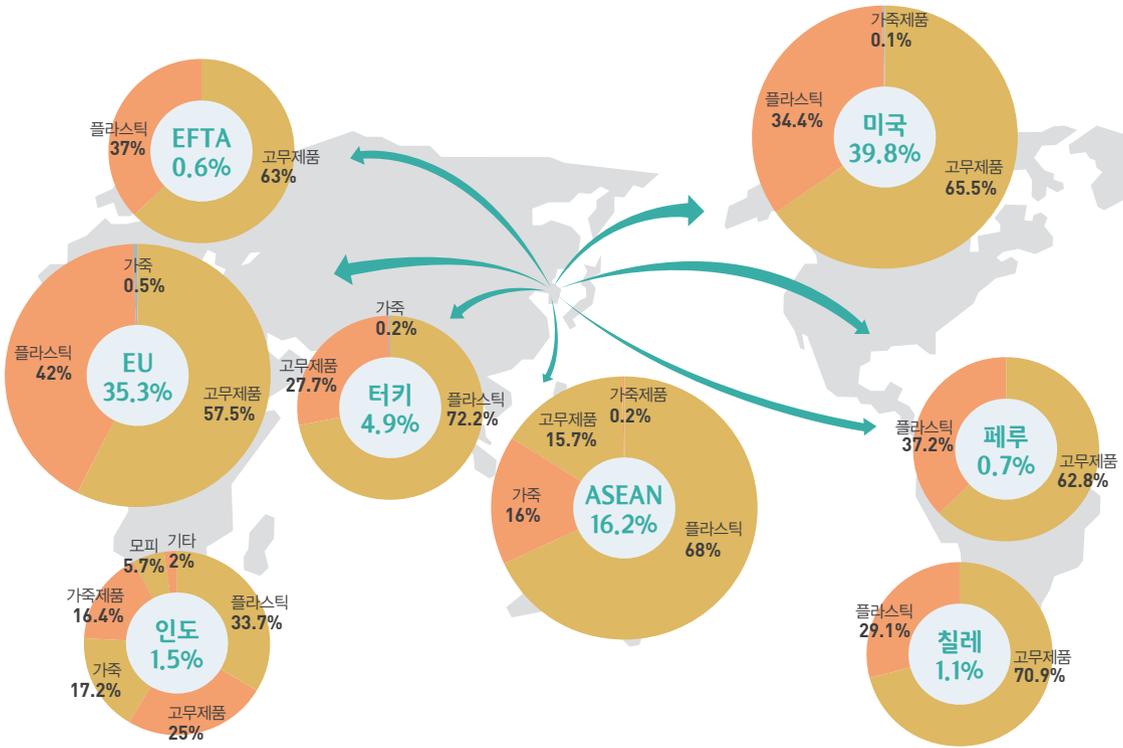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정밀화학원료	1,234,559.734	17.6
2	합성수지	1,016,583.947	14.5
3	농약및의약품	897,426.446	12.8
4	기타정밀화학제품	813,835.238	11.6
5	기타화학공업제품	585,625.274	8.3
6	기타석유화학제품	478,859.063	6.8
7	비누치약및화장품	366,515.394	5.2
8	염료및안료	320,310.518	4.6
9	유리제품	205,762.882	2.9
10	기초유분	187,599.943	2.7
총계		7,018,189.110	100.00

수출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617,355 (10%)	24,314,248 (90%)	26,931,603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2,617,355.48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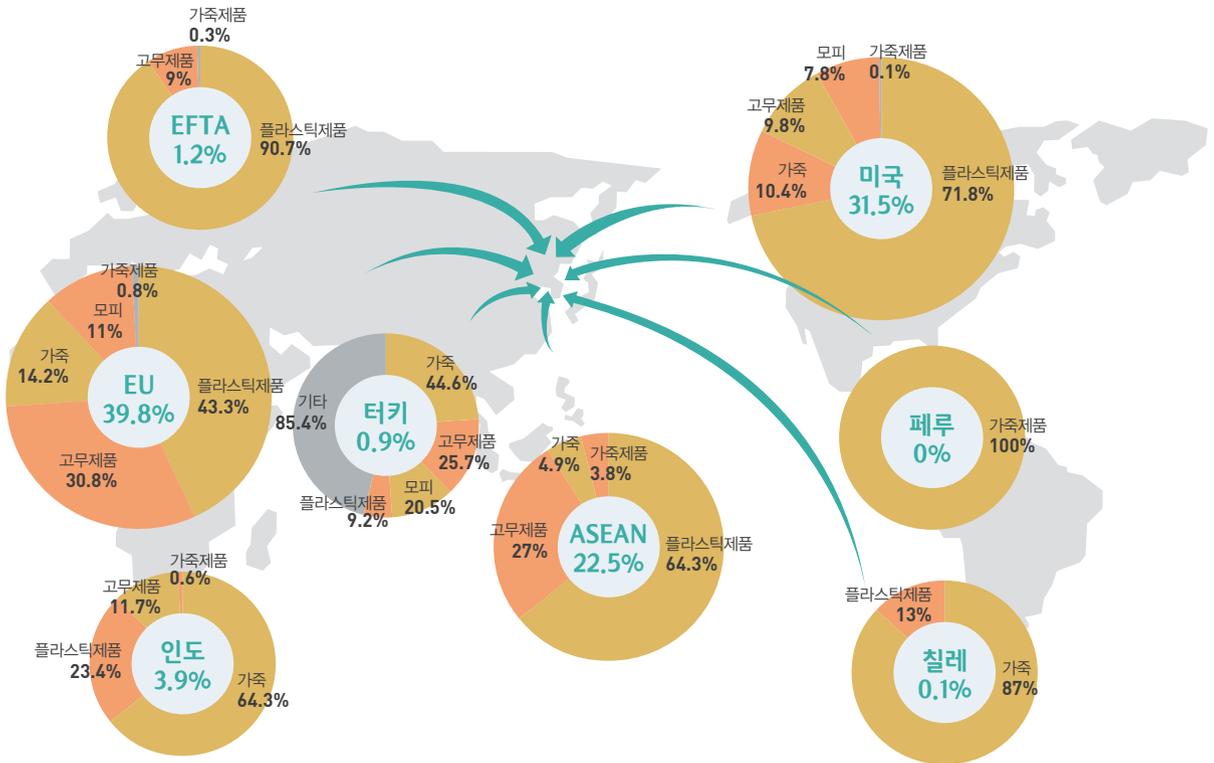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고무제품	1,365,792.305	52.2
2	플라스틱 제품	1,172,169.348	44.8
3	가죽	77,083.009	2.9
4	가죽제품	2,229.212	0.1
5	모피	81.610	0.0
총계		2,617,355.484	100.00

수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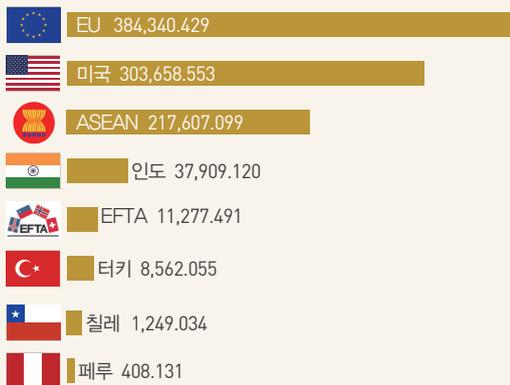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965,012 (7%)	13,767,369 (93%)	14,732,381 (100%)



협정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965,011.91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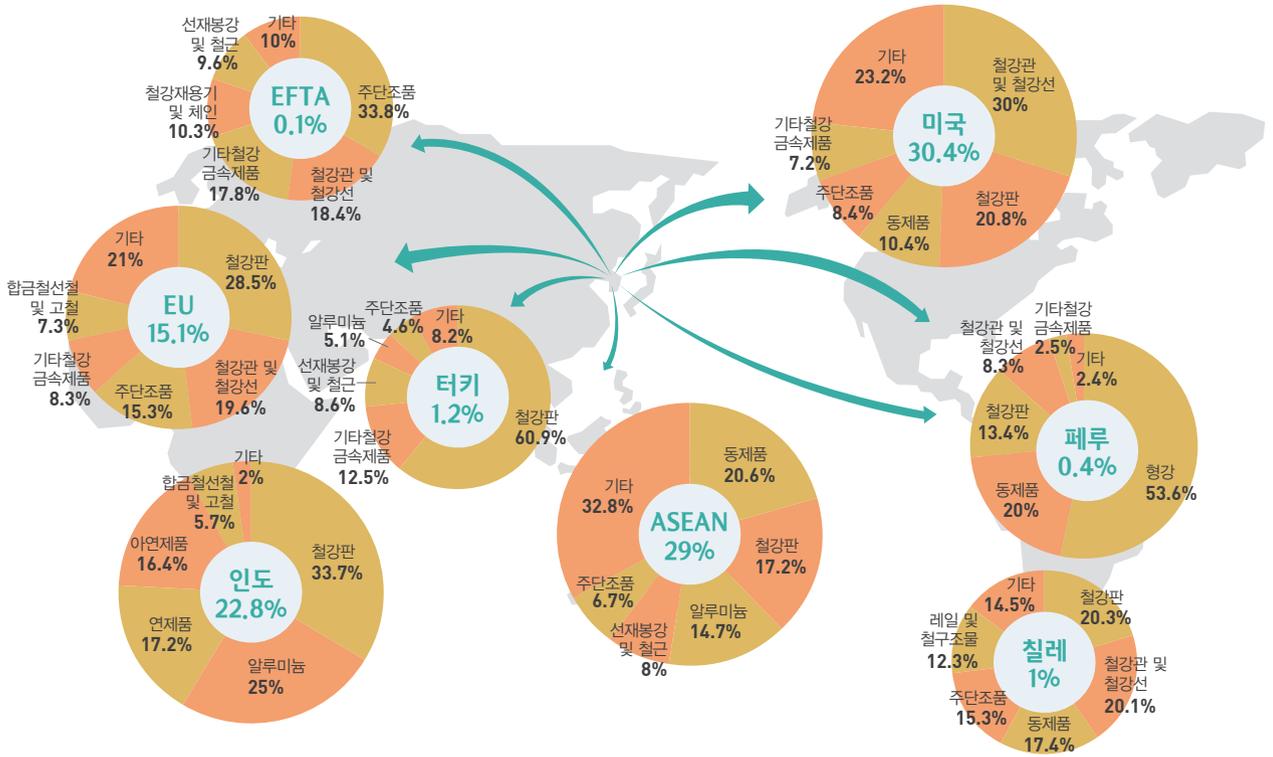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544,303.271	56.4
2	고무제품	214,545.648	22.2
3	가죽	125,970.756	13.1
4	모피	67,740.777	7.0
5	가죽제품	12,451.460	1.3
총계		965,011.912	100.00

수출 철강금속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672,065 (6%)	73,501,618 (94%)	78,173,683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4,672,064.644



철강금속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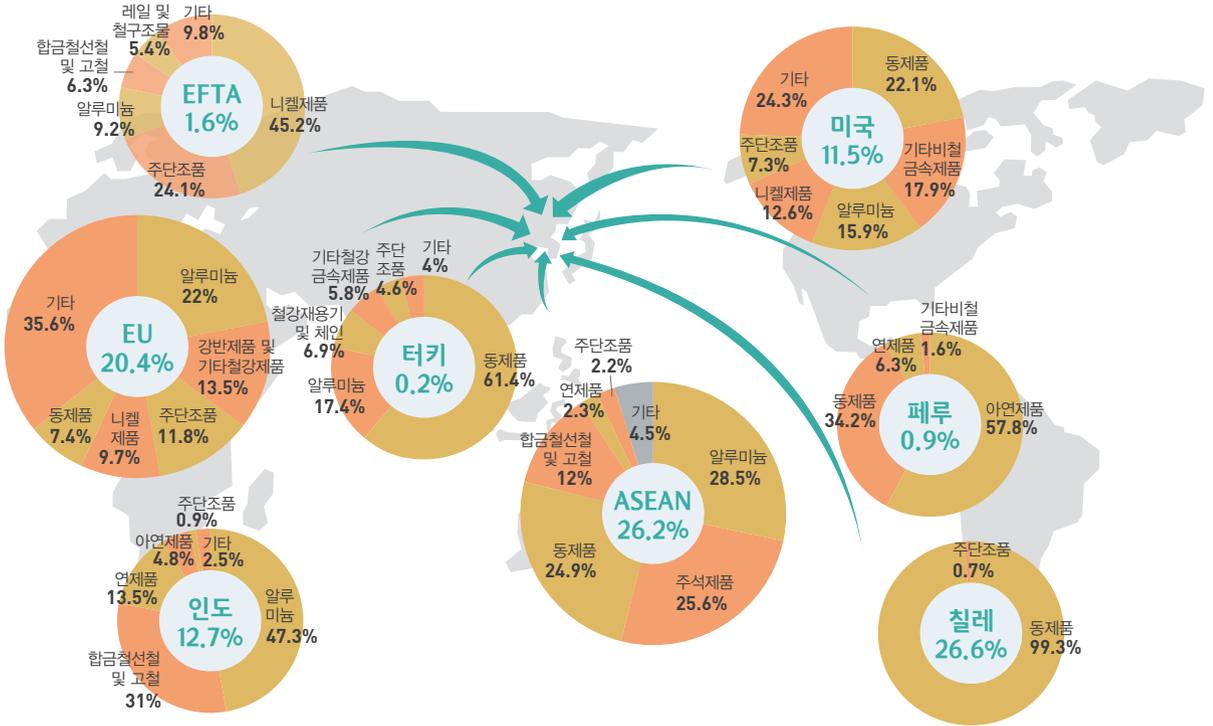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강판	1,485,640.128	31.8
2	철강관 및 철강선	690,752.023	14.8
3	동제품	486,100.484	10.4
4	주단조품	367,879.834	7.9
5	알루미늄	358,749.228	7.7
6	기타 철강 금속 제품	240,803.272	5.2
7	선재봉강 및 철근	228,271.666	4.9
8	연제품	143,343.373	3.1
9	레이 및 철구조물	136,472.962	2.9
10	합금철선철 및 고철	125,049.671	2.7
총계		4,672,064.644	100.00

수입 철강금속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504,129 (3%)	79,206,523 (97%)	81,710,652 (100%)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2,504,129.483



철강금속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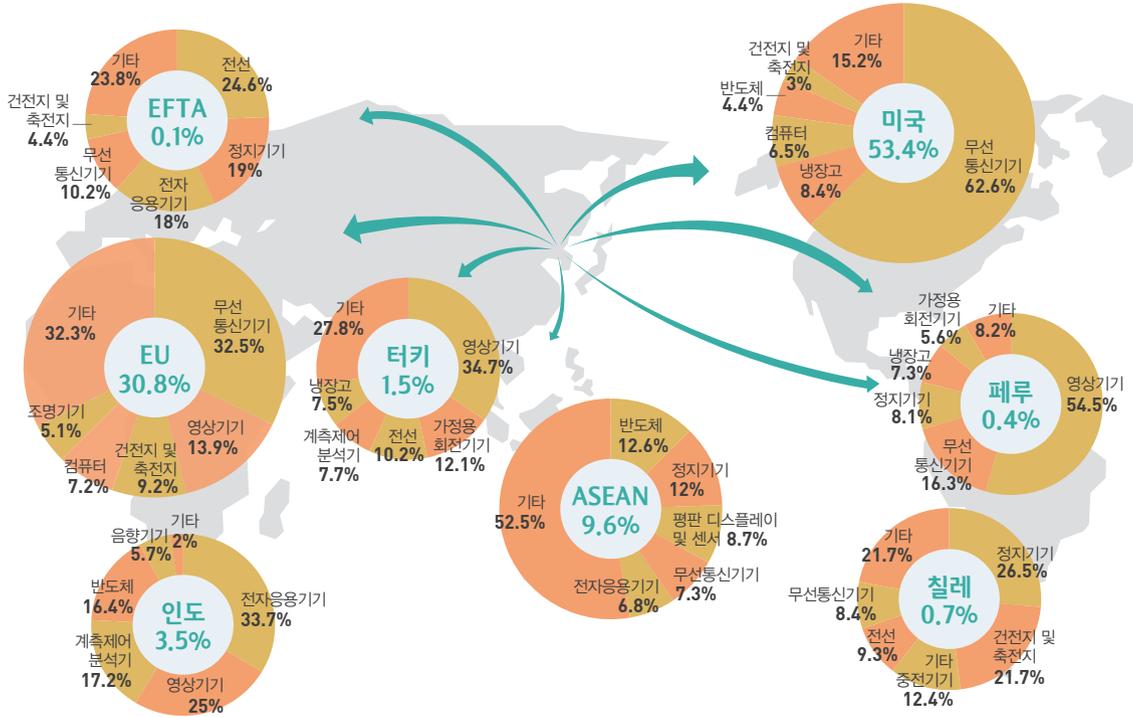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동제품	937,645.836	37.4
2	알루미늄	499,868.818	20.0
3	합금철선철 및 고철	206,575.727	8.2
4	주석제품	169,606.208	6.8
5	주단조품	112,160.973	4.5
6	니켈제품	104,887.842	4.2
7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101,104.927	4.0
8	기타비철금속제품	77,059.256	3.1
9	연제품	72,081.800	2.9
10	기타철강금속제품	57,511.561	2.3
총계		2,504,129.483	100.00

수출 전기전자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1,005,814 (4%)	295,401,039 (96%)	306,406,853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11,005,814.325

	미국	5,874,890.658
	EU	3,384,776.232
	ASEAN	1,061,161.946
	인도	390,431.513
	터키	161,532.854
	칠레	81,825.126
	페루	40,760.001
	EFTA	10,435.995

전기전자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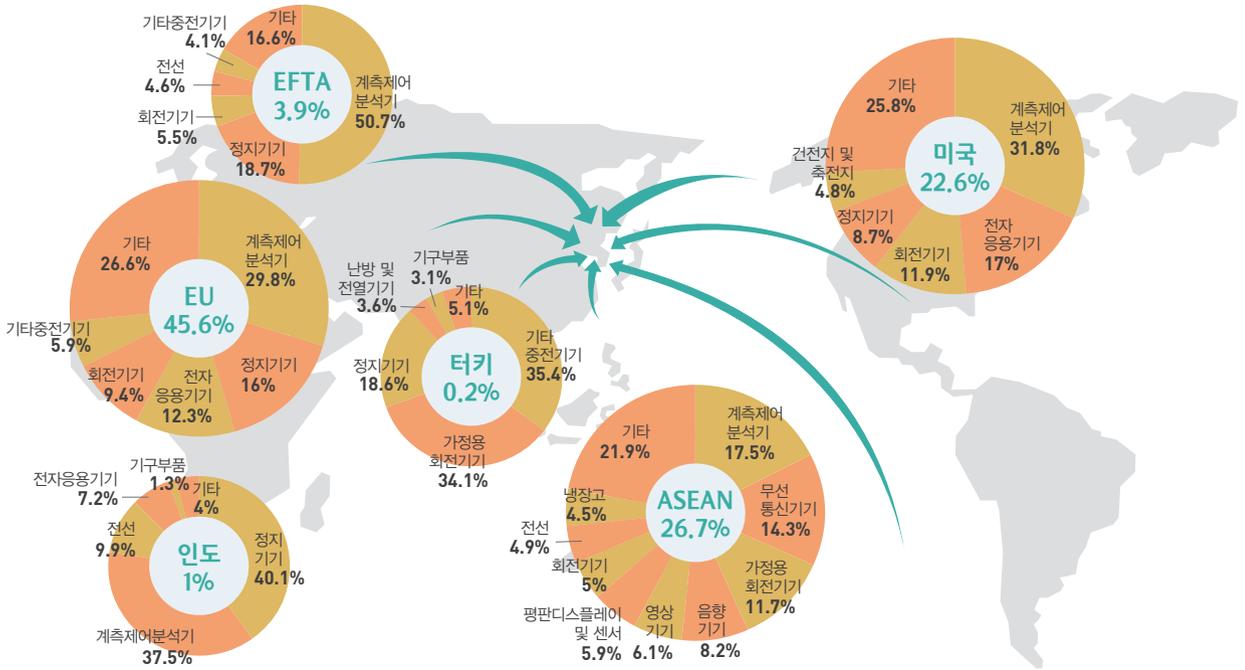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무선통신기기	4,890,922.554	44.4
2	영상기기	765,140.658	7.0
3	냉장고	673,659.717	6.1
4	컴퓨터	646,405.586	5.9
5	반도체	600,591.296	5.5
6	건전지 및 축전지	546,162.424	5.0
7	정지기기	454,037.828	4.1
8	계측제어분석기	333,870.864	3.0
9	전자응용기기	287,232.203	2.6
10	조명기기	251,377.604	2.3
	총계	11,005,814.325	100.00

수입 전기전자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899,500 (2%)	158,319,821 (98%)	161,219,321 (100%)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2,899,499.534

	EU 1,322,085.332
	ASEAN 774,006.074
	미국 654,850.434
	EFTA 114,079.455
	인도 27,864.339
	터키 6,613.900
	칠레 0
	페루 0

전기전자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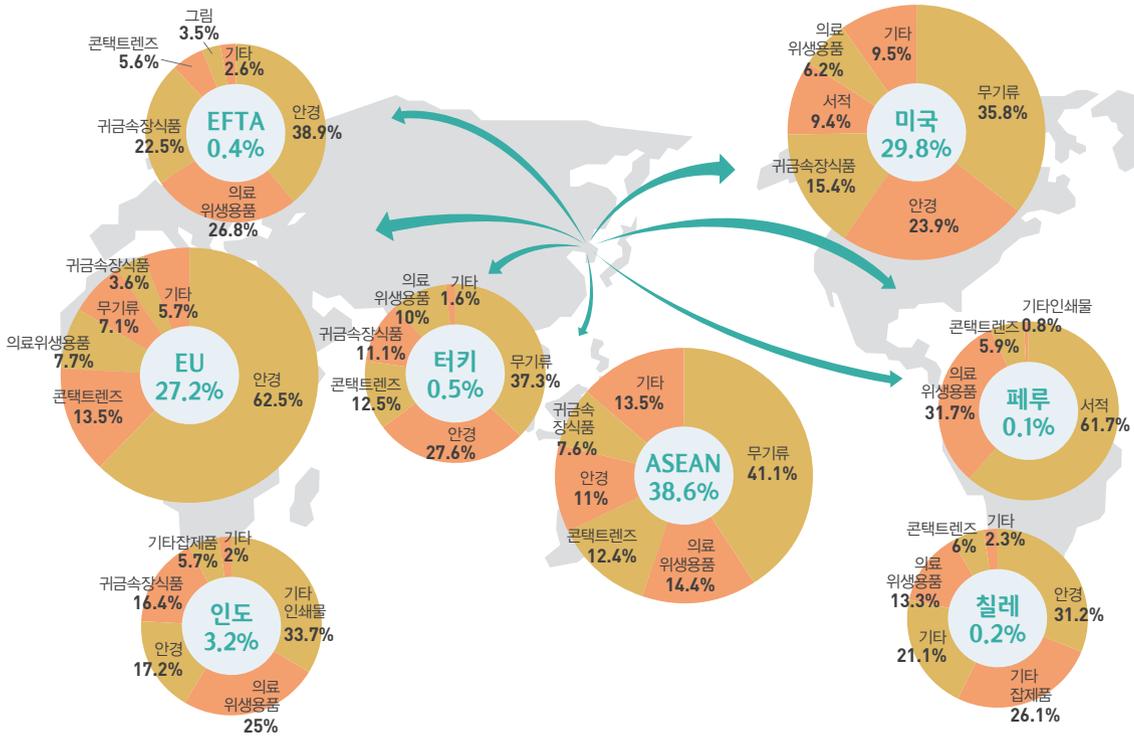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계측제어분석기	806,941.340	27.8
2	정지기기	333,401.995	11.5
3	전자응용기기	301,403.811	10.4
4	회전기기	247,336.439	8.5
5	무선통신기기	193,294.405	6.7
6	가정용회전기기	112,198.418	3.9
7	기타중전기기	109,854.957	3.8
8	가구부품	97,114.629	3.3
9	음향기기	95,834.737	3.3
10	전선	93,456.992	3.2
총계		2,899,499.534	100.00

수출 잡제품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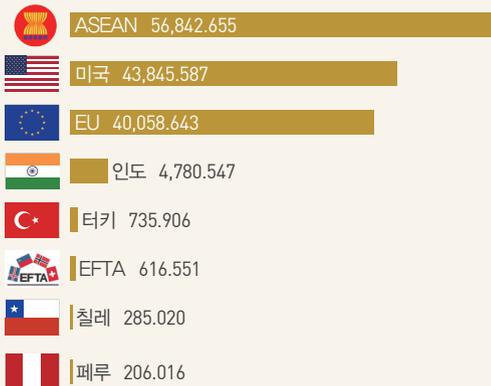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47,371 (5%)	2,634,889 (95%)	2,782,260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잡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147,370.925



잡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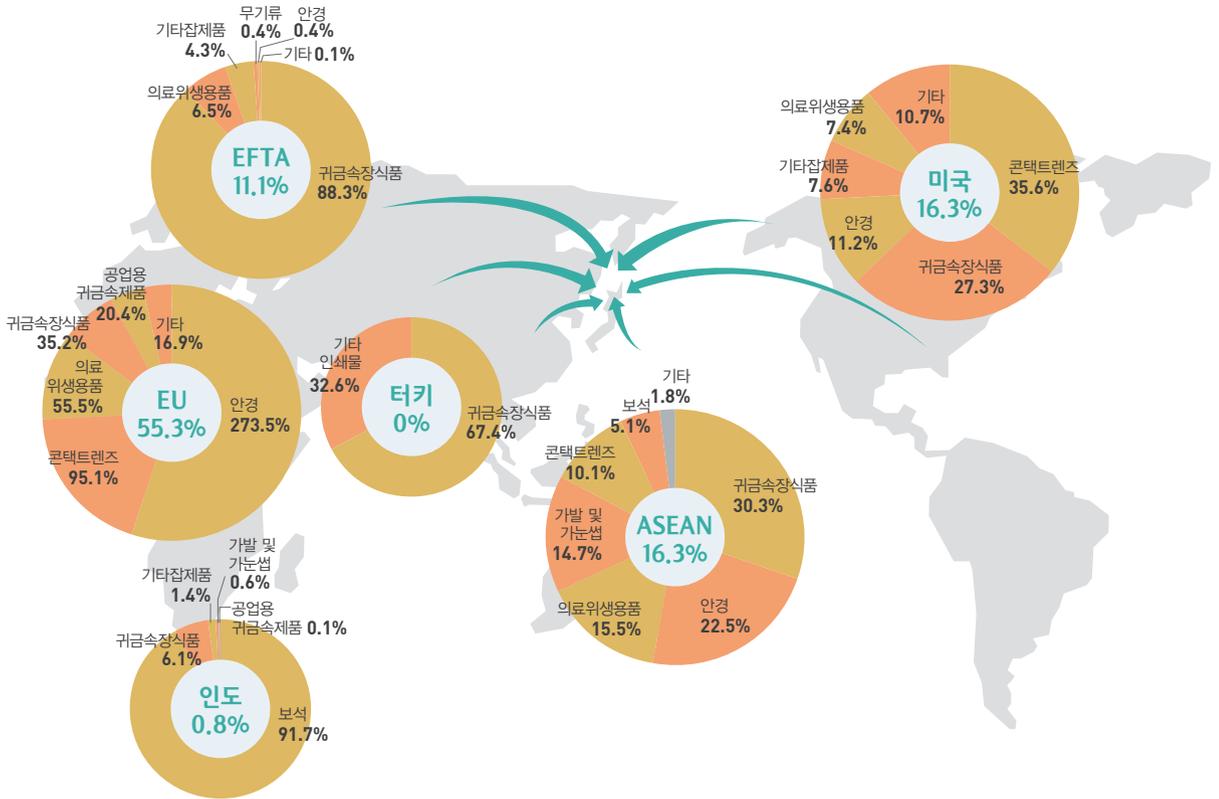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안경	43,019.123	29.2
2	무기류	42,162.530	28.6
3	의료위생용품	15,308.148	10.4
4	콘택트렌즈	13,705.764	9.3
5	귀금속장식품	13,279.547	9.0
6	서적	6,335.439	4.3
7	기타잡제품	5,639.472	3.8
8	기타인쇄물	3,849.420	2.6
9	공업용귀금속제품	1,783.529	1.2
10	가발및가늌셋	865.404	0.6
총계		147,370.925	100.00

수입 잡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41,041 (6%)	3,580,927 (94%)	3,821,968 (100%)



협정별 잡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241,041.178

협정	수입금액
EU	133,392.991
미국	39,341.453
ASEAN	39,404.348
EFTA	26,863.673
인도	2,036.706
터키	2.007
칠레	0
페루	0

잡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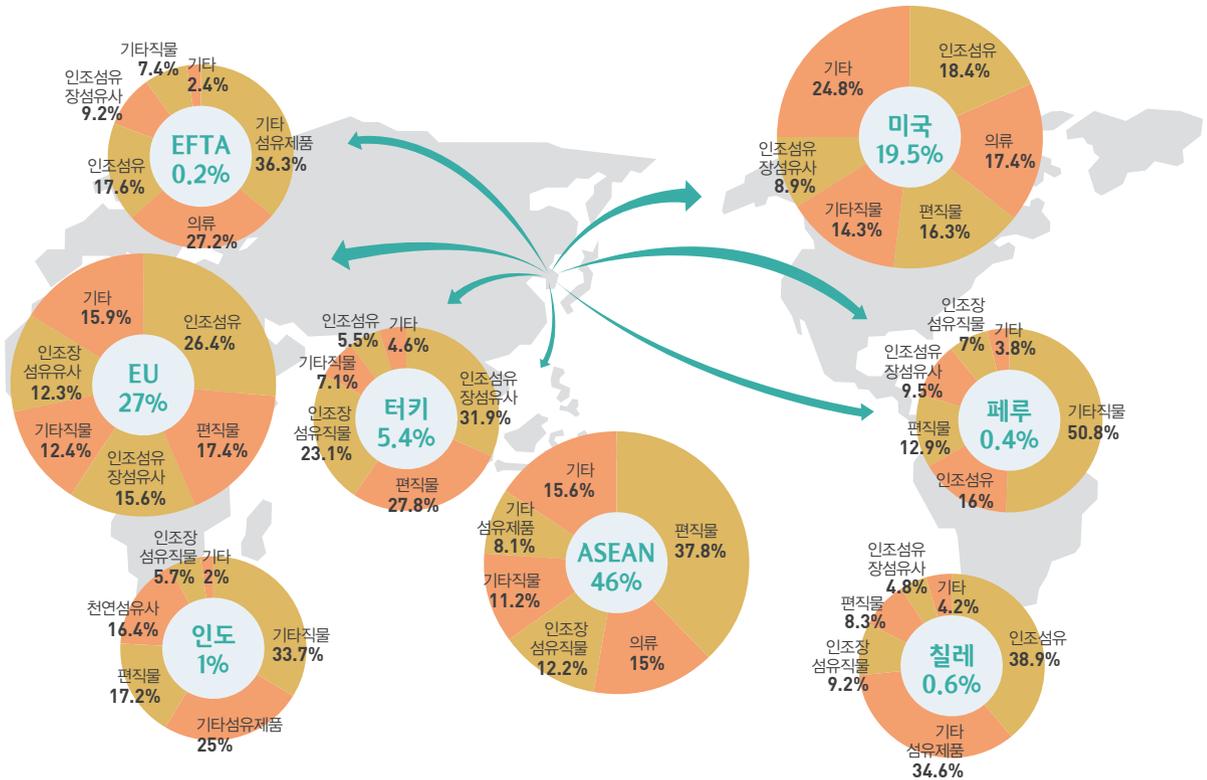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안경	86,857.775	36.0
2	귀금속장식품	56,025.044	23.2
3	곤택트렌즈	43,517.196	18.1
4	의료위생용품	25,656.916	10.6
5	보석	6,533.959	2.7
6	기타잡제품	6,229.069	2.6
7	가발 및 가늀셋	5,861.168	2.4
8	공업용 귀금속제품	5,659.054	2.3
9	무기류	3,877.658	1.6
10	기타인쇄물	779.573	0.3
총계		241,041.178	100.00

수출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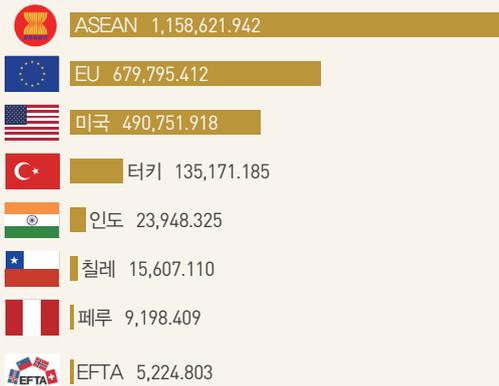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518,319 (9%)	24,741,481 (91%)	27,259,800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섬유류 특혜 수출금액 총액 2,518,319.104



섬유류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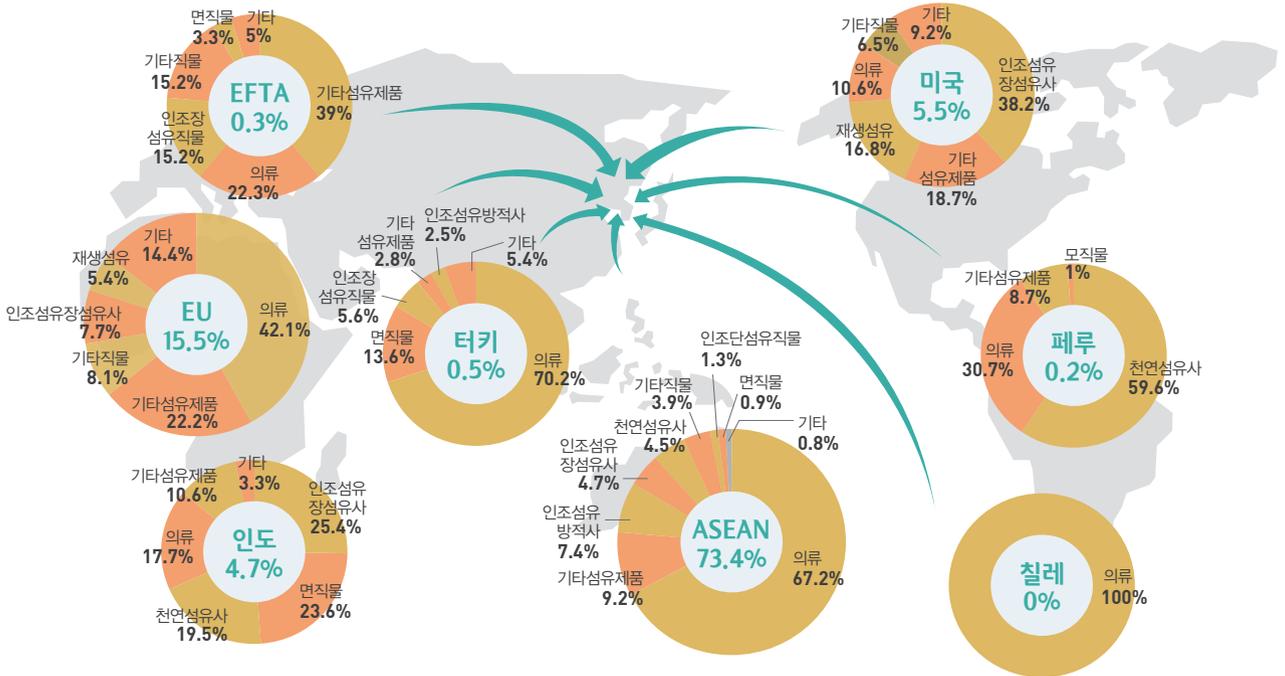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편직물	679,243.689	27.0
2	인조섬유	312,266.413	12.4
3	의류	312,201.403	12.4
4	기타직물	308,601.753	12.3
5	인조장섬유직물	293,422.364	11.7
6	인조섬유장섬유사	230,177.517	9.1
7	기타섬유제품	194,641.886	7.7
8	면직물	73,187.900	2.9
9	인조단섬유직물	39,310.507	1.6
10	재생섬유	33,907.378	1.3
총계		2,518,319.104	100.00

수입 섬유류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191,569 (10%)	20,620,086 (90%)	22,811,655 (100%)



협정별 섬유류 특혜 수입금액

총액 2,191,569.338



섬유류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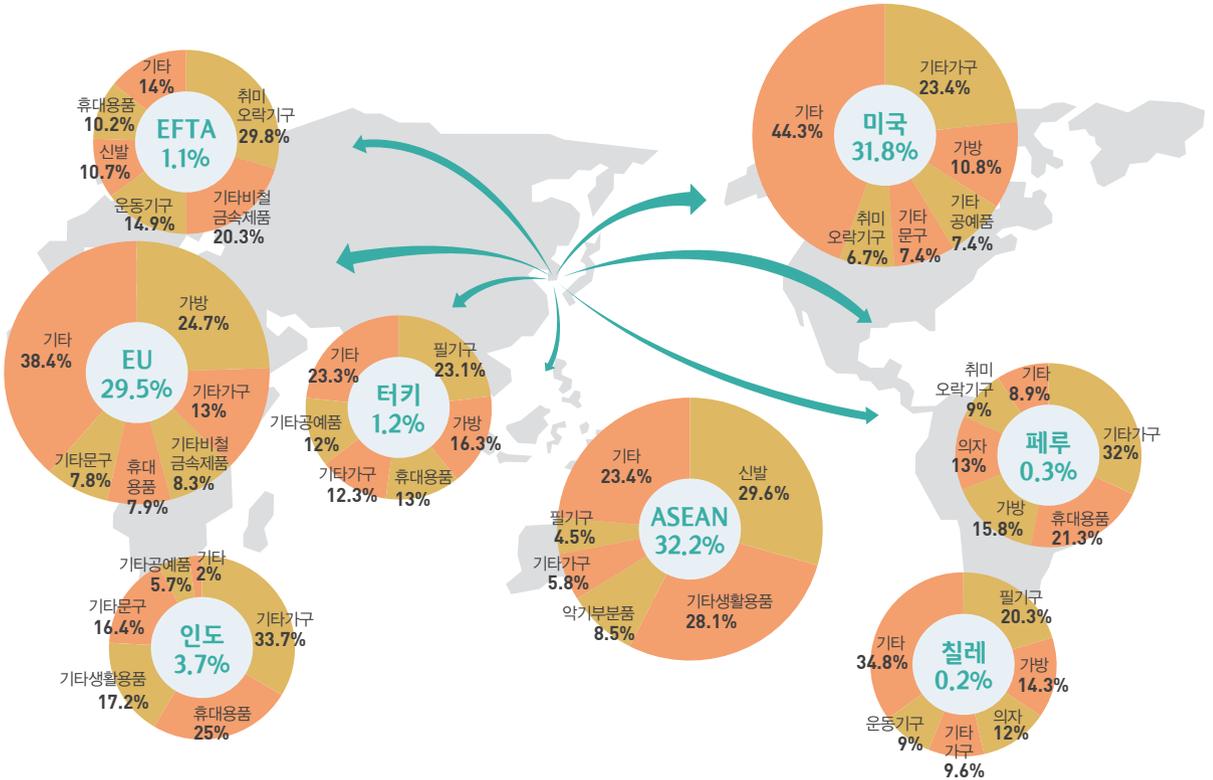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의류	1,265,292.428	57.7
2	기타섬유제품	260,050.527	11.9
3	인조섬유장섬유사	174,001.491	7.9
4	인조섬유방직사	123,054.896	5.6
5	기타직물	100,605.979	4.6
6	천연섬유사	98,924.300	4.5
7	면직물	44,913.385	2.0
8	재생섬유	38,793.956	1.8
9	인조단섬유직물	25,332.180	1.2
10	모직물	18,221.778	0.8
총계		2,191,569.338	100.00

수출 생활용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67,282 (8%)	5,583,080 (92%)	6,050,362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467,282.289



생활용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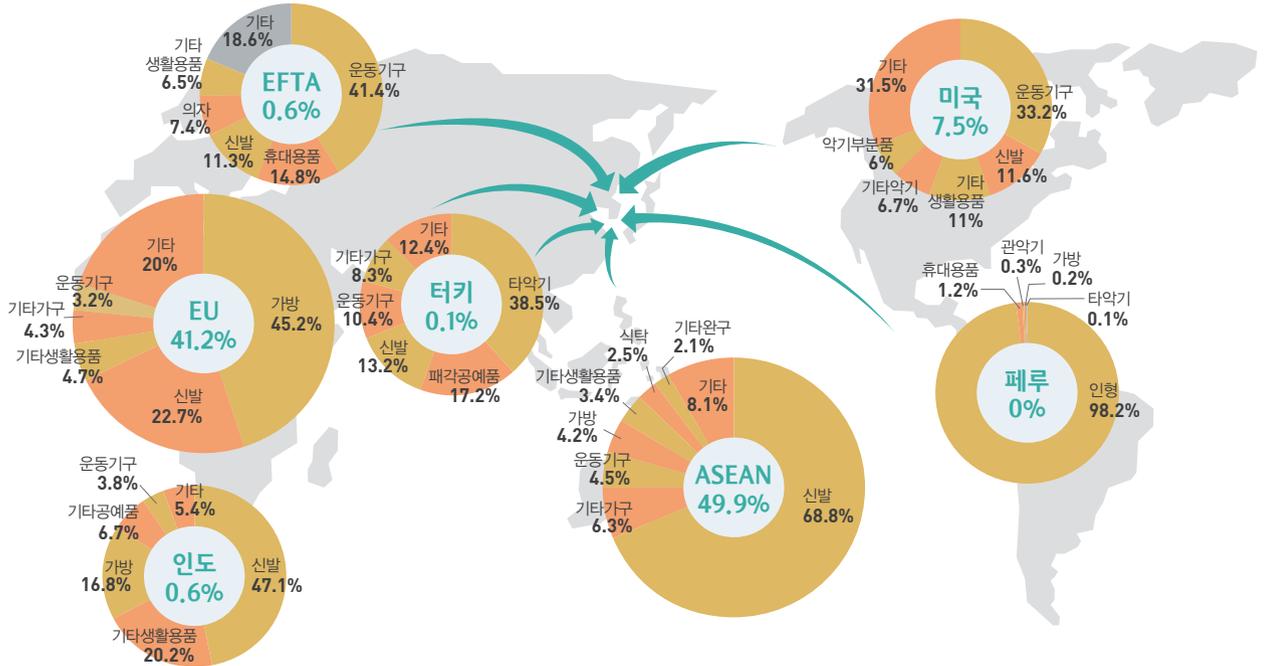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가구	72,971.401	15.6
2	가방	56,866.375	12.2
3	기타생활용품	56,274.109	12.0
4	신발	55,943.802	12.0
5	휴대용품	27,631.116	5.9
6	기타문구	25,471.971	5.5
7	취미오락기구	25,357.563	5.4
8	기타비철금속제품	23,036.483	4.9
9	필기구	20,671.084	4.4
10	기타공예품	20,328.999	4.4
총계		467,282.289	100.00

수입 생활용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944,063 (7%)	12,880,210 (93%)	13,824,273 (100%)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944,062.805



생활용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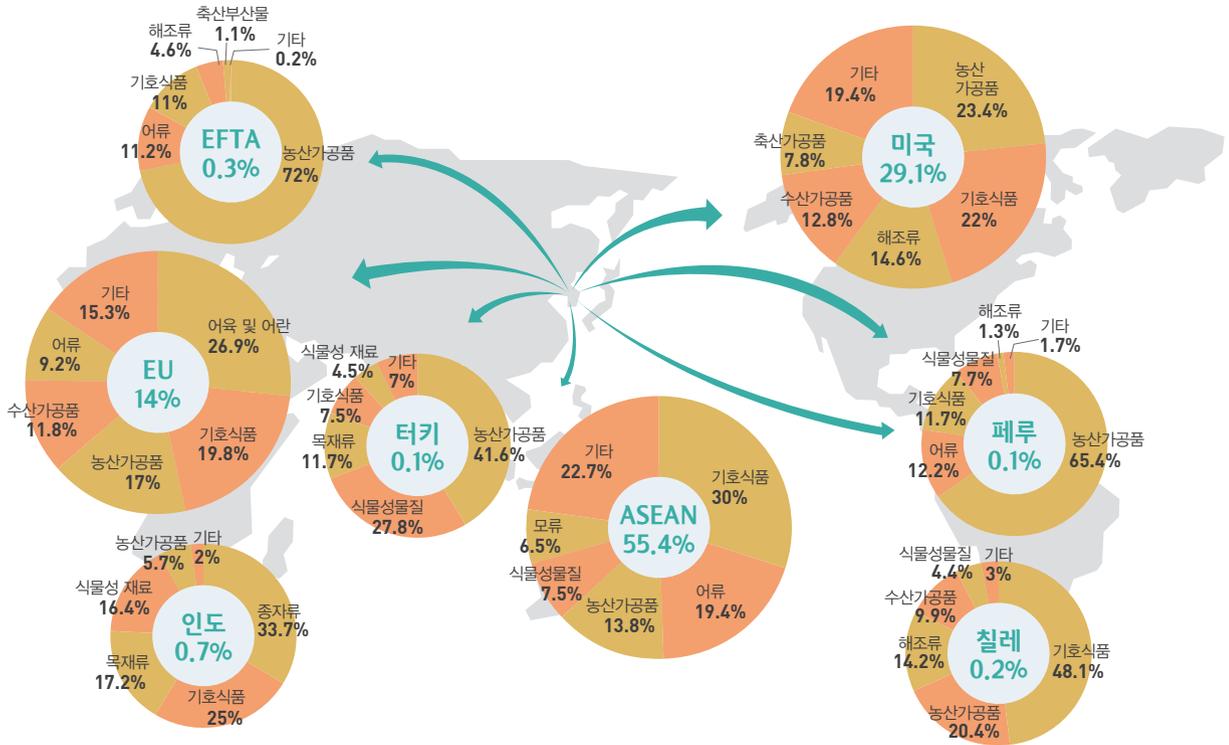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424,264.178	44.9
2	가방	199,251.608	21.1
3	운동기구	60,009.230	6.4
4	운동기구	49,442.094	5.2
5	기타생활용품	43,720.176	4.6
6	휴대용품	16,974.566	1.8
7	기타완구	14,323.235	1.5
8	필기구	13,692.956	1.5
9	취미오락기구	13,149.068	1.4
10	식탁	12,994.825	1.4
총계		944,062.805	100.00

수출 농림수산물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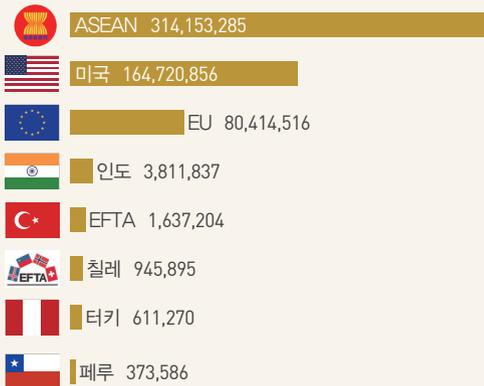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566,668 (5%)	11,705,812 (95%)	12,272,480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 수출금액

총액 566,668.449



농림수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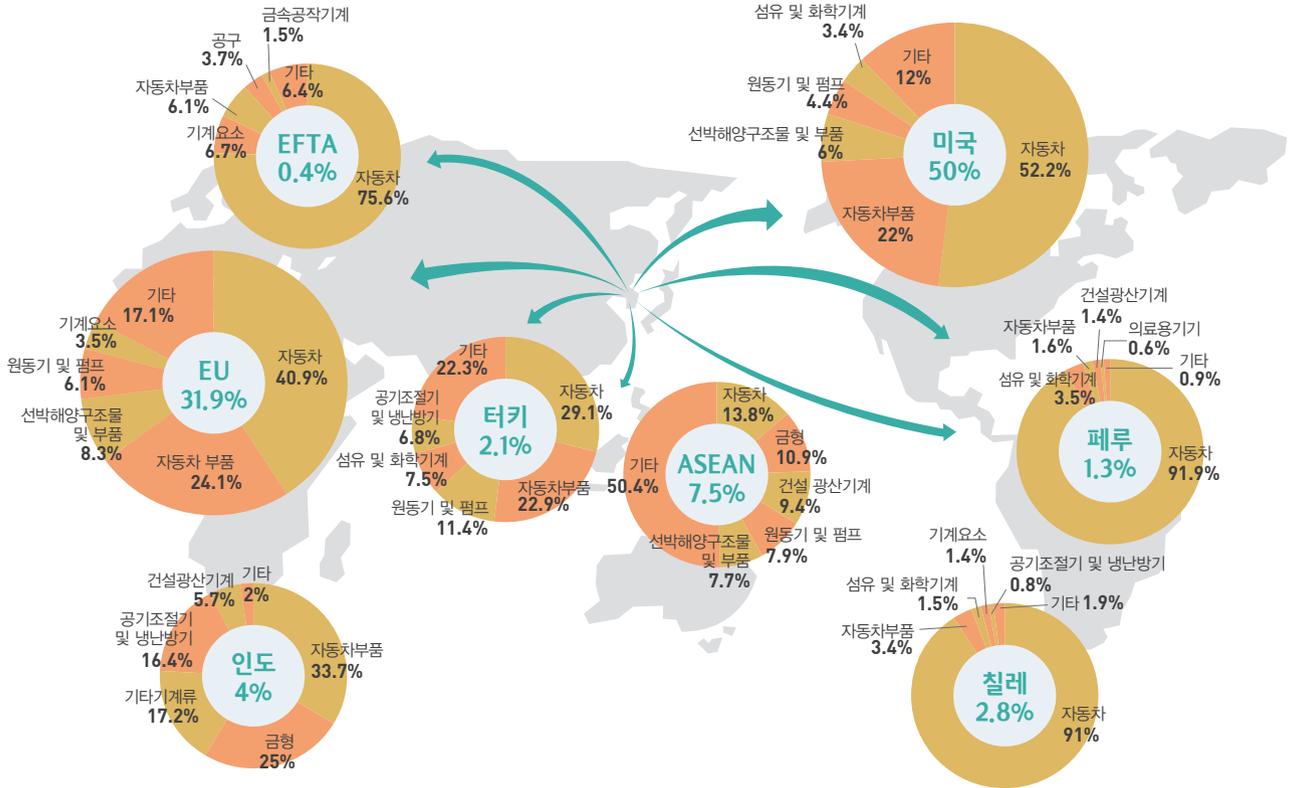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호식품	148,148.624	26.1
2	농산가공품	97,937.947	17.3
3	어류	72,568.861	12.8
4	해조류	44,582.242	7.9
5	수산가공품	37,435.510	6.6
6	식물성물질	25,977.990	4.6
7	어육 및 어란	25,750.148	4.5
8	축산가공품	24,231.329	4.3
9	식물성 재료	22,861.001	4.0
10	모류	20,581.159	3.6
총계		566,668.449	100.00

수출 기계류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4,519,052 (8%)	271,711,417 (92%)	296,230,469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기계류 특혜 수출금액 총액 24,519,051.800



기계류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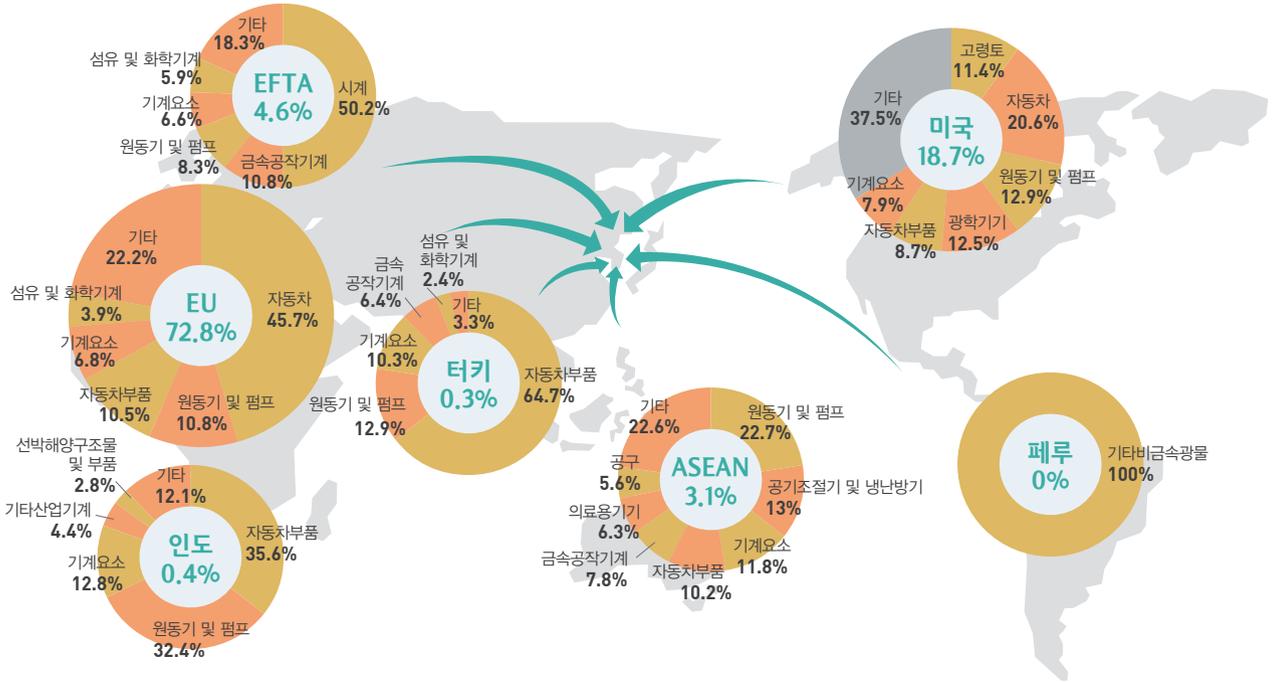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10,983,399.452	44.8
2	자동차부품	5,322,577.241	21.7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526,297.453	6.2
4	원동기및펌프	1,235,629.766	5.0
5	기계요소	689,182.589	2.8
6	건설광산기계	684,521.217	2.8
7	섬유 및 화학기계	662,557.729	2.7
8	금속공작기계	583,689.825	2.4
9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574,220.661	2.3
10	금형	573,240.943	2.3
총계		24,519,051.800	100.00

수입 기계류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8,733,612 (8%)	102,034,473 (92%)	110,768,085 (100%)



협정별 기계류 특혜 수입금액 총액 8,733,611.809



기계류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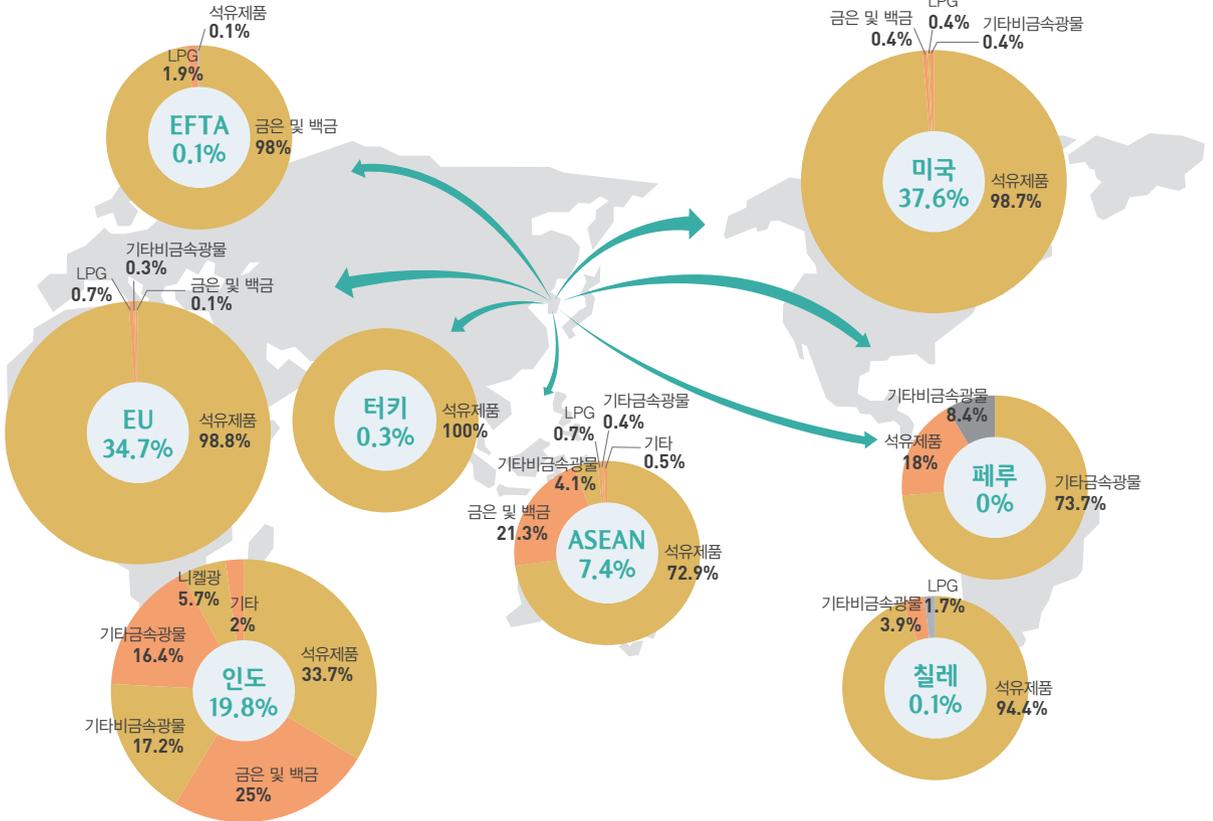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3,246,817.442	37.2
2	원동기 및 펌프	1,007,473.533	11.5
3	자동차부품	874,050.988	10.0
4	기계요소	626,620.783	7.2
5	금속공작기계	336,121.629	3.8
6	광학기기	332,622.964	3.8
7	섬유 및 화학기계	329,953.944	3.8
8	기타기계류	314,098.685	3.6
9	시계	204,568.291	2.3
10	의료용기기	192,413.818	2.2
총계		8,733,611.809	100.00

수출 광산물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788,087 (3%)	97,669,340 (97%)	100,457,427 (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협정별 광산물 특혜 수출금액 총액 2,788,086.606

국가	수출금액
미국	1,047,153.051
EU	966,684.245
인도	553,268.707
ASEAN	207,674.649
터키	7,143.469
EFTA	3,610.943
칠레	2,379.083
페루	172.459

광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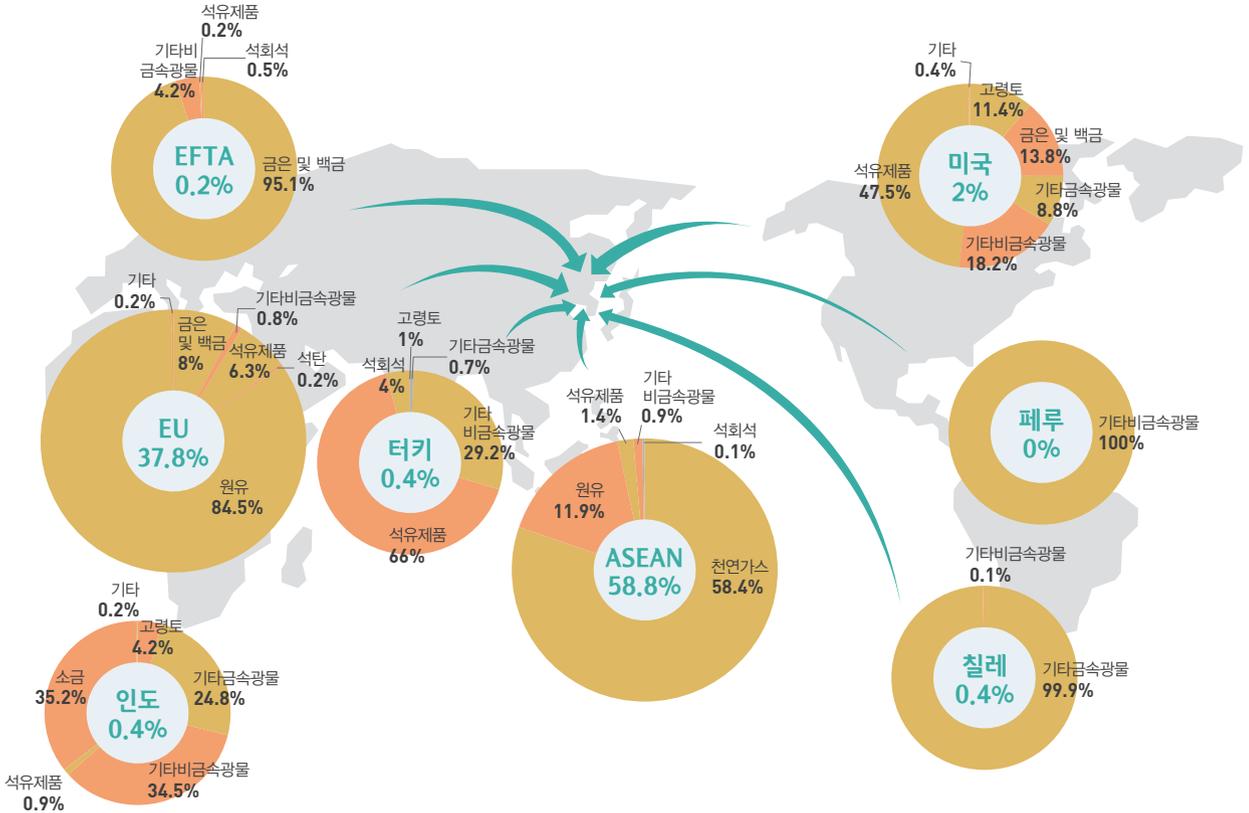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석유제품	2,535,762.475	90.9
2	금은및백금	213,679.064	7.7
3	기타비금속광물	20,145.322	0.7
4	LPG	12,994.741	0.5
5	기타금속광물	2,644.953	0.1
6	니켈광	1,201.464	0.0
7	소금	1,104.206	0.0
8	동광	297.351	0.0
9	흑연	110.755	0.0
10	고령토	84.839	0.0
총계		2,788,086.606	100.00

수입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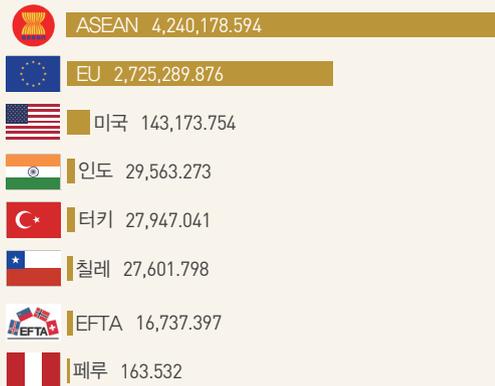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7,210,655 (2%)	361,460,872 (98%)	368,671,527 (100%)



협정별 광산물 특혜 수입금액

총액 7,210,655.265



광산물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천연가스	3,407,804.676	47.3
2	원유	2,998,421.375	41.6
3	석유제품	340,407.350	4.7
4	금은 및 백금	252,575.002	3.5
5	기타비금속광물	116,514.508	1.6
6	기타금속광물	49,370.029	0.7
7	고령토	20,360.697	0.3
8	소금	12,729.955	0.2
9	석탄	6,549.110	0.1
10	석회석	4,692.638	0.1
총계		7,210,655.265	100.00

FTA 국가의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2012	2013	전년동기 대비증감율	2013년 1월~6월	2014년 1월~6월	전년동기 대비증감율
칠레	수출	2,469	2,458	-0.4	1,302	1,150	-11.7
	수입	4,676	4,658	-0.4	2,357	2,290	-2.8
	교역액	7,145	7,116	-0.4	3,659	3,440	-6.0
EFTA	수출	1,495	2,441	63.3	665	1,020	53.4
	수입	7,713	6,409	-16.9	3,380	2,775	-17.9
	교역액	9,208	8,850	-3.9	4,045	3,795	-6.2
ASEAN	수출	79,145	81,997	3.6	41,884	44,373	5.9
	수입	51,977	53,339	2.6	26,289	26,728	1.7
	교역액	131,122	135,336	3.2	68,173	71,101	4.3
미국	수출	58,525	62,052	6.0	31,327	33,863	8.1
	수입	43,341	41,512	-4.2	20,844	22,993	10.3
	교역액	101,866	103,564	1.7	52,171	56,856	9.0
인도	수출	11,922	11,376	-4.6	5,761	6,278	9.0
	수입	6,921	6,180	-10.7	3,201	2,660	-16.9
	교역액	18,843	17,556	-6.8	8,962	8,938	-0.3
EU	수출	49,371	48,857	-1.0	24,700	27,492	11.3
	수입	50,374	56,230	11.6	27,292	31,024	13.7
	교역액	99,745	105,087	5.4	51,992	58,516	12.5
페루	수출	1,473	1,440	-2.2	715	693	-3.1
	수입	1,639	1,983	21.0	1,028	713	-30.6
	교역액	3,112	3,423	10.0	1,743	1,406	-19.3
터키	수출	4,552	5,658	24.3	2,597	3,319	27.8
	수입	672	692	3.0	332	304	-8.4
	교역액	5,224	6,350	21.6	2,929	3,623	23.7
FTA체결국	수출	208,952	216,279	3.5	108,951	118,188	8.5
	수입	167,313	171,003	2.2	84,723	89,487	5.6
	교역액	376,265	387,282	2.9	193,674	207,675	7.2
비 FTA국	수출	338,918	343,353	1.3	167,523	165,136	-1.4
	수입	352,271	344,583	-2.2	171,767	173,626	1.1
	교역액	691,189	687,936	-0.5	339,290	338,762	-0.2
총계	수출	547,870	559,632	2.1	276,474	283,324	2.5
	수입	519,584	515,586	-0.8	256,490	263,113	2.6
	교역액	1,067,454	1,075,218	0.7	532,964	546,437	2.5

① 2014년 상반기(1월~6월) 기준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단위 : %

국가(발효)	구분	'11	'12	'13	'14. 9
칠레('04.4)	수출	-	75.4	78.9	80.7
	수입	95.8	97.9	98.5	97.6
EFTA('06.9)	수출	-	84.9	80.3	81.2
	수입	55.7	61.9	41.8	41.0
아세안('07.6)	수출	33.1	34.8	36.4	38.3
	수입	73.8	72.5	74.1	72.6
인도('10.1)	수출	35.8	36.5	43.2	56.6
	수입	53.6	53.9	61.4	68.7
EU('11.7)	수출	65.7	84.0	85.6	85.5
	수입	47.1	67.6	68.6	67.4
페루('11.8)	수출	61.3	77.8	91.9	89.7
	수입	52.6	92.0	97.9	89.3
미국('12.3)	수출		69.4	77.0	76.3
	수입		63.7	68.3	65.7
터키('13.5)	수출			69.4	71.7
	수입			69.4	64.2

- ① 칠레, EFTA 수출활용률은 이행위를 통해 교환한 상대국 자료를 통해 산출하여 자료를 교환하지 않은 연도의 활용률은 산출이 어려움
- ② 아세안 수출활용률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수치임
- ③ 수입활용률 산출시 징수형태 부호가 과세보류인 실적은 제외하며, 무역통계 확정 이후 협정관세 적용실적은 고려하지 않음

FTA 무역 리포트

Vol.07 October 2014

〈비매품〉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인쇄 아미고디자인

www.amigodesign.co.kr

Tel. 02-517-5043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245개

실생활 체감형 과제 선정
국민안전 분야 90개
국민생활 개선분야 155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학교 안전교육 개선 등
생활안전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개인정보
유출 근절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근절



불량식품 척결,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대포차량
대포폰
대포통장 근절



00식당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긴급구조
소방활동 방해 근절



희망의 새시대



투명해서  좋아요!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유능해서  좋아요!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는
정부!

서비스가  좋아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새로운 국민사랑의 시작, 정부3.0이 함께 합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유학기에는 국·영·수 수업을 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국·영·수 등 기본 교과 수업은 충실하게 진행됩니다. 강의식, 암기식 수업은 줄이고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 위주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학기에는 시험을 보지 않나요?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의 지필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형성평가 등을 학교별로 시행하여 미진한 부분의 학습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율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합니다. 자율과정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및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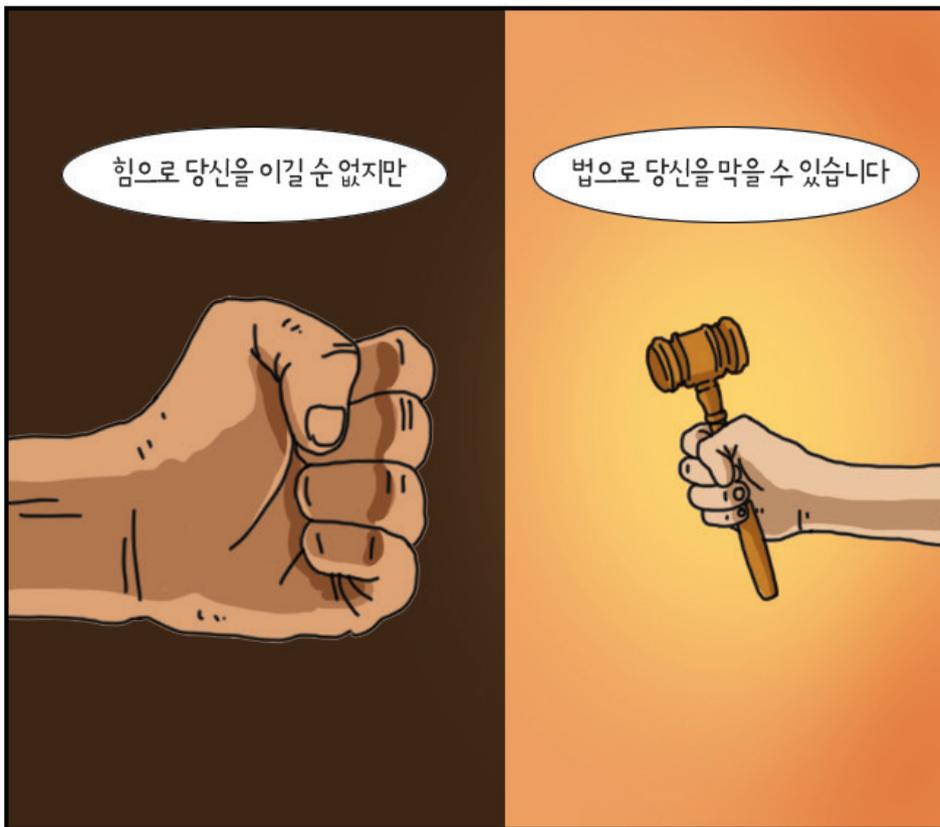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 특례법이 9월에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조정 됩니다.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눈높이맞는 맞춤형지원

관세청은 다양한 중소기업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FTA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FTA 활용 준비부터
해결까지 완벽히 지원해 드립니다.



세계 품목분류·세율 정보 제공

수출 상대국의 품목분류(HS), 관세율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FTA 활용지원 맞춤형 컨설팅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 컨설팅하는 맞춤형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FTA 전문인력 양성과 구인 · 구직 연계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구인기업과의 고용 연계(Job-matching)를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